

[목 차]

Ⅲ. 중국 게임산업 관련 법률

| | | |
|-----|-------------------------------------|--------|
| 1. | 특수상표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 Ⅲ- 1 |
| 2. | 오락장 관리조례 (娱乐场所管理条例) | Ⅲ- 5 |
| 3. |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法) | Ⅲ- 12 |
| 4. | 소프트웨어 등록관리법 (软件产品登记管理办法) | Ⅲ- 16 |
| 5.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 Ⅲ- 21 |
| 6.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 Ⅲ- 31 |
| 7. |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技术进出口管理条例) | Ⅲ- 37 |
| 8. | 음반제품 관리조례 (音像制品管理条例) | Ⅲ- 44 |
| 9. | 음반제품 수입관리법 (音像制品进口管理法) | Ⅲ- 54 |
| 10. |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 Ⅲ- 59 |
| 11.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 | Ⅲ- 64 |
| 12. | 중국 도메인 네임 관리방법 (中国互联网络域名管理办法) | Ⅲ- 73 |
| 13. |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 네임 쟁의에 관한 해결방법 | Ⅲ- 78 |
| |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域名争议解决办法) | |
| 14. |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관리조례 | Ⅲ- 81 |
| | (互联网上网服务经营场所管理条例) | |
| 15. |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 네임 등록 실시 세칙 | Ⅲ- 88 |
| |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域名注册实施细则) | |
| 16. | 《전신업무 분류 목차》 재조정 통보 | Ⅲ- 91 |
| | (关于重新调整《电信业务分类目录》的通告) | |
| 17. |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出版物市场管理规定) | Ⅲ- 103 |
| 18. | 저작권 행정처분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 Ⅲ- 113 |

Ⅲ. 중국 게임산업 관련 법률

1. 특수상표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1996년 7월 13일 국무원 제202호령 반포)

제1장 총칙

제1조 특수상표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 스포츠, 과학연구 및 기타 사회공익활동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특수상표 소유자, 사용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지적되는 특수상표란 국무원의 허가 비준 아래 개최된 전국 또는 세계범위 내 문화, 스포츠, 과학연구 및 기타 사회공익활동에서 사용되는 표지이며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명칭 및 약어, 회의 마크, 마스코트 등을 포함한다.

제3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 하에 등록된 특수상표는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제4조 아래 내용과 관련된 문자, 도형의 특수상표는 등록이 불허된다.

- 1) 국가 또는 국제조직의 존엄, 형상을 손상할 경우
- 2) 사회 건전한 습관과 공공질서를 파괴할 경우
- 3) 민족차별성을 내포하여 민족 단결에 불리할 경우
- 4) 뚜렷한 특성이 없어 구별이 어려울 경우
- 5) 법률, 행정법규에 금지된 기타 내용

제5조 특수상표에 관련된 대상들이 특수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의 사용을 허가하여 모집된 자금은 반드시 특수상표가 서비스하는 사회 공익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국무원 재정부서, 심계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특수상표의 등록

제6조 사회공익활동 조직자 또는 준비자가 사용하게 될 명칭, 회의 마크, 마스코트 등 특수상표 보호가 필요할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등록신청은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대리 위탁할 수도 있다.

제7조 특수상표 등록신청 시 등록신청서 및 아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1) 본 사회공익활동에 대한 국무원의 허가서류
- 2) 타인이 특수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한 조건 및 관리방법
- 3) 특수상표 건본 5부, 흑백 묵고(墨稿) 1부, 건본은 뚜렷하고 붙이기가 편이해야 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품질이 좋은 종이로 프린트하거나 또는 5mm보다 크고 10mm보다 작은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 4) 타인에게 대리 위탁할 경우 대리인의 위탁서를 첨부해야 하며 위탁사항과 권한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 5)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요구한 기타 서류

제8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1) 본 조례 규정에 부합되고 서류가 완비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 특수상표 등록신청 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통지 후 2달 내 특수상표에 관련된 사항, 도형 및 허가한 상품, 서비스 항목을 등록부에 기록하고 특수상표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특수상표는 허가 등록 후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공고한다.
- 2) 서류보완 또는 오차가 생겼을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필요서류 보완통지서를 발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만기일까지 보완하지 않았거나 보완한 서류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 거부통지서를 발급한다.
- 3) 본 조례 제4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 특수상표 등록신청기각 통지서를 발급한다. 이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 지적된 각 통지서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가 직접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한다. 일부 원인으로 직접 송부 하지 못했을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공고를 하거나 또는 배송한 당일로부터 20일 내를 발송기일로 한다.

제9조 특수상표 유효기간은 4년이며 등록일로부터 유효하다.

특수상표 소유인은 만기 3개월 전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기기일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특수상표소유인이 주소를 변경할 시 변경일로부터 1개월 내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등록이 허가된 특수상표에 아래에 지적된 몇 가지 경우가 발생할 시 임의의 단위, 개인은 공고 발표일로부터 유효일 만기 전까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특수표기 등록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 1) 기존의 특수표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 2) 우선 등록을 신청한 상표 또는 등록이 완성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 3) 우선 외형 디자인특허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취득한 외형 디자인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4)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제11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특수표기 등록무효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피 신청인



을 통지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내 답변을 요구한다. 피 신청인이 답변을 거절하거나 적당한 이유가 없이 답변기일을 초월했을 경우 답변권리 포기로 인정된다.

제12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특수상표 등록무효 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3개월 내 재정을 내리고 당사자를 통지한다. 재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 받은 당일부터 15일 내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특수상표의 사용 및 보호

제13조 특수상표 소유자는 공익활동과 관련된 홍보, 기념품 및 기타 물품에서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 아래 타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특수표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제14조 특수상표 사용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성립된 업체,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체공사업자여야 한다.

특수표기 사용자는 소유인과 서면 상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수상표 사용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내 계약사본을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동시에 사용인 소재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여 보존 조사한다.

제15조 특수상표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아래에 나열한 행위 중의 하나를 감행했을 경우 소재지 또는 행위 발생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수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특수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소유자의 등록을 취소한다.

- 1) 특수상표의 문자, 도형을 제멋대로 수정했을 경우
- 2) 계약체결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사용권리를 부여하거나 사용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재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 기관에 서류 보존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 3) 상품 또는 서비스의 등록범위를 초월했을 경우

제16조 아래에 지적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침해상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5 배 이하 과태료를 징수한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 1) 소유자의 특수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 도형 또는 기타 조합을 사사로이 사용한 경우
- 2) 특수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특수표기를 제조, 판매하거나 특수표기를 기타 상용화 활동에 사용했을 경우
- 3) 특수상표 소유자에게 경제손실을 빚어낸 기타 행위

제17조 특수상표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특수상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침해당했음을 받

건했을 경우 침해자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 발생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고소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특수표기 침해사건 고소를 접수할 시 특수상표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 민사배상을 중재하며 중재가 실패했을 시 특수상표 소유자는 인민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제18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특수상표 침해사건을 접수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협조하는 의무가 있는바 거절할 수 없다.

- 1) 관련 당사자에 대한 문의
- 2) 침해활동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조사
- 3) 침해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조사
- 4) 침해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장부 등 업무자료에 대한 검사

제4장 부록

제19조 특수상표 신청비, 공고비, 등록비 등 비용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서, 물가부서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와 함께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20조 특수표기 등록신청 시 관련된 서류격식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한다.

제21조 국무원의 허가 비준 아래 중국을 대표하여 세계적인 문화, 스포츠, 과학연구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조직이 사용하는 명칭, 마크, 마스코트 등 표지의 보호는 본 조례 규정을 참조한다.

제22조 본 조례는 반포일부터 유효하다.



2. 오락장 관리조례 (娱乐场所管理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1제261호)

(관련문서: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사법해설 10편 11회, 지방 규정 40편 93회)

《오락장 관리조례》는 1999년 3월 17일 국무원 제15회 상무회의에서 통과하였고 현재 공포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총리 주룽지

1999년 3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 오락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들이 건강한 오락생활을 즐기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오락장은 공중에 대해 영업을 하고, 소비자들이 자체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영업 성향의 노래·춤, 게임 등 장소를 가리킨다.

제3조 오락장 경영 업체는 인민 대중을 위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준수하고 건강한 오락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우수한 민족문화를 선도하며 오락장에서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오락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헌법에 확정된 기본 원칙을 반대하는 것
- 2) 국가 통일, 주권 혹은 영토를 침해하는 것
- 3) 국가 안전, 이익 및 사회 안정을 침해하는 것
- 4) 민족 분열을 선동하고 소수 민족 풍속 습관을 침해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것.
- 5) 음란, 색정, 미신 및 폭력을 살포하거나 소비자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것
- 6) 사회 공덕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비방 모욕하는 것.

제5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문화 행정 주관 부문,公安 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락장의 운영 및 화재 방지, 치안 관리에 대해 각각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6조 각급 인민 정부 문화 행정 관리 부문,公安 기관 및 이런 부문의 근무 인원은 오락장을 운영하지 못하며, 오락장 운영에 참여하거나 간접적인 수단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 문화 행정 주관 부문,公安 기관의 인원은 오락장에서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할 경우 사법수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문화 행정 주관 부문,公安 기관은 본 조례에 따라 오락장에 대해 감독 조사하며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지 못한다. 문화 행정 주관 부문은 오락장 감독 검사에 필요로 하는 경비는

법적 규정에 따라 오락산업 영업세 세율 조정을 통해 지방 재정에서 해결한다. 구체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관련 문서: 지방 규정 3편 4회)

제2장 오락장 운영기구의 설립

제8조 오락장 운영기구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기구 명칭, 주소, 조직 및 정관이 있어야 한다.
- 2) 명확한 운영 범위 및 오락 종목이 있어야 한다.
- 3) 오락 종목에 적절한 장소와 기기 및 설비가 있어야 한다
- 4) 오락장의 안전, 화재 방지 시설 및 위생 조건이 국가 규정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오락장은 학교, 병원, 기관의 정상적인 학습과 근무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설립하지 못한다.

오락장 부근의 소음은 국가 규정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다음 인원은 오락장 운영기구의 법적 대표 혹은 주관 인원을 담당할 수 없으며 오락장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 1) 범죄행위를 구성하여 강간죄, 여성 모욕죄, 도박죄, 음란 물품 운송 제작 판매 죄, 마약 밀수 및 운송, 제작 판매 죄 혹은 유기도형에 언도한 경력이 있는 자
- 2) 범죄 행위를 구성하여 정치 권리를 박탈당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문서 : 지방 규정 3편 3회)

제11조 국가에서는 외상 독자 운영 오락장 설립을 금지한다.

(관련 문서 : 지방 규정 1편 1회)

제12조 오락장 운영 기구를 설립은 소속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 행정 주관 부문,公安 기관 및 보건 행정 부문의 심사에 통과해야 한다. 심사에 합격한 업체야만 공상 행정부문에 등록 신청을 제출하여 영업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서 : 지방 법규 1편 1회)

제13조 오락장 운영기구 명칭, 주소, 법인 대표 혹은 주관 인원, 운영 범위, 오락 종목 및 기타 주요 사항 변경 시 반드시 원 심사 부문의 심사를 통해야 하며, 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분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오락장의 운영

제14조 모든 기구는 문화 행정 주관 부문,公安 기관, 보건 행정 부문의 본 조례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않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하면 오락장을 운영할 수 없다.

오락장 운영 기구는 영업허가증을 사사로이 고치거나 빌려주거나 임대하지 못하며 오락장

을 타인에게 전담시켜 운영하지 못한다.

제15조 오락장에서 제공하는 오락 종목, 서비스 종목 등 수수료는 반드시 명확한 가격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가격 관리 부문은 부적절한 가격 혹은 고가 수수료에 대해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 제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16조 가무 오락장에서 연출 혹은 방송하는 종목 및 방송 화면은 본 조례 제4조에 금지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게임 오락장의 전자 스크린 화면, 영상 게임기의 장비 내 설치한 게임은 본 조례 제4조에서 금지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락장에서 사용하는 음반 제품과 전자 출판물은 반드시 합법적인 출판 기구 혹은 합법적으로 수입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17조 게임 오락장에는 도박 기능이 있는 전자 게임기와 기종 및 회로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 오락장은 게임기기 및 기종과 회로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원 심사를 거친 문화 행정 주관 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오락장은 전자계산기를 이용하는 오락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제20조 가무 오락장에서 단체 혹은 개인을 초빙하여 영업성향의 출연을 진행할 경우 국가 관련 영업성 출연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 가무 오락장은 미성년자를 입장시키지 못한다.

게임 오락장에 설치한 전자 게임기는 국가 법정 휴가일 이외 미성년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제22조 오락장의 종업원은 영업시간 내 통일 작업복을 입고 작업 로고를 사용해야 한다.

제4장 오락장의 치안 관리

제23조 오락장 운영기구는 완벽한 안전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 인원을 두어야 한다.

보안 인원은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교육에 참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직장에 근무할 수 있다.

제24조 오락장의 종업원은 반드시 주민 거주증이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 타지방 종업원은 반드시 임시 거주증과 노무 증명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및 기타 중국 영토 외 인원이 오락장에서 취직할 경우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취직 증명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오락장 운영기구는 전 조항에 규정된 증명서가 완벽하지 못할 사람은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 오락장 운영기구 및 기타 인원이 타인의 매음을 강요, 유혹, 수용하거나 소개할 수 없으며,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을 하며 타인이 마약을 먹거나 주사하도록 교사하고 사기하며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신활동을 금지하고 음란 도서 및 영화, 비디오, 테이프, 그림 및 기타 음란물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접대부를 제공하거나 오락장 직원이 상기 활동에 편의와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오락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오락장에서 매음 및 오입 혹은 도박, 마약 흡입, 마약 판매 행위를 하거나 음란 도서 영화, 비디오, 테이프 그림 및 기타 음란물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음란 색정 및 사회 공덕을 위반하는 활동과 미신활동을 금지하고 수익 목적으로 접대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오락장 운영기구는 오락장을 출입하는 사람이 전 조항에 열거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저지시켜야 하며 즉각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오락장에서 싸우거나 술주정을 하거나 사건을 만들거나 여성을 희롱 모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오락장의 정상적인 영업 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불법으로 총, 단약, 관제에 속하는 칼 및 폭발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품을 오락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제28조 가무 오락장에 설치한 방 혹은 칸은 반드시 전부 환경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창문을 설치해야 하며 안으로 잠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제29조 오락장 운영기구는 반드시 화재 방지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화재 방지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증해야 한다.

제30조 가무 오락장은 수용하는 소비자 수를 심사 책정한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5장 벌칙

제31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사사로이 오락장 운영 기구를 설립할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문은 그 기구를 폐지하고 위법 소득과 위법 운영에 사용한 기기 설비 등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이 4,000위안 이상일 경우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4,000위안 이하 일 경우 4,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오락장 운영기구가 사사로이 영업허가증을 고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임대할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문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3조 오락장 운영기구가 오락 종목을 변경하거나 게임기기 기형, 기종, 회로 판을 추



가 혹은 변경하고도 문화 행정 주관 부문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문화 행정 주관 부문은 기한 내 보완 수속을 밟을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오락장 운영기구가 아래의 한 가지 사항이라도 해당될 경우 문화 행정 주관 부문은 개정, 경고, 영업정지 명령을 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2,500위안 이상일 경우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4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소득이 없거나 2,500위안 이하일 경우 2,5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사항이 엄중할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문은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 1) 오락장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 2) 가무 오락장에 미성년을 입장시키거나 게임 오락장에 설치한 전자 게임기를 국가 법정 휴가일 이외에 미성년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 3) 법적 기준을 걸치지 않은 음반 출판기구에서 출판하였거나 혹은 법적 허가 없이 음반 제품을 수입하거나 전자 출판물을 수입할 경우
- 4) 전자계산기를 이용하는 오락 활동을 제공할 경우
- 5) 도박 기능이 있는 게임기기, 기종, 회로 판 설비를 제공할 경우

제35조 오락장에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 문화 행정 주관 부문은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과 위법 경영에 사용한 기기 설비를 몰수한다. 동시에 4,000위안 이상 4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내용이 엄중할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문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는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 1) 조직한 출연행사 혹은 방송한 노래 및 화면 내용에 본 조례 제4조에 금지한 내용을 있을 경우
- 2) 게임기기 내 설계 설치한 게임 중 본 조례 제4조에 금지한 내용을 있을 경우

제36조 본 조례 제35조에 규정한 사항 외 오락장에서 본 조례 제4조에 금지한 활동에 종사하였을 경우 공안 기관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37조 오락장 운영기구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공안 기관은 개정, 경고,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내용이 엄중할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문은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 1) 고용 직원이 본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한 증명서류 혹은 증명서류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 2)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 인원을 사용하지 않거나 자격증이 없는 보안 인원을 사용할 경우
- 3) 설치한 방, 칸이 본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4) 가무 오락장의 소비자가 책정한 수를 넘을 경우
(관련 문서: 법률 규정 사법 해석 1편1회 지방 규정 2편 2회)

제38조 오락장 운영기구가 화재 방지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안 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 오락장 운영기구 인원이 아래사항에 해당되거나 범죄 구성 시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치안 관리 처벌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1) 본 기구의 조건을 이용하여 타인의 매음을 조직, 유혹, 교사, 사기, 강요, 소개할 경우
- 2) 공안 기관이 매음, 오입을 사주 시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법 범죄자에게 알려 줄 경우
- 3) 본 기구의 조건을 이용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도박을 할 경우
- 4) 본 기구의의 조건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마약을 흡수하거나 혹은 주사하도록 유혹, 교사, 사기 강요할 경우

제40조 오락장 운영 기구가 본 기구에서 발생한 매음, 윤락 행위를 방관하거나 조처하지 않을 경우 공안 기관은 영업을 정지하며 10,000위안 이상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내용이 엄중할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문은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직접 책임을 부담해야 할 주관 인원과 기타 간접 책임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공안기관이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오락장 운영기구가 아래 사실에 해당될 경우 공안 기관은 개정, 경고, 영업 정지 명령을 하며 4,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내용이 엄중할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문은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 1) 봉건 미신 행위를 할 경우
- 2)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접대부를 제공할 경우
- 3) 오락장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본 조례 제1 조, 제2조에 열거한 행위에 편의와 조건을 제공할 경우

제42조 아래 사실에 해당될 경우 치안 관리 처벌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 1) 불법으로 총, 탄약, 관제에 속하는 칼 혹은 폭발성, 방사성, 독해성, 부식성 물품을 가지고 오락장에 입장할 경우
- 2) 오락장에서 매음, 윤락, 도박, 마약 흡입 혹은 봉건 미신 행사를 할 경우
- 3) 오락장소에서 싸움, 술주정을 하거나 사단 발생, 혹은 여성을 희롱 또는 모욕하거나 오락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교란할 경우

제43조 문화 행정 주관 부문, 공안 기관 인원이 오락장을 개설하고 오락장 운영에 참여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오락장 운영에 참여할 경우 직함 취소 혹은 제명 처분을 한다.

문화 행정 주관 부문, 공안 기관이 상기 조항에 열거한 행위가 있을 경우 직접 책임자와 기타 관련 책임자에 대해 상기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4조 문화 행정 주관 부문, 공안 기관과 기타 관련 행정 주관 부문의 인원이 직책을 남용하거나 독직하거나 부정부패가 있거나 위법 행위에 참여 혹은 숨겨주어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으로 처벌한다.



제6장 부칙

제45조 본 조례 실시 전에 허가를 받고 설립한 오락장 운영 기구는 반드시 본 조례 실시 6개월 내 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6조 비 오락장 운영기구가 오락 종목을 겸하여 경영할 경우 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본 조례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3.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법 (互联网信息服务管理法)

제1조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규범화하고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본 법규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인터넷 정보서비스 업종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본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수익성과 비 수익성, 두 가지로 분류한다.

수익성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에게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웹 페이지를 제작해 주는 등의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비 수익성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네티즌들에게 이미 공개하고 공유 되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국가는 수익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하고, 비 수익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고제도를 실시한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보고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정보서비스 업종을 경영 할 수 없다.

제5조 신문, 출판, 교육, 의료, 약품과 의료기계 등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허가 신청 전 혹은 보고 수속 전, 반드시 법률에 따라 주관 부서의 심사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수익성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에 부합되고 또 아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업무발전계획과 관련 기술 대안이 있어야 한다.
- 2) 인터넷보안과 정보보안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 보안 장치에는 사이트 보안조치, 정보 보안 암호관리제도, 사용자정보 보안관리제도 등이 포함된다.
- 3) 서비스 항목은 제 5 조의 규정 범위에 속하고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7조 수익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나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가치 증가 통신업무경영허가증(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통신관리기구 혹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받은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 허가 혹은 불허 결정을 하여야 한다. 허가하였을 경우 신청인에게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경영허가증을 받은 후 허가증을 가지고 기업등록기관에 가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8조 비 수익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 혹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의 보고수속을 해야 한다.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주최 단위와 사이트 책임자 관련 자료
- 2) 홈페이지 주소와 서비스 항목
- 3) 서비스 항목이 제 5 조 규정범위에 속하고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는 구두 보고의 경우 보고등록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업체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수익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비 수익성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보고할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항목을 신청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는 경영허가증을 받았거나 보고수속을 마친 인터넷 정보서비스 업체의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제11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는 허가증에 허가 받은 사항이나 보고한 항목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경영허가증이나 보고 항목의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비 수익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항목이나 사이트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기 30일 전 기존 심사허가 및 허가증을 발부 혹은 보고한 기관에 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경영허가증 번호 혹은 보고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는 네티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하는 정보내용의 합법성을 보증해야 한다.

제14조 신문, 출판 및 전자공시 등의 서비스 항목에 종사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는 네티즌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내용과 발표시간, 사이트주소 혹은 도메인을 기록해야 하고,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체는 네티즌들의 온라인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시간, 회원번호, 사이트주소 혹은 도메인, 접속 전화번호 등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와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체의 기록서류는 60일 동안 보존해야 하고 국가 관련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는 다음 내용에 관련된 정보를 제작, 복사, 발표, 전송해서는 안 된다.

- 1) 헌법에 확정된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정보
- 2) 국가안전을 위해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며 정권과 통일을 저해되는 정보
- 3) 국가의 명예와 이익에 손상을 주는 정보

- 4) 민족간 반목과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방해하는 정보
- 5) 국가의 종교정책을 무시하고 사이비종교와 미신을 전도하는 정보
- 6) 유언비어 등으로 사회질서를 해치고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
- 7) 음란, 도색, 도박, 폭력, 살인, 테러 혹은 범죄를 교사하는 정보
-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 9)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기타 내용의 정보

제16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이트에서 전송하는 정보가 본 법규의 제 15 조의 범위에 속하는 정보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국가 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수익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는 국내·외 상장을 신청하거나 외국 업체들과 합자, 합작할 경우, 사전에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의 심사동의를 거쳐야 하며, 그 중 외국업체 투자의 비율이 반드시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8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서는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해 감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문, 출판, 교육, 보건, 약품에 대한 감독관리는 공상행정관리부문과 공안, 국가 보안 등 관련 주관 부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법에 의거,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1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허가증을 받지 않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영업을 하거나 허가 항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서는 지정한 기한 내 개정명령을 내린다. 위법 소득을 얻었을 경우 전액 몰수, 위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RMB 5만 이하일 경우 RMB 10만 이상 RMB 10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 내용이 심각할 경우 사이트경영 중단을 명령한다.

제20조 본 방법 제 15 조 범위에 속하는 정보를 제작, 복사, 발표, 전송하여 범죄 요건을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근거,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행위 요건을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안기관, 국가보안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조례>>와 <<컴퓨터 정보인터넷 국제 인터넷 접속보안 보호관리방법>>등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수익 목적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증 발부기관에서 경영을 중단시키고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경영허가증을 취소하고 기업 등록기관에 통지한다. 비 수익적 목적의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사이트경영을 완전 금지시킨다.

제21조 본 방법 제 14 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통신관리 기구에서 개정할 것을 명령하며 위반사항이 엄중할 경우, 경영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사이트경영을 완전 금지시킨다.

제22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이트 홈페이지에 경영허가증 번호나 보고 번호를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서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RMB 5,000 이상 RMB 5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본 방법 제 16 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구에서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사항이 심각할 경우 수익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증 발부기관에서 경영허가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비 수익적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보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사이트 경영을 중단하게 한다.

제24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는 업무활동 중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신문, 출판, 교육, 보건, 약품에 대한 감독관리 부문과 공상행정관리부문 등 관련 주관 부서에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통신관리기구와 기타 관련 주관 부서 및 그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를 소홀히 하여 범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직접 책임을 져야할 주관 직원과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강등시키거나 직위를 박탈하고 제명하는 행정처분을 조치한다.

제26조 본 방법을 반포하기 전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한 업체들은 반드시 본 방법을 반포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본 방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속을 보완해야 한다.

4. 소프트웨어 등록관리법 (软件产品登记管理办法)

제1장 총칙

제1조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관련 법률법규와 국무원이 반포한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 장려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하 《산업정책》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 소프트웨어 제품(국산 소프트웨어와 수입 소프트웨어 포함)의 경영, 관리활동에 본 법을 적용한다.

기구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개인이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위탁 개발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는 본 법을 따르지 않는다.

제3조 본 등록관리법에서 지적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장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혹은 컴퓨터 정보시스템 통합 및 응용서비스 등 기술서비스에 제공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가리킨다.

본 등록관리법이 가리키는 국산 소프트웨어는 중국 내에서 개발·생산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하고 수입 소프트웨어는 중국 밖에서 개발하고 각 중 형식을 통해 중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가리킨다.

제4조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생산·판매·수입·수출 등 활동은 중국 관련 법률, 법규와 표준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기구와 개인은 아래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 및 수출입할 수 없다.

- 1)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
- 2) 컴퓨터바이러스를 포함한 제품
- 3) 컴퓨터시스템의 보안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 4) 국가 규정상 전파가 금지되어 있는 내용이 담긴 제품
- 5) 중국 소프트웨어 표준규범에 어긋난 제품

제5조 신식산업부가 전국의 소프트웨어 제품 관리를 담당한다.

- 1) 소프트웨어 제품의 테스트 표준 및 규범을 제정하고 반포한다.
-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등록된 중국산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등기업무를 진행한다.
- 3) 전국 각 지역 소프트웨어 제품의 관리사업을 지도, 감독, 검사한다.
- 4) 소프트웨어 제품 테스트 기구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중국 소프트웨어 제품 표준규범과 소프트웨어 제품 테스트 표준 및 규범에 근거하여 적합성 테스트를 진행하게 한다.
- 5) 전국적으로 통일된 소프트웨어 제품 등록번호시스템을 제정하고 소프트웨어 제품 등록 증서를 제작한다.
- 6) 소프트웨어 제품 등록공고를 한다.

제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소프트웨어 제품의 관



리사업 및 국산 소프트등록 심사, 비준을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문이 권한을 준 소프트웨어 업체 인증기구가 본 행정 구역 내의 국산 소프트웨어의 등록을 수리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 제품의 등록 및 기록

제7조 소프트웨어 제품은 등록 및 기록제도를 실시한다. 등록 및 기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소프트웨어 제품은 중국 내에서 경영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본 등록관리법에 부합되며 동시 등록 및 기록을 완성한 국산 소프트웨어 제품은 《산업정책》의 관련 장려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8조 국산 소프트웨어 제품의 등록 및 기록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 생산한 기구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소프트웨어 제품 등록 신청서
- 2) 법인대표 영업허가증 부분 및 복사본
- 3) 등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샘플
- 4) 중국 내 개발 및 신청기구의 합법적인 지적재산권 소지의 유효증명서
- 5) 신식산업부의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구가 제출한 테스트 증명자료
- 6) 기타 필요한 자료

제9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소프트웨어 제품 등록기구는 등록을 신청한 국산 소프트웨어 제품의 샘플 및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합격된 제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문의 허가를 통해 국산 소프트웨어 등록번호와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며, 동급 세무부문과 신식산업부 전자정보제품 관리사에 제출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0조 수입 소프트웨어 제품(수입 소프트웨어 현지화 제품 포함)의 등록신청은 중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통합 접수하며 신식산업부의 심사허가를 거친 후 등록번호와 등록증서를 발부한다.

수입 소프트웨어 중 중국 내에서 현지화 개발·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개발한 부분은 저작권 소지자 및 원 개발기구가 중국 내에서 개발하였다는 증명자료와 기타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신식산업부의 심사 허가 후 《산업정책》에 규정된 장려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11조 수입 소프트웨어 제품 등록 신청 시 수입 담당기구가 제출해야할 자료는 아래와 같다.

- 1) 소프트웨어 제품 등록신청서
- 2) 신청기구 영업허가증 부분과 복사본
- 3) 소프트웨어 제품 샘플
- 4) 소프트웨어 제품의 저작권 소지자가 중국에서의 경영을 허가한 라이선스 증명서
- 5) 신식산업부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소프트웨어 테스트기구가 제출한 테스트 증명자료 결과 또는 신식산업부가 인정하는 기타 테스트자료

6) 소프트웨어 제품이 국가 소프트웨어 수입정책 및 규정에 부합된다는 증명서 등 기타 자료

제12조 소프트웨어 제품은 등록증서를 발급 받고 신식산업부의 통지를 받은 후부터 유효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5년, 만기 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장 소프트웨어 제품의 생산

제13조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조·생산할 경우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기술표준, 규범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4조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업체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기업 법인자격을 소지하고 회사경영 범위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무(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및 소프트웨어 제품 제작 포함)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있는 조건과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3) 고정된 생산 장소가 있어야 한다.
- 4)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보장수단과 능력을 소지해야 한다.

제15조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업체가 생산한 소프트웨어 제품은 본 업체가 저작권을 소지하거나 또는 저작권인 혹은 기타 권리인의 허가를 통과한 후 생산된 제품이어야만 한다.

제16조 소프트웨어 생산업체는 자체 생산한 제품의 콘텐츠 검사를 해야 한다.

제17조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생산은 국가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기술, 안전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8조 고객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외부 포장에 소프트웨어의 명칭, 판권번호, 저작권소지자, 등록번호, 생산업체(또는 수입회사) 및 회사 주소와 생산기일을 표기해야 한다.

제19조 고객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수입 또는 중국에서 제조한 외국 소프트웨어 제품 포함)은 중문설명서, 사용안내 등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동시에 제품 및 설명서 혹은 서면형식의 기타 문서에 기술서비스 제공업체, 서비스내용 및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제20조 소프트웨어 제품의 매체(CD, 자기디스크 칩) 제조업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업체는 등록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다.

제21조 임의 회사와 개인은 본 방법 제4조에 규정된 제품을 제작 또는 생산할 수 없으며, 불법 복제품 또는 암호해독(decode)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하지 못한다.



제4장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

제22조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자와 생산자는 자체 제품을 직접 운영 판매할 수 있다.

제23조 대리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할 경우 대리 측(소프트웨어 제품 판매업체)과 피 대리 측(소프트웨어 개발자 혹은 생산자) 사이 그리고 총대리와 자대리 사이는 서면 대리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대리 계약서에는 대리권한, 지역, 기한, 기술서비스 및 신식산업부가 규정한 기타 필수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대리업체는 영업장소의 잘 보이는 곳에 대리권한, 대리기한, 지역, 대리급 등 내용을 포함한 대리자격증서를 걸어야 하며 대외홍보 및 광고에서 이상 내용을 사실대로 표현해야 한다.

제24조 허가증 무역형식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을 운영하는 업체는 생산업체와 서면 허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제품 판매 시 사용자에게 허가증 협의를 읽어볼 것을 알리며, 읽은 후 동의여부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제25조 운영업체가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본 방법 제21조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서면 또는 문서형식으로 사용자들에게 기술서비스 제공업체, 서비스내용, 서비스방식 및 비용을 명확히 밝혀줘야 한다. 특별 명시된 서비스 제공업체가 없을 경우 관련 기술서비스는 제품 판매업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계산한다거나 서비스비용 액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련 서비스비용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가격 내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한다.

제26조 임의 회사와 개인은 등록 및 기록을 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및 본 방법 제4조에서 규정된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품, 암호해독 소프트웨어 제품도 판매하거나 무료제공하지 못한다.

제27조 소프트웨어 제품의 테스트 버전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또한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어떠한 수익성 판매도 허락되지 않는다.

제5장 관리감독

제28조 신식산업부는 국가 기타 관련부문과 함께 전국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 생산, 경영, 수출입 등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한다.

각급 정보산업 주관부문은 관련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본 행정구역 내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 생산, 경영, 수출입 등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한다.

제29조 본 방법 제4조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거나 또는 허위 자료로 등록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제품의 등록번호 및 등록증서를 철수한다. 그 동안 누린 세무특혜 등은 소급 회수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문에서 경고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공포한다.

제품이 국가기술표준, 규범 및 본 관리법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또는 제품이 사용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출품 초기 명시된 성능에 부합되지 않는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문은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해당 기업에게 법에 따른 처벌을 한다.

제30조 임의 기업에서 본 관리법 제4조, 제7조, 제20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보산업 주관부문에서 그 기업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공포한다.

이상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동시에 국가 기타 법률, 법규에 저촉하였을 경우 관련 부문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한다.

제6장 부칙

제31조 본 관리법에 대한 최종 해석은 신식산업부가 담당한다.

제32조 본 관리법은 반포 한 날부터 유효하며, 원 전자공업부가 1998년 3월 4일에 반포한 《소프트웨어 제품 관리 시행방법》은 동시 폐지한다.

(반포일: 2000.11.01)



5.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수정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1차 수정 진행,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수정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2차 수정 진행.)

제1장 총칙

제1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 특허권을 보호하며, 생산자와 경영자의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보장을 촉구하고, 상표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및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본 법규를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 상표국이 전국의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상표 쟁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상표국의 심사 기준을 거친 상표만이 등록상표로 인정되며 여기에는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집단상표, 증명상표 등이 포함된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 특허권을 소지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규에서 지적되는 집단상표란 집단,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등록되고 본 조직 구성원의 업무활동에 사용되는 상표로 상표사용자가 본 조직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격표지이다.

본 법규에서 지적되는 증명상표란 모종의 상품 혹은 서비스가 감독능력을 소지한 조직에 의해 공제되지만 해당 조직 외의 기타 기구 혹은 개인의 자체 상품 혹은 서비스에 사용되며 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원료, 제조방법, 품질 혹은 기타 특정품질을 증명하는 표지이다.

집단상표와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는 특수사항으로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규정한다.

제4조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조직에서 자체 생산, 제조, 가공 또는 경영하는 상품의 상표 특허권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조직에서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항목의 상표특허권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에 서비스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규의 상품상표 관련규정은 서비스상표에도 적용된다.

제5조 2명 이상의 자연인, 법인 혹은 2개 이상의 기타조직이 공동으로 상표국에 동일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상표특허권은 공동소유 및 행사한다.

제6조 국가규정에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허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7조 상표사용자는 상표제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각 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기만행위를 억제해야 한다.

제8조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조직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임의의 가시적 표지는 모두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문자, 도형, 자모, 숫자, 3D표지, 색상조합 및 상술 요소들의 조합 등이 포함된다.

제9조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고유브랜드로 특징이 있어 기타 상표와 구별되어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리와 충돌을 회피해야 한다.

상표등록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기를 명시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아래의 표기들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 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표기 및 중앙국가기관 소재지 특정지점의 명칭 또는 특정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 2) 외국 국가명칭, 국기, 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허락을 맡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정부간 국제조직의 명칭, 깃발, 휘장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조직의 허락을 받았거나 사람들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표기는 사용이 가능하다.
- 4) 제어 또는 보호조치를 실시한 공식표기, 검사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라이선스를 받은 표기는 제외한다.
- 5) “적십자”, “홍신월”의 명칭, 표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 6) 민족차별을 나타내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 7) 과장 홍보하고 동시에 기만성을 지닌 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 8) 사회주의 도덕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기타 불량한 영향을 미치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현 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지명은 표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지명이 기타 뜻을 포함하거나 또는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구성부분으로 사용될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등록된 지명상표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11조 아래의 표기들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 1) 상품의 통용 명칭, 그래픽, 사이즈만 기록된 표기
- 2) 오직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 표명하는 표기
- 3) 고유 브랜드의 가치가 없는 표기

이상 표기들이 사용을 거쳐 선명한 특징을 소지하여 식별하기 쉬운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 상품자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태, 기술효과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상품형태 또는 실질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를 3D표기로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등록 신청하려는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지명상표를 복사, 모방하거나 또는 번역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의식을 헷갈리게 할 경우 등록을 불허하며, 그 상표의 사용도 금지한다.

서로 다른 혹은 유사하지 않는 상품의 등록 신청하려는 상표가 이미 중국에서 등록을 마친 지명상표를 복사, 모방하거나 또는 번역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의식을 헷갈리게 하고 해당 지명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등록을 불허하며 그 상표의 사용도 금지한다.

제14조 지명상표에 대한 인정은 아래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 1) 상표가 소비자들 가운데서의 인지도
- 2) 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시간
- 3) 상표의 홍보 지속시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 4) 상표가 지명상표로 보호받아 온 기록
- 5) 상표가 유명해진 기타 요소.

제15조 대리인 또는 대표인이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명의로 피 대리인 또는 피 대표인의 상표를 등록 신청하여 피 대리인 또는 피 대표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등록신청이 거부되고 상표사용도 금지된다.

제16조 상표 중에 상품의 지리표지가 있지만 해당 상품의 출산지가 상표에 명기된 지역이 아니며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의식을 전달했을 경우 등록신청이 거부되고 상표의 사용도 금지된다. 그러나 이미 등록을 마친 상표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리표지란 상품 출산지, 상품의 특정된 품질과 신용 또는 기타 특징이 해당 지역의 자연요소 혹은 인문요소로 인해 결정되는 표지를 가리킨다.

제17조 외국인 또는 외국계 업체가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 자국과 중화인민공화국사이 체결한 협의 혹은 두 국가가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처리하거나 대등 원칙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18조 외국인 또는 외국계 업체가 중국에서 상표등록 혹은 기타 상표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인정을 받은 상표대리자격을 소지한 조직에 대리 위탁해야 한다.

제2장 상표등록 신청

제19조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규정된 상품 분류표에 근거하여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의 종류와 명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20조 상표등록 신청인이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에 동일한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 상품 분류표에 따라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등록된 상표를 동류의 기타 상품에 사용할 경우 별도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22조 등록된 상표의 표기를 수정할 경우 다시 등록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 등록된 상표의 등록자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상표등록 신청인이 외국에서 처음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한 당일부터 6개월 내 중국에서 동일한 상품의 동일한 상표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외국과 중국사이 체결한 협의 혹은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 또는 우선권 양도원칙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며, 3개월 내 처음 제출한 상표등록 신청문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서명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기일 내 상표등록 신청문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권 포기로 인정한다.

제25조 상표가 중국 정부에서 주최 또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세계 전람회에서 전시되는 상품에 최초로 사용될 경우, 전시 그 날부터 6개월 내 해당상표 등록자는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상표 등록신청 시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3개월 내 상품을 전시했던 전람회 명칭, 전시 상품이 해당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 전시일자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기일 내 증명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권 포기로 인정한다.

제26조 상표등록 신청을 위해 보고한 사항과 제공한 모든 자료들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벽해야 한다.

제3장 상표등록 심사 및 허가

제27조 본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는 상표등록 신청에 대해 상표국은 1차 심사를 걸친 후 공고를 내린다.

제28조 등록을 신청한 상표가 본 법규의 규정과 어긋나거나 타인이 동류상품 혹은 유사상품에 이미 등록을 했으며, 또는 초보심사를 걸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할 경우 상표국은 신청을 거부하고 공고를 내리지 않는다.

제29조 2명 또는 2명 이상의 상표등록 신청인이 동류 상품 혹은 유사한 상품에서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신청한 신청인에 대해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공고를 내린다. 같은 날에 신청했을 경우 사용이 앞선 상표에 대해 1차 심사를 통과하고 공고를 내리며 기타 신청인의 신청은 거부한다.

제30조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표에 대해서 공고를 내린 당일부터 3개월 내 누구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고기한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비준하며 상표등록증을 발부하고 공고를 한다.

제31조 상표등록 신청 시 타인의 기존 우선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한 지 오래 됐고 사회적으로 일정한 인지도를 갖춘 상표를 비정당 수단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신청이 거부된 상표에 대해서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인에게 서면통지를 해야 한다. 거부된 신청에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서면통지를 받은 그 날부터 15일 내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린 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한 신청인은 서면통지를 받은 당일부터 30일 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1차 심사를 통과하고 공고 난 상표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표국은 이의 제기인과 신청인의 이유를 청취하고 조사를 거친 뒤 판결을 내린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통지 그 날로부터 15일 내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판결한 후 이의제기인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당사자는 통지 받은 당일부터 30일 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표 재검사절차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한다.

제34조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 상표국의 결재에 재검사를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결재에 대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판결은 법정효력을 발생한다.

판결을 거쳐 이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공고를 내린다. 이의가 성립되는 경우 등록을 불허한다.

판결을 거쳐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등록허가를 받은 경우 상표등록 신청인의 상표전용권 획득시간은 1차 심사 공고 3개월 후부터 계산한다.

제35조 상표등록신청 및 상표 재심사신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제36조 상표등록 신청인 또는 등록자가 상표등록 신청문서 혹은 등록문서에 존재하는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수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국은 법에 따라 직권범위 내 수정을 진행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위에서 제기된 오차 수정은 상표 신청문서 또는 등록문서의 실질적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

제4장 등록상표의 연기, 양도 및 사용허가

제37장 등록된 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등록을 허가한 그 날부터 유효하다.

제38조 등록상표 유효기간 만기 후 계속 사용할 경우 만기 전 6개월 내 연기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 신청하지 못한 상표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의 연장기한을 준다. 연장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표는 절차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다.

연기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연기등록은 허가를 통과한 후 공고한다.

제39조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피 양도인은 양도협의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피 양도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등록상표 양도는 허가를 통과한 후 공고하며, 그 당일부턴 피 양도인은 상표전용권을 누릴 수 있다.

제40조 상표등록자는 상표사용 허가계약 체결을 통해 타인에게 자체의 등록상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인은 자체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피 허가인의 상품 품질에 대한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피 허가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타인의 사용허가를 받고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반드시 피 허가인의 명칭 및 상품 출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상표사용 허가계약서는 상표국에 제출하여 등기해야 한다.

제5장 등록상표 쟁의 재정

제41조 이미 등록한 상표가 본 법규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했거나 또는 기만 혹은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등록절차를 밟았을 경우 상표국에서 등록한 상표를 취소하며, 기타 기구 또는 개인은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취소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등록한 상표가 본 법규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등록일부턴 5년 내 상표 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자는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 취소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악의적인 등록에 대해서 지명상표 소유자는 5년의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위에 제기된 2가지 경우 외, 이미 등록한 상표로 인기 된 쟁의는 상표 등록일부턴 5년 내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판결 신청을 받은 후 관련 당사자를 통지하고 기한 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제42조 등록 허가 전 이미 쟁의가 제기되어 판결이 끝난 상표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재 판결을 신청할 수 없다.

제43조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등록상표 유지 또는 취소 판결을 내린 후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당일부턴 30일 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올릴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표판결절차의 상대방 당사자가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할 것을 통지한다.

제6장 상표 사용 관리

제44조 등록상표 사용 시 아래에 지적된 행위 중 한 가지가 발생했을 경우 상표국은 기한 내의 수정을 명령하거나 또는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 1) 등록된 상표를 독단적으로 변경했을 경우
- 2) 등록상표의 등록자 명의, 주소 혹은 기타 등록 사항을 독단적으로 변경했을 경우
- 3) 등록상표를 독단적으로 양도했을 경우
- 4) 3년 동안 사용을 중지했을 경우

제45조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이 열등하면서도 고급제품인양 소비자들을 기만했을 경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상황에 근거하여 기한 내 수정을 명령하는 동시에 통보 혹은 벌금 처벌을 주거나 또는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제46조 취소된 혹은 만기 후 연기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 취소 당일부터 1년 내 상표국은 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신청을 거부한다.

제47조 본 법규 제6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한 내 등록신청을 명령하는 동시 벌금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제48조 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는 동시 아래에 제기된 행위 중 한가지라도 발견되었을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용을 금지시키고 기한 내 수정을 명령하며 또한 통보 혹은 벌금처벌을 내릴 수 있다.

- 1) 등록상표로 사칭하는 행위
- 2) 본 법규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
- 3) 상품품질이 열등하면서도 고급제품인양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

제49조 상표국의 등록상표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통지 받은 당일부터 15일 내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결정을 내린 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전달한다.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통지 받은 당일부터 30일 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본 법규 제45조, 제47조, 제48조 규정에 따라 벌금 처벌을 내린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통지 받은 15일 내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기한 내 기소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등록상표 전용권 보호

제51조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등록이 허가된 상표 및 사용이 허가된 상품에만 제한된다.

제52조 아래에 제기된 행위 중 한 가지 행위가 있을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 침범으로 취급한다.

- 1) 상표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 2)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침범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 3)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 위조 혹은 사사로이 제조하거나 또는 위조 혹은 사사로이 제조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할 경우
- 4) 상표등록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변경하는 동시에 상표를 변경한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 5)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53조 본 법규 제52조에 지적된 행위로 인지된 쟁의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협상해결이 가능하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인 혹은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처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침범 행위를 조성하였다고 판결될 경우 침범 행위를 중지시키고 침범 상품 및 침범 상품 제조 혹은 등록상표 표지 위조에 사용한 도구를 몰수하거나 소각하며 동시에 벌금처벌을 내린다.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통지 받은 15일 이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기한 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또한 처벌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집행하는 공상행정부문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상표전용권 침범관련 배상금액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범한 행위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적 추정을 가하고 범죄를 조성했을 경우 즉시로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제55조 현 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미 취득한 위법 혐의증거 또는 신고에 근거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범으로 혐의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1) 관련 당사자에게 문의를 제기하고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범한 행위에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2) 당사자의 침범활동에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들을 검열 및 복사할 수 있다.
- 3)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범활동을 진행된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4) 침범활동과 관련된 물품들을 검사하고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 침범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은 차압 또는 압수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이상 제기된 법적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 호응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56조 상표 전용권 침범관련 배상금 액수는 침범자가 그 동안 침범행위로 획득한 수익 또는 피 침범자가 그 동안 침범행위로 인한 손실 금액에 의해 결정되며, 여기에는 피 침범자가 침범행위를 제지시키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금액도 포함된다.

이상 지적된 침범자가 획득한 소득 또는 피 침범자의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인민법원이 침범행위의 상황에 따라 50만 위안 이하의 배상 판결을 내린다.

판매한 상품이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동시에 제품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도 확실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침범자에 대해서는 배상벌금을 내리지 않는다.

제57조 상표 등록인 또는 이익 관계자가 타인이 등록상표 전용권 침범행위를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메울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침범 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재산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93-96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에 지적된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제58조 침범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가 소실되거나 이후 재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표등록인 또는 이익관계자는 고소 전 인민법원에 증거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접수 후 48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즉시 집행에 옮겨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거절할 경우 신청은 거부한다.

인민법원이 보호조치를 취한 후 15일 내 신청인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조치를 해제한다.

제59조 상표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일 종류 상품에서 상표등록인의 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피 침범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외, 형사책임도 추궁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또는 사사로이 제조거나 이런 표지를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피 침범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외, 형사책임도 추궁한다.

위조 등록상표 상품인지 알고 있으면서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피 침범자의 손실 배상 및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0조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사사업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 및 상표등록/관리/재심사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근무자는 상표대리업무와 상품생산운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61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건전한 내부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사사업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사업 종사자의 법률 및 행정법규 집행상황과 규율 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제62조 상표등록, 관리 및 재심사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사업 종사자가 직무소홀, 권리남용 혹은 개인 사정을 돌보는 등 법을 어기고 상표등록, 관리, 재심사를 처리하거나 당사자의 재물을 받는 등 비 정당한 이익을 획득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8장 부칙

제63조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관련 사항을 처리할 경우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금은 별도로 결정한다.

제64조 본 법규는 1983년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한다. 1963년 4월 10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상표관리조례》는 동시 폐지되며 본 상표관리법과 저촉되는 기타 상표관리 관련규정도 모두 실효 한다.

본 법규 실시 전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6.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计算机软件保护条例)

2001년 12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39호

2002년 1월 1일부터 실시

제1장 총칙

제1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전파 및 사용 중에 발생한 이익관계를 조절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응용을 장려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및 국민경제 정보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로 약칭)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타 관련 문서 파일을 가리킨다.

제3조 본 조례에 사용된 아래 용어의 정의

- 1) 컴퓨터 프로그램 : 모종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로 집행할 수 있는 코드화 명령계열 혹은 자동으로 코드화 명령계열로 전환이 가능한 부호화 명령계열 혹은 부호화 어순계열을 가리킨다. 동일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프로그램과 목표 프로그램은 동일 작품이다.
- 2) 문서파일 : 프로그램 설계 설명서, 공정도, 가입자 설명서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설계, 기능규격, 개발 상황, 테스트 결과 및 사용 방법을 서술한 문자 자료 및 도표를 가리킨다.
- 3) 소프트웨어 개발자 : 실질적으로 개발 작업을 조직하고 진행하며 개발을 완성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법인 혹은 기타 기구 또는 자체가 구비한 조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성하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 4) 소프트웨어 저작권인 :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기구를 가리킨다.

제4조 본 조례의 보호 대상은 반드시 개발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이미 모종의 유형 물체 상에 고정되어진 소프트웨어이다.

제5조 중국 공민, 법인 혹은 기타 기구는 자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이미 발표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모두 본 조례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보유한다.

외국인, 무국적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우선적으로 중국 내에서 발표될 경우 본 조례에 근거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다. 외국인 혹은 무국적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개발자 소속국가 혹은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와 중국사이 체결한 협의 또는 중국이 참여한 국제 조약에 근거하여 보유한 저작권은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본 조례는 소프트웨어 중 사용된 사상, 처리과정, 조작방법, 수학기법 등 모두를 폭넓게 보호한다.

제7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문의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등록기구에서 등록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등록기구에서 발부한 등록 증명문서는 등록사항의 초보 증명서이다.

소프트웨어 등록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등록 요금표준은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문과 국무원 가격 주관부문의 토론 후 규정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8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아래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

- 1) 발표권리 : 즉 소프트웨어를 대중에게 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
- 2) 서명권리 : 즉 개발자의 신분을 명기하고 소프트웨어 상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 3) 수정권리 :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완, 삭제 혹은 명령 및 어순 수정할 수 있는 권리
- 4) 복제권리 : 즉 소프트웨어를 한 세트 혹은 여러 세트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 5) 발행권리 : 즉 판매 혹은 증여 방식으로 공중에 소프트웨어 원본 혹은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6) 임대권리 : 즉 타인이 유료로 소프트웨어 임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함
- 7)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리 : 즉 공중이 개인 자체 설정시간 및 장소에서 소프트웨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유선 혹은 무선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8) 번역권리 : 즉 소프트웨어를 기존의 한 자연언어문자로부터 다른 한 자연언어문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
- 9)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마땅히 누리게 되는 기타 권리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타인이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행사할 것을 허가할 있으며 동시에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수를 획득할 권한을 가진다.

제9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귀속되며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함.

반대 증거가 없을 경우 소프트웨어에 서명한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기구를 개발자로 인정한다.

제10조 둘 이상의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기구가 협력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협력 개발자들이 체결한 서면 계약 약정에 따른다. 서면 동의 혹은 계약에서 명확한 약정이 없고, 협력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분할사용이 가능할 경우 개발자는 독자로 개발한 부분에 대하여 독립 저작권을 누릴 수 있지만 저작권 행사시 협력 개발한 소프트웨어 전체 저작권 범위까지 확대시킬 수는 없다. 협력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분할 사용 될 수 없는 경



우 그 저작권은 협력 개발자 공동으로 누리게 되며 협상을 걸쳐 행사하게 된다. 협상이 일치하지 않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임의의 한 측이 다른 한 측에게 양도 외 기타 권리를 행사함에 지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협력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얻어지는 소득은 마땅히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제11조 타인의 위탁을 받고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가 체결한 서면 약정협약에 따라 귀속된다. 서면 협의가 없거나 혹은 협의에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저작권은 위탁받은 자가 보유하게 된다.

제12조 국가 기구에서 임무 하달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귀속 및 행사는 프로젝트 임무서 혹은 계약서 규정에 따른다. 만약 프로젝트 항목 임무서 및 계약서 중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임무를 접수받은 기구에 귀속된다.

제13조 자연인이 법인 혹은 기타 기구에서 재임기간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있을 경우 그 저작권은 해당 법인 혹은 기타 기구에 귀속되며 해당 법인 혹은 기타 기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자연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1) 회사 자체업무에서 명확하게 지적한 개발목표에 의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
- 2)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자체업무 종사활동에서 예견한 결과 혹은 자연결과
- 3) 법인 혹은 기타 기구의 자금, 전용장비, 비 공개된 전문 정보 등 물자기술 조건을 사용하여 개발하였으며 법인 혹은 기타 기구에서 책임을 담당할 소프트웨어

제14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성된 당일부터 발생한다.

자연인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자연인 평생 및 사망 후 50년이며 자연인이 사망된 후 제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끝난다. 협력 개발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간은 가장 늦게 사망한 자연인이 사망된 후 제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끝난다.

법인 혹은 기타 기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간은 50년이며 소프트웨어를 처음 발표한 후 제 50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끝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성한 당일부터 50년 내 발표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보호를 받지 않는다.

제15조 소프트웨어 제작권을 자연인이 소지하였을 경우 해당 자연인이 사망한 후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계승자는 《중화인민 공화국 계승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서명권 외의 기타권리를 계승받는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법인 혹은 기타 기구에서 소지하였을 경우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변경되거나, 끝난 후 그 저작권은 본 조례에서 규정한 보호기간 내 그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법인 혹은 그 기타기구가 소지하며, 법인 혹은 기타기구에서 그 권리의무를 이어받지 않았을 경우 그 저작권은 국가에서 소지한다.

제16조 소프트웨어의 합법적인 복제품 소유자는 아래의 권리를 누린다.

- 1) 사용 수요에 근거하여 해당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 기능을 구비한 장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권리
- 2) 복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예비 복제품을 제작, 이런 예비 복제품은 어떤 방식이

든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지 못하며, 모든 사람들이 해당 복제품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경우 예비 복제품을 소각하여야 한다.

- 3) 해당 소프트웨어를 실제 컴퓨터 응용환경 혹은 그 기능, 성능 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 그러나 계약서에서 다른 약정을 하였을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수정 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한다.

제17조 소프트웨어가 내포한 설계사상 및 원리를 학습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설치, 디스플레이, 전송 혹은 저장 등 방식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에게 해당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제3장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허가 및 양도

제18조 타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 행사를 허가할 경우 사용 허가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 허가 계약서 중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명확하게 허가 받지 않은 자는 행사할 권한이 없다.

제19조 타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독자 행사를 허가할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독자허가라고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 받은 행사권리는 비 독자 권리로 취급한다.

제20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타인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 독자 행사를 허가하는 허가계약을 체결하거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무원 저작권 행정관리부의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등록기구에 등록할 수 있다.

제22조 중국 국민, 법인 혹은 기타 기구가 외국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허가 혹은 양도할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 책임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혹은 본 조례에 있는 별도의 규정 외에 아래의 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근거하여 침해 정지, 영향 소거, 사죄, 손해 배상 등을 하여야 한다.

-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소프트웨어를 발표 혹은 등록할 경우
- 2) 타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작품으로 허위 발표 혹은 등록할 경우
- 3) 합작자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체 단독으로 완성한 작품으로 취급하고 발표 혹은 등록할 경우
- 4) 타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상에 서명을 하거나 타인의 소프트웨어 상의 서명을 수정할 경우
- 5)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소프트웨어를 수정, 번역할 경우



6) 기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본 조례 혹은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있는 별도의 규정 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아래의 행위가 있을 경우 행위에 따라 침해 정지, 영향 소거, 사죄,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사회 공공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에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령, 위법하여 얻은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복제품을 몰수, 소각하여 벌금을 물게 한다. 행위가 엄중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에서는 불법복제품 제작에 사용한 소재, 도구, 장비 등을 몰수하며, 형법에 저촉하였을 경우 형법상에 관련된 저작권 침해 죄, 불법복제품 판매 죄 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된다.

- 1) 저작자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 혹은 일부를 불법 복제하였을 경우
- 2)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를 공중에 발행, 임대 혹은 정보망을 통하여 전파할 경우
- 3)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채택한 기술시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파괴할 경우
- 4) 소프트웨어 권리관리 전자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경우
- 5)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본 조의 제1)항 혹은 제2)항 행위가 있을 경우 각각 100위안 혹은 제품가격의 5배 이상 벌금을 부과하며 제3)항, 제4)항 혹은 제5)항 행위가 있을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벌금 금액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48조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제26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타인이 자체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실시 혹은 실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파악하고 제때에 제지하지 않은 이유로 자체의 합법적 권익에 큰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49조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출하기 전 인민법원에 관련행위 정지 및 재산보전 조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 침해행위 제지를 위하여 증거가 파괴될 위험성이 있거나 이후 증거를 채집하기 어려운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50조 규정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출하기 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소프트웨어 복제품 출판자, 제작자가 자체의 출판, 제작행위가 합법적 권한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거나 소프트웨어 복제품 발행자, 임대자가 자체 발행, 임대한 복제품의 합법적 근원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29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선택할 수 있는 표현방식의 한계로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비슷할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 침해행위가 구성되지 않는다.

제30조 소프트웨어 복제품 소지자가 해당 소프트웨어가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반드시 알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복제품의 사용을 정지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복제품의 사용 정지 혹은 소각으로 인하여 복제품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경우 복제품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 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쟁의는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계약쟁의는 계약서 중 중재조례 혹은 사후 달성된 서면 중재 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약 중 중재조례를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사후에도 서면 중재협의를 없을 경우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32조 본 조례 실행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는 침해행위 발생시의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33조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동시에 1991년 6월 4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는 폐지된다.



7.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 (技术进出口管理条例)

중화인민공화국령(제331호)

(관련 문서: 법률법규사법 해설4편9차)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조례》는 2001년 10월 31일 국무원 제4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 공포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총리 주룽지

2001년 12월 10일

제1장 총칙

제1조 기술 수출입 관리를 규범하고, 기술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이라 약칭)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기술 수출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로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로 무역, 투자 혹은 경제기술합작 방식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항 규정은 특히 양도, 특허 신청권 양도, 특허 실행 허가, 기술 기밀 양도, 기술 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기술 이전을 포함한다.

제3조 국가는 기술 수출입에 대해 통일 관리 제도를 실시하며 합법적인 공평, 자유 원리에 따라 기술 수출입 질서를 유지한다.

제4조 기술 수출입은 반드시 국가의 산업 정책, 과학 기술 정책과 사회 발전 정책에 부응하여야 하며, 중국 경제 과학 기술 진보 및 대외 경제기술합작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 경제 기술 권익을 수호하는데 유리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자유적인 기술 수출입을 허락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 규정 관련 별도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 국무원 대외 경제 무역 주관 부처(이하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처라 약칭)는 대외 무역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기술 수출입 관리 작업을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처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처의 위탁에 따라 본 행정 지역의 기술 수출입 관리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입 관련 직책을 수행한다.

제2장 기술 수입 관리

제7조 국가는 선진적이고 적절한 기술 수입을 격려한다.

제8조 대외 무역법 제16조, 제17조 규정의 기술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국무원 관련 부처와 수입 금지 및 제한 기술 목차를 공동 제정하고 조절한다.

제9조 금지에 속하는 기술은 수입하지 못한다.

제10조 제한에 속하는 기술은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입하지 못한다.

제11조 수입 제한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에 기술 수입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별첨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술 수입 프로젝트가 관련 부문의 허가를 통해야 할 경우 반드시 관련 부문의 허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기술 수입 신청서를 받은 후 반드시 국무원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심사해야 하며, 받은 날부터 30일 작업일 내 허가 혹은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 기술 수입 신청이 비준을 통과하면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기술 수입 허가 의향서를 발부한다.

수입 경영자는 기술 수입 허가를 받은 후 대외적으로 기술 수입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수입 경영자는 기술 수입 계약서를 체결한 후 반드시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에 기술 수입 계약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 수입 허가를 신청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기술 수입 계약서의 진실성에 대해 심사하며 해당 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기술 수입에 대해 허가 혹은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제15조 신청인은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에 기술 수입 신청서 제출 시 이미 체결한 기술 수입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반드시 본 조례 제12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와 기술 수입 계약서의 진실성에 대해 심사하며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40일 작업일 내 기술 수입에 대해 허가 혹은 불허 결정을 해야 한다.

제16조 기술 수입을 허가한 것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가 기술 수입 허가증을 발부한다. 기술 수입 계약서는 기술 수입 허가증 발부 일부터 발효한다.

제17조 자유 수입에 속하는 기술 수입은 계약서 등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자유 수입에 속하는 기술 수입 계약서는 체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서 등록을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18조 자유 수입에 속하는 기술 수입은 반드시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에 등록하여야 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기술 수입 계약서 등록 신청서
 - 2) 기술 수입 계약서 사본
 - 3) 양측의 법적 지위 증명 문서
- (관련문서: 법률 규정에 관한 사법 해석1편1차)

제19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본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문서를 받은 후 3일 작업일 내 기술 수입 계약서를 등록해야 하며 기술 수입 계약서 등록증을 발부해야 한다.

제20조 신청인은 기술 수입 허가증 혹은 기술 수입 계약서 등록증으로 외환, 은행, 세무, 해관 등 부문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1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혹은 등록한 기술 수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허가증 혹은 등록증 재 수속을 밟아야 한다.

허가증 혹은 등록한 기술 수입 계약서가 종료되면 즉시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외상 투자 기업을 설립할 경우 외상이 기술을 투자하여 해당 기술의 수입하게 되면 반드시 외상 투자 기업 설립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 혹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3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와 관련 부처 및 담당자는 기술 수입의 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 알게 된 상업 비밀에 대해 기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24조 기술 수입 계약서의 양도인은 반드시 자기가 제공 기술의 합법 소유자 혹은 양도, 허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기술 수입 계약서의 양도받은 사람은 계약서의 협의에 따라 양도인이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제3자 권한을 침해하였을 경우 양도받은 사람은 반드시 즉시 양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양도인은 통지를 받은 후 양도받은 사람을 협조하여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기술 수입 계약서의 양도받은 사람은 계약서의 협의에 따라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5조 기술 수입 계약의 양도인은 제공하는 기술의 안정성, 정확성, 유효성을 보증하고 협의한 기술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26조 기술 수입 계약서의 양도받은 사람, 양도인은 반드시 계약서에 협의한 기밀 범위와 기밀 기한 내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에서 비공개 부분에 대해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기밀 기한 내 기밀의무를 지는 측의 요인이 아닌 사유로 기밀 기술이 공개되었을 경우 기밀 의무는 즉각 종료된다.

제27조 기술 수입 계약서의 유효 기한 내 기술 개선 성과는 기술을 개선한 측에 속한다.

제28조 기술 수입 계약 기한 만기 후 기술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평 합리 원리에 따라 계속 사용과 관련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 기술 수입 계약에서 아래 제한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

- 1) 양수인에게 기술 수입에 필요로 하지 않는 별첨 조건을 강제하는 조항,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 소재, 제품, 장비 혹은 서비스를 구입하는 조항.
- 2) 양수인에게 특허 유효 기간 만기 혹은 특허를 무효로 공포한 기술의 사용 요금 지불 혹은 관련 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 3)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제공하는 기술을 개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혹은 개선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조항.
- 4)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제공하는 기술과 유사한 기술 혹은 경쟁 기술 소스를 취득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조항.
- 5) 양수인에게 소재, 부품, 제품 및 장비의 구매 경로 또는 소스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 6) 양수인에게 제품 생산 규모, 품목 혹은 판매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 7) 양수인에게 수입 기술을 이용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을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제3장 기술 수출 관리

제30조 국가는 성숙한 산업화 기술 수출을 격려한다.

제31조 대외무역법 제16조, 제17조 규정 가운데 한 가지에 속하는 기술 수출은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국무원 기타 부처와 공동으로 기술 수출 금지 혹은 제한하는 목록을 작성 조절하여 공포한다.

제32조 수출 금지에 속하는 기술은 수출하지 못한다.

제33조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은 허가증 제도를 실시하며 허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제34조 수출 제한에 속하는 기술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기술 수출 신청서를 받은 후 반드시 국무원 과학 기술 부처와 공동으로 신청한 기술을 심사해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작업일 내 허가 혹은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수출 제한 기술에 대해 관련 부문의 기밀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기술 수출 신청을 허가 받으면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기술 수출 허가 의향서를 발부한다.

신청인은 기술 수출 허가 의향서를 받은 후 대외적으로 실질적 협상을 통해 기술 수출 계



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 신청인은 기술 수출 계약서를 체결한 후 반드시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 수출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기술 수출 허가 의향서
- 2) 기술 수출 계약서 사본
- 3) 기술 자료 수출 리스트
- 4) 계약 양측의 법률 지위 인증 증명 서류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기술 수출 계약서의 진실성을 심사하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 기술 수출 허가 혹은 불허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 기술 수출 허가를 받으면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기술 수출 허가증을 발부한다. 기술 수출 계약서는 기술 수출 허가증 발부일 부터 발효한다.

제39조 자유 수출에 속하는 기술은 계약서 등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자유 수출에 속하는 기술 수출은 계약서 체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등록시간을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40조 자유 수출에 속하는 기술 수출은 반드시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기술 수출 계약서 등록 신청서
- 2) 기술 수출 계약서 사본
- 3) 계약서 체결 양측의 법률 지위 인증 증명 문서
(관련 문서: 법률 규정 사법 해석 1편 1차)

제41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본 조례 제40조에 규정한 문서를 받은 3일 작업일 내 기술 수출 계약서를 등록해야 하며 기술 수출 계약서 등록증 발부한다.

제42조 신청인은 기술 수출 허가증 혹은 기술 수출 계약서 등록증으로 외환, 은행, 세무, 해관 등 부문에서는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3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혹은 등록한 기술 수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허가증 혹은 등록증을 재 신청해야 한다.

허가 혹은 등록한 기술 수출 계약서 기한이 만기 완료되면 반드시 제때에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44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와 관련 부처 및 담당자는 기술 수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알게 된 상업 비밀에 대해 기밀을 준수하는 의무가 있다.

제45조 핵 기술 및 관련 기술, 감독 제어하는 화학품 생산기술, 군사 기술 등 수출 관제 기술은 관련 행정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법률 책임

제46조 수출 혹은 수입을 금지하는 기술 혹은 허가 없이 사사로이 수출 혹은 수입을 제한하는 기술을 수입 수출할 경우 밀수 죄, 비법 운영 죄, 국가 기밀 누설죄 혹은 기타 범죄 구성의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범죄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정상에 따라 해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하거나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로부터 경고하고 비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그의 대외 무역 경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 사사로이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수출 혹은 수입을 제한하는 기술을 수입 혹은 수출할 경우 불법 운영 죄 및 기타 범죄 구성의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그 정상에 따라 해관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하거나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로부터 경고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그의 대외 무역 경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 기술 수출입 허가증 혹은 기술 수출입 계약서 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경, 매매할 경우 불법 운영 죄 및 국가 기관 공문, 증명서, 날인의 위조, 변경, 매매 죄의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해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는 그의 대외 무역 경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9조 사기 혹은 기타 비 정당한 수단으로 기술 수출입 허가증을 취득할 경우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 주관부처는 그의 기술 수출입 허가를 취소하고 대외 무역 운영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0조 사기 혹은 기타 비 정당한 수단으로 기술 수출입 계약서 등록증을 취득할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 주관부처는 기술 수출입 계약서 등록을 취소하고 대외 무역 운영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1조 기술 수출입 관리 담당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기밀 혹은 상업 기밀을 누설할 경우 국가 기밀 누설죄 및 상업 기밀 누설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준다.

제52조 기술 수출입 관리 담당자가 직책을 남용하고 독직행위를 하든가 직책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받거나 강제로 요구할 경우 직책 남용 죄, 수뢰 죄 및 기타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 처분을 준다.

제5장 부칙

제53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처에서 결정한 기술 수출입의 허가, 등록 및 행정 처분의 처벌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제54조 본 조례 공포 전 국무원에서 제정한 기술 수출입 관리에 관한 규정이 본 조례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

제55조 본 조례는 2002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 1985년 5월 24일 국무원에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도입 계약 관리 조례》와 1987년12월30일 국무원에서 허가하고 1988년 1월 20일 대외 경제 무역부에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도입 계약 관리 조례 실시 세칙》은 폐지한다.

8. 음반제품 관리조례 (音像制品管理条例)

(2001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341호, 2002년 2월 1일부터 실시)

제 1 장 총칙

제1조 음반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반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번영을 추진, 인민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 및 정신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콘텐츠가 등록된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코드, 레이저 CD, 레이저 VCD 등 음반제품의 출판·제작·복제, 수입, 도매, 소매, 임대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음반제품의 출판·제작·복제와 수입, 도매, 소매, 임대 시 반드시 헌법 및 관련 법률, 법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인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여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에 유익한 사상·도덕·과학기술 및 문화지식을 전파하여야 한다. 음반제품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

-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 2) 국가통일, 주권 및 영토를 위협하는 내용
- 3) 국가기밀 누설, 국가 안전 혹은 국가명예 및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내용
- 4) 민족감정, 민족차별을 조성하여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풍속 및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 5) 사이비 종교,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 6)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전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사회공덕 혹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4조 국무원 출판행정부는 전국의 음반제품 출판·제작·복제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국무원 문화행정부는 전국의 음반제품 수입, 도매, 소매, 임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행정부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직책의 배분에 따라 관련 음반제품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출판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이하 출판행정부문으로 약칭)는 본 행정구역 내 음반제품 출판·제작·복제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음반제품 수입, 도매, 소매, 임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범위에 근거하여 관련 음반제품의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국가는 음반제품 출판·제작·복제와 수입, 도매, 소매, 임대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의 기구 및 개인은 음반제품의 출판·제작·복제와 수입, 도매, 소매, 임대 등 활동에는 종사할 수 없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발부한 허가증 및 허가서류는 빌려주거나 임대, 판매 혹은 기타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국무원 출판 행정부와 문화 행정부는 음반사업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배분에 따라 각각 전국 음반출판기구, 음반복제기구, 음반제품 완성품 수입 경영기구의 수량, 배치, 구조를 확정한다.

제7조 음반제품 경영활동 관리감독부서 및 부서의 종사인원들은 음반제품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며 음반제품 경영기구의 경영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제 2 장 출판

제8조 음반출판기구 설립 시 아래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 1) 음반 출판기구 명칭, 정관
- 2) 국무원 출판행정관리 부문의 인증을 받은 주최기구 및 주관기구
- 3) 업무 범위 확정
- 4) 업무 범위 수요에 적합한 조직 기구 및 국가에서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음반 출판 전문인원
- 5) 업무 범위 수요에 적합한 자금, 장비, 장소
- 6) 법률, 행정의 법정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의 음반출판기구 설립 심사허가는 이상의 조건 외 음반출판기구 총 수량, 배치, 구조 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음반출판기구 설립 신청기구는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의 심사허가를 거친 후 국무원 출판행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무원 출판행 정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당일부터 60일 내에 허가 혹은 불허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기구에게는 《음반제품 출판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음반제품 출판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한 후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게 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구에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음반출판기구 명칭, 주소
- 2) 음반출판기구의 주최기구 및 주요 기구명칭, 주소
- 3) 음반출판기구의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담당자 성명, 주소, 자격증명서
- 4) 음반출판기구의 자금출처 및 액수

제10조 음반출판기구의 명칭, 주최기구 혹은 주유기구의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출판기구와 합병 혹은 합병/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음반출판기구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동시에 기존에 등록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등록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음반출판기구의 주소,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출판경영활동을 중지할

경우 반드시 기존에 등록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등록 혹은 취소등록을 해야 하며 동시에 국무원 출판행정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음반출판기구의 연도 출판계획 및 국가안전, 사회안정 등의 측면이 언급된 중요한 과제는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 출판행정부에 등기해야 하며 출판 전 등기하지 않은 중요과제 음반제품은 출판하지 않는다.

제12조 음반제품 출판기구는 자체가 출판한 음반제품 및 포장에 선명하게 출판기구 명칭, 주소, 음반제품 출판코드, 출판시간, 저작권인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입한 음반제품 출판 시 수입 허가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음반출판기구는 반드시 음반제품 출판 당일부터 30일 내에 국가도서관, 중국판본도서관 및 국무원 출판행정부에 무료 샘플을 보내야 한다.

제13조 음반출판기구는 임의의 기구 혹은 개인에게 자체 기구 명칭을 빌려주거나 임대 혹은 기타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임의의 기구 혹은 개인에게 자체 기구의 출판번호를 판매 혹은 기타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임의의 기구 및 개인은 음반출판기구 명칭 구매, 임대 및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혹은 출판번호 구매, 복제 등의 형식으로 음반제품 출판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도서 출판사, 신문사, 잡지사, 전자출판물 출판사는 본 출판물 세트 외의 음반제품을 출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무원 출판행정부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출판물과 세트외 음반제품 출판이 가능하며 동시에 음반출판기구를 참조로 권리 및 담당 의무를 가진다.

제15조 음반출판기구는 홍콩, 마카오, 대만 혹은 외국의 조직, 개인 협력으로 음반제품을 출판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출판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16조 음반출판기구는 편집 책임제도를 실시, 음반제품의 내용이 본 조례 규정에 부합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음반출판기구 외의 기구가 독자적 음반제품 제작업무 종사 기구(이하 음반제품 제작기구로 약칭) 설립을 신청할 경우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 정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그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 혹은 불허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 허가를 통과한 기구에게는 《음반제품 제작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음반제품 제작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후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게 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구에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방송, TV프로그램 제작 경영기구의 설립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음반제작기구 명칭, 주소
- 2) 음반제작기구의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담당자 성명, 주소, 자격증명서
- 3) 음반제작기구의 자금 출처 및 액수



음반제작기구 설립 신청에 대한 심사허가는 이상의 조건 외 음반제작기구 총 수량, 배치, 구조 계획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18조 음반제작기구의 명칭 혹은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제작기구 합병 혹은 합병/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음반제작기구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본 조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동시에 기존에 등록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등록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음반제작기구의 주소,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제작경영활동을 중지할 경우 반드시 기존에 등록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등록 혹은 취소등록을 해야 하며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19조 음반출판기구는 《음반제품 제작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구에 음반제품 제작을 위탁하지 않는다.

음반제작기구는 음반제품 제작 위탁 접수 시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위탁한 출판기구와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한 출판기구의 《음반제품 출판허가증》 혹은 본 출판물에 대한 증명서 및 위탁한 출판기구에서 조인한 음반제품 제작 위탁서를 검증해야 한다.

음반제작기구는 음반제품 출판, 복제, 도매, 소매, 임대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제 3 장 복제

제20조 음반제품 복제기구 설립 조건

- 1) 음반제품 복제기구 명칭 및 정관
- 2) 확정된 업무범위
- 3) 업무범위 내 필요한 조직기구 및 인력
- 4) 업무범위 내 필요한 자금, 설비 및 복제 장소
- 5)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음반제품 복제기구 설립 신청에 대한 심사허가는 이상의 조건 외 음반제품 복제기구 총 수량, 배치 및 구조 계획의 제한을 받는다.

제21조 음반제품 복제기구 설립 신청 시 현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국무원 출판행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무원 출판행정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당일로부터 60일 내 허가 혹은 불허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기구에게는 《음반제품 복제 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음반제품 복제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한 후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게 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구에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 1) 음반제품 복제기구 명칭, 주소
- 2) 음반제품 복제기구의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담당자 성명, 주소
- 3) 음반제품 복제기구의 자금출처 및 액수

제22조 음반제품 복제기구의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제품 복제기구와 합병 혹은 합병/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음반제품 복제기구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된 등록수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음반제품 복제기구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복제경영활동을 중지할 경우 반드시 기존에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등록 혹은 취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무원 출판행정부에登記해야 한다.

제23조 음반제품 복제기구는 음반제품 복제 위탁 접수 시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위탁한 출판기구와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한 출판기구의 《음반제품 출판허가증》과 영업허가증 복사본, 조인한 음반제품 복제 위탁서 및 저작권인의 라이선스 증명서를 검증 받아야 한다. 위탁받고 복제한 음반제품이 비매품일 경우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출판행정부에서 심사 발급한 동시 위탁기구에서 조인한 음반제품 복제 위탁서를 검증 받아야 한다.

음반제품 복제기구는 음반제품 복제를 완성한 당일부터 2년 내 위탁계약서, 복제한 음반제품 샘플 및 검증을 통과한 관련 증명문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제24조 음반제품 복제기구는 음반제품 출판기구가 아닌 기구 혹은 개인의 경영성 음반제품 복제의 위탁을 접수받지 않으며 사사로이 음반제품을 복제하거나 도매, 소매, 임대하지 않는다.

제25조 CD복제 업무에 종사하는 음반제품 복제기구에서 CD를 복제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출판행정부에서 심사·발부한 레이저디지털 메모리 정품 식별코드가 새겨져있는 세라믹 금형을 사용해야 한다.

제26조 음반제품 복제기구는 외국의 음반제품 복제 위탁을 접수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음반제품의 샘플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하는 동시에 저작권인의 라이선스 증명서를 갖고 법에 따라 저작권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복제한 음반제품은 반드시 전부 외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제 4 장 수입

제27조 음반제품의 완제품 수입은 국무원 문화행정부에서 지정한 음반제품 완제품 수입 경영기구만이 가능하며 지정하지 않은 기구 혹은 개인은 음반제품 완제품 수입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8조 출판을 위한 음반제품의 수입·소매·도매·임대는 수입음반 제품의 완제품이 국무원 문화행정부의 내용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국무원 문화행 정부는 음반제품 내용심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허가 혹은 불허의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를 통과 한 기구에게 허가문서를 발급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구에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출판을 위한 음반제품의 수입 기구 및 음반제품 완제품 수입 경영기구는 국무원 문화행정부의 허가문서를 가지고 해당관청에 가서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9조 출판을 목적으로 수입한 음반제품의 저작권은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30조 연구 및 교수를 위해 수입한 음반제품은 반드시 음반제품 완제품 수입경영기구에 위탁하여 본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진람·진사로 인해 수입된 음반제품은 국무원 문화행정부의 허가를 거친 후 해관에서 임시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한 음반제품은 경영성 복제·도매·소매·임대 및 상영을 불허한다.

제 5 장 도매·소매·임대

제31조 음반제품 도매·소매·임대기구를 설립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음반제품 도매·소매·임대기구 명칭 및 정관
- 2) 업무범위의 확정
- 3) 업무범위 내 필요한 조직기구 및 인력
- 4) 업무범위 내 필요한 자금 및 장소
- 5)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32조 전국적으로 음반제품 경영체인점 설립을 신청할 경우, 본부 소재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문화행정부에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문화행정부서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음반제품의 도매기구 설립을 신청할 경우 현지 성, 자치주,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의 허가를 통과해야 한다. 음반제품 소매 및 임대업무에 종사를 신청할 경우 현급 지방 인민정부 문화행정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문화행 정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허가 혹은 불허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기구에게 《음반제품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음반제품 경영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한 후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게 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기구에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음반제품 경영허가증》에 반드시 음반제품 경영활동의 종류를 밝혀야 한다.

제33조 음반제품 도매·소매·임대기구의 명칭 혹은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기타 음반제품의 도매·소매·임대기구 합병 혹은 합병/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음반제품의 도매·소매·임대기구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기존에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음반제품 도매·소매·임대기구의 주소,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경영활동을 중지할 경우 반드시 기존에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등록 혹은 취소등록을 해야 하며 동시에 기존에 허가한 문화행정관리부에 등기해야 한다. 음반제품 소매·임대경

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업무범위, 주소를 변경하거나 경영을 정지할 경우 마찬가지로 기존에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등록 혹은 취소등록을 해야 하며 동시에 기존의 허가한 문화행정관리부에 등기해야 한다.

제34조 음반제품 출판기구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기구에서 출판한 음반제품을 도매·소매할 수 있다. 기타 기구에서 출판한 음반제품을 도매·소매할 경우 본 조례 제32조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는 동시에 기존에 등록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5조 정부는 음반제품 판매를 주 업무로 하는 중외 합작경영회사 설립을 허가한다.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보조는 국무원 문화행정부문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제36조 음반제품 도매기구 및 음반제품 소매·임대업무에 종사하는 기구 혹은 개인은 비 음반제품 출판기구에서 출판한 음반제품 및 비 음반제품 복제기구에서 복제한 음반제품을 경영할 수 없으며 국무원 문화행정부의 허가 없이 수입한 음반제품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범한 음반제품은 경영하지 않는다.

제 6 장 벌칙

제37조 출판행정부, 문화행정부, 공상행정관리부 혹은 기타 관련 부서 및 사업직원은 업무상의 이점을 이용, 타인의 재물 혹은 기타 이익을 탐하여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음반제품의 출판·제작·수입·도매·소매·임대기구 설립 등을 허가하거나 또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발견한 상황에서도 처벌을 하지 않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빚었을 경우 책임 담당 주관직원 및 관련 직원은 형법 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 유기죄 및 기타형벌 규정에 근거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자는 강직 혹은 퇴직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38조 음반제품 경영활동 관리감독부의 사업직원이 음반제품 경영활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음반제품 경영업체의 경영활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퇴직 또는 제명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음반제품 경영활동 관리감독부가 제37조에 명시된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책임 담당 직원 및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직원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39조 허가 없이 사사로이 음반제품 출판·제작·복제·수입·도매·소매·임대·방송 기구를 설립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음반제품 출판·제작·복제 혹은 수입·도매·소매·임대·방송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에 대해 출판행정관리부와 공상행정관리부는 각자 법정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형법의 불법 경영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내리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불법 경영한 음반제품에 대한 불법소득 및 불법활동에 사용된 전 장비를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10,000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경영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10,000위안 이하인 경우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본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한 내용을 포함한 음반제품을 출판하거나 본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혹은 반드시 알아야하는 상황에서, 음반제품을 제작·복제·도매·소매·임대·방송할 경우 형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한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출판행정부, 문화행정부, 공안부에서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정업조정을 명령, 위법경영 음반제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경영소득이 10,000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5배 이상 ~ 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10,000위안 이하인 경우 50,000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행위가 엄중할 경우 경영허가증 발부 기구에서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41조 음반제품 밀수행위에 대해 형법의 밀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해관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제42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출판행정부에서 위배행위 정지명령을 내리며 불법경영 음반제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소득이 10,000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5배 이상~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10,000위안 이하인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행위가 엄중할 경우 정업정돈을 명령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 1) 음반출판단위가 기타 기구 혹은 개인에게 기구명칭을 빌려주거나 임대·판매 혹은 기타 형식으로 양도했을 경우, 또는 출판번호를 판매 혹은 기타 형식으로 양도할 경우
- 2) 음반제품 출판기구가 《음반제품제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구에 제품제작을 위탁하거나 《음반제품복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구에 제품복제를 위탁했을 경우
- 3) 음반제품 출판기구가 국무원 문화행정부의 허가 없이 사사로이 음반제품을 수입할 경우
- 4) 음반제품 출판기구와 음반제품 복제기구가 본 조례규정의 음반제품출판기구 위탁서 및 관련증명을 검증하지 않았을 경우
- 5) 음반제품 복제기구가 타인의 음반제품을 사사로이 복제하거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음반제품출판기구 혹은 개인의 위탁을 받고 음반제품을 복제하거나 자체로 음반제품을 복제할 경우

제43조 음반제품 출판기구가 국가 관련규정을 어기고 홍콩·마카오·대만 및 외국 조직·개인과 합작하여 음반제품을 제작할 경우, 음반제품 복제기구가 국가 관련규정을 어기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출판행정부의 심사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음반제품을 복제하거나 복제한 외국음반제품을 전부 외국으로 수송하지 않았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출판행정부는 불법제품 및 불법경영소득을 몰수한다. 불법경영소득이 10,000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5배 이상~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10,000위안 이하인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행위가 엄중할 경우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44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출판행정부, 문화행정부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고 불법행위가 엄중할 경우 정업조정 혹은 허가증을 취소한다.

- 1) 음반제품 출판기구가 연도 출판계획 및 국가보안, 사회안정 등의 내용이 언급된 중요한 프로젝트를 국무원 출판행정부에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
- 2) 음반제품 출판·제작·복제·도매·소매·임대기구가 기구명칭·주소·법인대표·주요 담당자·업무 등을 변경할 때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심사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 3) 음반제품 출판기구가 출판한 음반제품 및 포장에 본 조례 규정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 4) 음반제품 출판기구가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샘플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5) 음반제품 복제기구가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 6) CD 복제 업무에 종사하는 음반제품 복제 기구가 CD 복제 시 국무원 출판행정부에서 발급한 레이저디지털 메모리 정품 식별코드가 새겨져있는 세라믹 금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제45조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문화행정부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며 불법제품 및 불법경영소득을 몰수한다. 불법경영소득이 10,000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5배 이상~10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10,000위안 이하인 경우 10,000위안 이상~50,000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행위가 엄중할 경우 정업조정 혹은 허가증을 취소한다.

- 1) 비 음반제품 출판기구에서 출판한 음반제품 혹은 비 음반제품 복제기구에서 복제한 음반제품을 도매·소매·임대·방송했을 경우
- 2) 국무원 문화행정부문의 수입허가를 통과하지 않은 음반제품을 도매·소매·임대·방송했을 경우
- 3) 연구·교수 참고·전시·전람을 목적으로 수입한 음반제품을 도매·소매·임대·방송했을 경우
- 4) 음반제품 출판기구가 국무원 문화행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 음반제품을 출판했을 경우

제46조 본 조례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허가증 취소 행정처벌을 받은 기구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변경등록 혹은 취소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기한 내 등록되지 않은 기구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직접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47조 본 조례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허가증 취소 및 행정처벌을 받은 기구의 법인대표 또는 주관직원은 허가증이 취소당한 날부터 10년 내 음반제품 출판·제작·복제·도매·소매·임대 등 기구의 법인대표 또는 주관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음반제품 도매·소매·방송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이 본 조례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허가증 취소 및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 취소당한 날부터 10년 내 음반제품의 소매·임대·방송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48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벌금 행정처벌을 실시할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벌금 결정과 벌금접수를 분리하여 실행하고 접수한 벌금은 반드시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49조 본 조례 실시 당일부터 경영성 음반제품 방송기구의 심사허가를 정지하며 법에 따라 이미 설립된 기구는 기존의 설비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며 5년 내 경영을 정지해야 한다. 정지하기 전까지 문화행정부에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제50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경우 법정 표준비용 외 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51조 본 조례는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동시에 1994년 8월 25일에 반포한 《음반제품관리조례》는 폐지한다.

9. 음반제품 수입관리법 (音像制品进口管理法)

(2002년 4월 7일 문화부, 해관총서령 제23호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음반제품의 수입관리를 강화하고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며 대중문화 생활을 풍부하기 위해 《음반제품관리조례》 및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지적되는 음반제품은 일정한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비디오, CD, 레이저 CD, 및 레이저 VCD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외국에서 수입한 음반 완제품의 출판 및 인터넷 정보 방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음반제품은 모두 본 법에 따른다.

제4조 문화부가 전국의 음반제품 수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 음반제품 수입기획을 제정하고, 수입 음반제품의 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실시, 음반제품 완제품수입의 경영기구 총수 및 분포, 구조를 확정한다.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문화행정부는 본 법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 내 수입음반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제5조 음반제품 수입경영활동은 반드시 헌법,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대중서비스 및 사회서비스를 목적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유익한 사상, 도덕, 과학기술 및 문화지식을 전파해야 한다.

제6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음반제품은 수입을 금지한다.

- 1) 헌법의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 2) 국가통일, 주권 및 영토를 침해하는 내용
- 3) 국가비밀 누설, 국가안전 침범 혹은 국가 영예와 이익에 손실을 주는 내용
- 4) 민족갈등 및 민족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풍속,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 5) 사이비종교나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 6)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음란, 도박, 폭력 및 범죄를 선동하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 혹은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사회 공공도덕 혹은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침해하는 내용
-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규정 상 금지된 기타 내용

제7조 국가는 음반제품수입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제2장 수입기구

제8조 음반제품 완제품 수입업무는 문화부가 지정한 음반제품 경영기구만이 경영할 수 있으며, 문화부의 지정을 거치지 않은 임의의 기구 혹은 개인은 음반제품 완제품 수입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9조 도서관, 음반 자료관, 과학연구기구, 학교 등 기구가 연구·교수 참고에 필요한 음반제품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문화부가 지정한 음반제품 완제품 경영기구에 위탁하여 수입 심사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0조 음반출판단위는 허가 받은 출판업무 범위 내에서 수입 음반제품의 출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3장 수입심사

제11조 음반제품 수입기구가 음반제품을 수입할 경우 문화부의 내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12조 문화부는 음반제품 내용심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수입음반제품에 대한 내용심사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 산하에 관공실을 설치하고 수입 음반제품 내용심사에 관한 일상사업을 추진한다.

제13조 음반제품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문화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녹음(녹화)제품 수입 심사 보고서
- 2) 수입협의초안서
- 3) 프로그램 샘플, 중문 및 외국문 가사
- 4) 내용심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

제14조 출판을 목적으로 음반제품을 수입할 경우 문화부에 신청해야 하는 동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녹음(녹화)제품 수입 심사 보고서
- 2) 저작권 무역협의(중문, 외국문 문서)초안, 초안 저작권 증명서, 저작권 라이선스 증명서 및 국가 저작권 인증기구에서 발부한 등록인증 서류
- 3) 프로그램 샘플
- 4) 내용심사에 필요한 기타 자료

제15조 전람·전시에 사용되는 음반제품을 수입할 경우 전람·전시활동 주최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음반제품 목록 및 샘플을 문화부에 제공하여 내용심사를 걸쳐야 한다. 해관(海關)은 임시수입화물로 관리한다.

제16조 정보네트워크 전파에 사용되는 음반제품을 수입할 경우 본 조항 제14조 규정을 참조로 한다.

제17조 문화부 심사에 제출하는 음반제품 샘플의 원명 및 내용에 대하여 수입기구는 사사로이 수정하지 않는다.

제18조 문화부는 음반제품 수입신청서를 받은 당일부터 30일 내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한 기구에게 허가서를 발급하고 불허로 처리된 기구에 대해선 불허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허가서 내용은 사사로이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재 수속을 해야 한다. 허가서는 일차 통관용으로 사용될 뿐 재차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수입관리

제19조 임의의 기구와 개인은 문화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 음반제품을 출판·복제·도매·소매·임대·영업적 상영 및 인터넷상 전송 등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0조 기구와 개인은 연구·교수 참고 또는 전람·전시를 목적으로 수입한 음반제품을 영업성 복제·도매·소매·임대·상영하지 못한다.

제21조 수입기구가 외국 측과 체결한 음반제품 수입협약서 혹은 계약서는 중국의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2조 출판 허가를 거친 음반제품은 저작권 라이선스 기한 내에 본 음반제품의 완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제23조 음반출판기구가 수입 음반제품을 출판할 경우 문화부 허가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사로이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내용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수입음반제품 출판 시 반드시 음반제품 및 그 포장에 문화부의 수입허가서 번호를 선명하게 표기해야 하고, 허가 받은 중문명칭을 사용하며 외국어 프로그램은 음반제품 및 포장에 중문명칭 및 외국명칭을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

제24조 수입 음반제품 출판 시 사용되는 언어 문자는 반드시 정부에서 반포한 언어 문자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5조 수입기구는 수입음반제품 출판 후 30일 내로 샘플을 문화부에 송부해야 한다. 문화부의 허락을 받고 수입한 음반제품은 허가한 당일부터 1년 내 출판·발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기구는 문화부에 등기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수입 중지를 결정했을 경우 문화부는 기구의 수입허가서 번호를 취소한다.

제26조 음반제품 수입기구는 문화부의 허가서를 갖고 해관에서 관련 음반제품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7조 개인이 비 영업성 사용으로 음반제품을 휴대하거나 운송하고 수출·수입 할 경우 해관의 관련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8조 기계장비와 함께 동시에 수입 혹은 수입 후 기계장비와 함께 재차 수출하는 운영 시스템·장비 설명·전문 소프트웨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음반제품은 본 법을 따르지 않으며, 해관은 수입기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영수증 등 유효증명서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처리된다.

제5장 벌칙

제29조 허가 없이 사사로이 음반제품 완제품의 수입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문화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음반제품을 복제할 경우 《음반제품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30조 아래의 행위 중 한 가지를 위법했을 경우 현금 이상의 문화행정부는 위법행위 정지를 명령하고 경고·처분함과 동시에, 위법음반제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소득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위법경영소득이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행위가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경영허가증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취소한다.

- 1) 문화부의 허락 없이 수입한 음반제품을 출판, 도매·소매·임대·상영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파할 경우
- 2) 연구·교수에 참고로 수입한 음반제품 및 전람·전시 목적으로 수입한 음반제품을 도매·소매·임대하거나 영업성으로 상영할 경우

제31조 본 법을 위반하고 수입음반제품 출판 시 문화부의 허가서 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현금 이상 문화행정부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며, 행위가 엄중한 경우 3개월~6개월의 영업정지 혹은 영업허가증 발부기구에서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32조 본 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아래의 행위 중 한 가지라도 어겼을 경우 현금 이상 문화행정부에서 경고처분을 하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출판한 수입 음반제품에 사용한 언어 문자가 국가에서 반포한 언어 문자 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2) 수입기구가 규정을 어기고 문화부에 샘플을 송부 하지 않았을 경우
- 3) 출판발행을 하지 않았거나 수입허가를 중지한 수입음반제품을 문화부에 등기하지 않고 동시 그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제33조 음반출판기구가 수입음반제품 출판 혹은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파 시, 문화부의 허가서 요구를 위반하고 사사로이 프로그램 명칭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증가/삭제했을 경우 문화부는 경고처분을 주는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사를 거쳐 수입한 음반제품 내용을 사사로이 증가/삭제하여 본 법 제6조에서 규정한 금지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현금 이상 문화부가 경고·처분함과 동시에 출판·복제·도

매·인터넷전송 등 위법행위 중지를 명령하며, 위법경영 음반제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6개월~1년 동안의 영업정지를 명령한다. 위법경영소득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위법경영소득이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5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행위가 엄중할 경우 경영허가증 발부기관에서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조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4조 해관법 및 관련 관리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해관이 법에 근거해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3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으로부터 음반제품을 수입할 경우 본 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6조 본 법의 구체적인 해석은 문화부가 책임지며 해관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해관총서에서 책임·해석한다.

제37조 본 방법은 2002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동시에 1999년 4월 30일 문화부, 해관 총서에서 반포한 《음반제품수입관리방법》은 폐지한다.

< 부록1 >

상품명칭 및 HS 코드

| | |
|------------------------------|----------|
| 녹음 테이프 | 85245110 |
| | 85245190 |
| | 85245210 |
| | 85245290 |
| | 85245310 |
| | 85245390 |
| CD | 85241010 |
| | 85241090 |
| 레이저 CD, 레이저VCD 및 기타 녹음 CD | 85243210 |
| | 85243290 |
| | 85243910 |
| | 85243990 |
| 기타 녹음 매체 | 85249910 |
| | 85249990 |

< 부록2 >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수입음반 제품허가서 양식





10. 인터넷 출판관리 시행규정 (互联网出版管理暂行规定)

2002년 6월 27일

신문출판통서, 신식산업부령 제17호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출판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출판기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중국 인터넷 출판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판관리 조례》와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인터넷 출판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헌법 및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서비스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민족소질 제고와, 경제발전 추진 및 사회 진보 추진에 유리한 사상도덕, 과학기술, 문화지식을 전파하고 추적하여 인민들의 정신생활을 풍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인터넷 출판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에서 중국 인터넷 출판 업무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주요 업무는

- 1) 중국 인터넷 출판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 2) 인터넷 출판관리 방침, 정책 및 규정을 제정한다.
- 3) 중국 인터넷 출판기구 총량, 구조 및 분포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 4) 인터넷 출판기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 5) 관련 법률, 법규와 규정에 따라 인터넷 출판내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국가 출판법을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서 행정지역 내 인터넷 출판 일상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본 행정지역 내 인터넷 출판 업무 종사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허가를 진행하며 본 행정지역 내 국가출판법규 위배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실시한다.

제5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출판이란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창작했거나 타인의 작품에 대한 선택 및 편집가공을 걸친 후 인터넷상에 발표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발송하여 공중브라우저, 열람, 사용,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파행위를 가리킨다. 주요 작품에는

- 1) 이미 본격 출판된 도서, 신문, 간행물, 음반제품, 전자출판물 등 출판물내용 혹은 기타 매체에서 이미 공개된 작품
- 2) 편집가공을 진행한 문학,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정기술 등 분야 작품

본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출판기구는 신문출판행정부문 및 전신관리기구의 허가를 받고 인터넷 출판 업무에 종사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를 가리킨다.

제2장 행정심사 및 감독관리

제6조 심사허가를 필한 후 인터넷 출판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임의 기구 혹은 개인은 허가 없이 인터넷 출판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인터넷 출판기구는 법에 따라 인터넷 출판활동에 종사하며 임의 기구 및 개인은 이에 대하여 교란, 저지, 파괴하지 않는다.

제7조 인터넷 출판 업무에 종사할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외 아래의 조건도 구비하여야 한다.

- 1) 확정된 출판범위
- 2)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는 정관
- 3) 필요한 편집출판기구 및 전문인력
- 4) 출판 업무에 필요한 자금, 장비 및 장소

제8조 인터넷 출판 업무 종사 신청 시 반드시 담당자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신청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의 심사동의를 걸친 후 신문출판총서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출판 업무 종사 신청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문출판총서에서 제작한 《인터넷 출판업무 신청표》
- 2) 기구의 정관
- 3) 자금출처, 액수 및 신용증명
- 4) 주요 담당자 혹은 법정 대표인 및 주요 편집, 기술인원의 전문직 증명서와 신분증명서
- 5) 작업장소의 사용증명서.

제10조 신문출판행정부문은 신청 수리를 접수한 그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시에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서 서면으로 신청자에 통지하며 허가를 통과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인터넷출판 업무 허가를 받은 후 신청자는 신문출판행정부문의 허가서류를 가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신관리기구에서 관련수속을 체크해야한다.

제3장 인터넷 출판기구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인터넷 출판기구는 반드시 자체의 홈페이지에 신문출판행정부문에서 발급한 허가 문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출판기구의 명칭,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합병 혹은 분리 시 반드시 본 규정의 제8조, 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동시에 신문출판행정부문의 허가문서를 가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서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4조 인터넷 출판기구가 인터넷 출판 업무를 중지할 경우 기구 담당자는 인터넷출판 업무를 중지하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부문을서 취소수속을 함과 동시에 신문출판총서에 등기해야 하며 또한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서 인터넷 정보서비스 업무 경영허가증 변경 혹은 취소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인터넷 출판기구는 등록한 그 날부터 180일 내에 인터넷 출판활동을 전개하지 않을 경우 원래 등록한 신문출판행정부문을서 등록을 취소하며 신문출판총서에 등기한다. 동시에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통보를 한다.

제16조 인터넷 출판기구가 국가안전, 사회 안정 등 중대한 내용이 언급된 중요한 과제를 출판할 경우 반드시 중요 과제 등록규정에 근거하여 신문출판총서에 보고하여 등기해야 한다. 등기하지 않은 중요 과제 내용은 출판할 수 없다.

제17조 인터넷 출판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

- 1) 헌법에서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를 위협하는 내용
- 3) 국가 기밀 누설, 국가 안전 위해 혹은 국가 영예 및 이익을 손해 하는 내용
- 4) 민족감정, 민족차별을 조장하여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풍속,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 5) 사이버 종교,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 6)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전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사회 공덕 혹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 10)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제18조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출판 내용은 미성년들을 유혹하여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 및 위배 범죄 행위를 모방케 하는 내용과 공포, 폭력성 등 미성년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인터넷 출판 내용의 허위 혹은 불공정으로 인하여 공민, 법인, 혹은 기타 기구의 합법적 이익에 침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인터넷 출판기구는 공개 정정하여 사건의 여파를 제거하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출판기구는 기재 혹은 발송한 작품이 본 규정의 제17조, 제18조에서 열거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즉시 게재 혹은 발송을 정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에 보고하며 신문출판총서에 등기해야 한다.

제21조 인터넷 출판기구에서는 편집 책임제를 실시하고 전문 편집인원이 출판내용에 대

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인터넷 출판내용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 출판기구의 편집인원은 반드시 업무수행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인터넷 출판기구는 반드시 게재 혹은 발송한 작품내용, 시간, 인터넷 주소 혹은 도메인 네임에 대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 내용은 60일 동안 보존하고 국가 관련부문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때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인터넷 출판활동에 종사할 경우 국가 관련 저작권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게재 혹은 발송한 작품의 관련 저작권 기록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벌칙

제24조 허가없이 사적으로 인터넷 출판활동에 종사하는 기구에 대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 혹은 신문출판총서에서 단속하며 불법 출판활동에 종사하는 주요 장비, 도구 및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운영 이득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본 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출판행정부문 혹은 신문출판총서에서 경고처벌을 주는 동시에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6조 본 규정 제16조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등록하지 않은 주제의 자료를 게재 혹은 발송 정지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문 혹은 신문출판총서에서 경고처벌을 주는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기한 내 영업 정리를 지시하거나 허가를 취소한다.

제27조 인터넷 출판기구에서 본 규정의 제17조, 제18조에서 금지한 내용을 게재 혹은 발송하였을 경우 성, 직할시, 자치구 신문출판행정부문 혹은 신문출판총서에서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동시에 위배 소득이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1만 위안 이하일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내용이 엄중할 경우 기한 내 영업 정리를 지시하거나 허가를 취소한다.

제28조 본 규정 제22조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서 명령하여 개정하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영업정리를 지시하거나 사이트를 일시 정지시킨다.

제5장 부칙

제29조 본 규정을 실시하기 전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터넷 출판활동에 종사한 기구는 본 규정을 실시한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본 규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본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1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고 칭함)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 지적된 상품상표 관련규정은 서비스상표에도 적용한다.

제3조 상표법과 본 조례에서 지적된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 상품의 포장, 용기 및 상품거래 문서에 사용하거나 또는 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4조 상표법 제6조에서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된 상품은 법률, 행정법규에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된 상품을 가리킨다.

제5조 상표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 상표평가 심사를 완성하는 과정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관련 당사자는 상표가 유명상표의 조건에 부합된다고 주장할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 평가심사위원회에 유명상표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상표등록신청은 거부하거나 또는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상표등록은 취소할 수 있다. 당사자는 신청 시 반드시 상표가 유명상표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유명상표 여부를 인정한다.

제6조 상표법 제16조 규정에 지적된 지리표지는 상표법과 본 조례 규정을 참조할 수 있으며, 상표 또는 집단상표 신청등록의 증명으로 사용된다.

지리표지를 증명상표로 등록하였으며 또한 해당 상품이 지리표지 사용조건에 부합될 경우 자연인, 법인대표 또는 기타 조직은 본 증명상표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증명상표 관리기구는 사용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지리표지를 집체 상표로 등록하였으며 또한 해당 상품이 지리표지 사용조건에 부합될 경우 자연인, 법인대표 또는 기타 조직은 본 지리표지를 집체 상표로 등록한 단체, 협회 혹은 기타 조직에 참여하겠다는 요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 협회, 기타 조직은 내부 정관에 근거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리표지를 집체 상표로 등록한 단체, 협회 혹은 기타 조직에 참여의향이 없을 경우 여전히 정상적으로 본 지리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 협회, 기타 조직에서는 금지할 권리가 없다.

제7조 당사자가 상표대리조직에 상표등록신청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항을 위탁할 경우



반드시 위탁서를 제출하고 대리 내용 및 권한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계업체인 경우 위탁서에 위탁인의 국적을 밝혀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계 업체의 대리위탁서와 관련 증명 서류의 인증, 인정수속은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표법 제18조에서 지적된 외국인 또는 외국계 업체란 중국에 상주지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계 업체를 가리킨다.

제8조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사항을 처리할 경우 반드시 증문을 사용해야 한다.

상표법 또는 본 조례에 따라 제출되는 각종 증거물, 증빙자료들이 외국어인 경우 반드시 증문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증거물, 증명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제9조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 사업인원이 아래의 상황 중 한 가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처리절차를 피해야 하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회피를 요구할 수도 있다.

- 1) 당사자 혹은 대리인과 친척관계인 경우
- 2) 당사자 혹은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성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 3) 상표등록신청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항의 처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제10조 본 조례의 별도 규정 외 당사자가 상표국 혹은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혹은 자료의 출시일은 당사자가 직접 교부했을 시 교부 날짜를 제출일로 정하고 우편으로 송부했을 경우 우편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소인일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 혹은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서 실제로 받은 일자를 제출일로 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실제 발송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상표국 또는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각종 서류는 우편, 직접 배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부되며 상표대리조직에 위탁했을 경우 상표대리조직에 송부되므로 당사자에게 송부된 것과 동일시한다.

상표국 또는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각종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 배달했을 시 당사자가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우편 도착일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우편은 서류 발송일부터 만 15일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받은 것으로 취급한다.

직접 발부했을 경우 당일을 기준으로 하며 우편배달 또는 직접 발부가 불가능할 경우 공고문형식으로 당사자에게 알리며 공고 발부일로부터 만 30일을 기준으로 이미 발송된 것으로 취급한다.

제12조 상표국제등록은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처리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상표등록 신청

제13조 상표등록 신청은 공포된 상품과 서비스 품목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 시 《상표등록신청서》 1부와 상표도형 5부를 제출하고, 지정된 컬러도형 5부와 흑백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도형은 반드시 깨끗하고 붙이기 편해야 하며, 밝고 깨끗한 종이에 프린트하거나 또는 사진으로 대체해야 한다. 길이 혹은 너비는 5mm이상 10mm이하여야 한다.

3D표지로 신청된 상표등록은 신청서에 설명을 해야 하며, 3D형태 도형을 제출해야 한다.

컬러조합으로 신청된 상표등록은 신청서에 설명을 가해야 하며 문자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집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에 설명을 해야 하며, 주체자격증명서류와 사용관리규칙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가 외국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외국어가 포함된 경우 그 뜻을 밝혀야 한다.

제14조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상표등록 신청인의 명의를 동일해야 한다.

제15조 상품명칭 또는 서비스품목은 상품, 서비스 분류표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상품명칭 또는 서비스품목이 상품, 서비스 분류표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상표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타입 또는 프린트로 완성되어야 한다.

제16조 공동으로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경우 신청서에 1명의 대표인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 대표인이 없을 경우 신청서에 제기된 이름순서에 따라 첫번째 사람을 대표인으로 인정한다.

제17조 신청인이 명의, 주소, 대리인 또는 기타 지정된 상품을 삭제 감소할 경우 상표국에서 상응한 수정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청인이 상표등록 신청을 양도할 경우 상표국에서 양도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8조 상표등록의 신청일은 상표국에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수속을 하고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상표국은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며 신청수속이 결여되었거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국은 접수를 거부하고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신청수속이 기본상 완벽하거나 신청서류가 기본상 규정에 부합되었지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보완통지를 하며 신청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포기로 처리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제19조 2명 또는 2명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날에 등록 신청할 경우 신청인들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등록 신청한 상표를 사용해 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한 날부터 사용해왔거나 또는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인들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자체 협상한 후 서면협의를 작성하여 상표국에 제출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상표국은 추첨형식으로 1명의 신청인을 확정하고 기타 신청인의 신청을 거부한다.

명확한 통지를 했는데도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인은 자체포기로 인정되고 상표국은 서면 상으로 신청인을 통지한다.

제20조 상표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했을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상표등록신청 제1서류가 상표 주관 부서에 접수되며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상표법 제25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했을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서류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규정한 기구 인증을 통과해야 하며 상품전시 국제전람회인 경우 중국 경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제외한다.

제3장 상표등록신청의 심사

제21조 상표국은 상표법과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접수된 상표등록 신청을 심사하며 규정에 부합되거나 또는 일부 지정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등록신청이 규정에 부합될 경우, 제1 심사를 통과시키고 공고를 내린다.

규정에 어긋나거나 또는 일부 지정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등록 신청이 규정에 어긋날 경우 거부하거나 또는 일부 지정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서면 상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밝힌다.

상표국이 일부 지정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 신청에 제1 심사를 통과했을 경우 신청인은 이견기한 만기 전 일부 지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등록 신청을 포기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포기한 상태에서 상표국은 제1 심사를 중지하고 재공고를 내린다.

제22조 상표국의 제1심사 및 공고를 통과한 상표에 이의를 갖고 있을 경우 이의 당사자는 상표국에 상표에 관한 이의서 2부를 제출해야 하고 그 위에 이의상표가 게재된 《상표공고》의 번호 및 제1심사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또 이의서는 확실한 청구와 사실근거 및 관련 증거자료들이 첨부 되어야 한다.

상표국은 반드시 상표 이의서 부분을 제때에 이의 받은 쪽에게 송부하며, 이의 받은 쪽은 송부 당일부터 30일 내 빠른 답변을 해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이의 받은 쪽이 기타 관련 자료보충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23조 상표법 제34조 제2항에 지적된 이의 성립이란 일부 지정된 상품에서의 성립을 가리키며 이의가 성립된 일부 상품에서의 상표등록 신청은 허가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의 받은 상표가 이의 판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앞서 이미 등록공포가 발표된 경우 등록공고를 취소하며 이의 판정을 재공고 한다.

이의판정이 허가된 등록상표는 이의만기일부터 이의판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본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사용해온 행위를 취소하지 않거나 악의적인 상표사용으로 상표 등록자에게 손실을 보게 했을 경우 상응한 배상을

추궁한다.

이의판정이 허가된 등록상표의 심사 신청일은 상표 이의판정 공고일부터 한다.

제4장 등록상표의 변경, 양도, 등록연기

제24조 상표등록인의 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시킬 경우 반드시 상표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은 허가 후 상표등록인에게 관련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허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등록인 명칭을 변경할 경우 또 관련 등록기관의 변경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간 보완해야 하며, 만기일까지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등록신청인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전부 변경해야 하며, 전부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포기로 인정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5조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피 양도인은 상표국에 양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상표 신청수속은 피 양도인이 처리하며, 상표국은 등록상표 양도신청을 허가한 후 피 양도인에게 관련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양도해야 하며 동시 양도가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상표국에서 기일수정을 통지하고 만기일 내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신청 포기로 인정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상표국은 오인, 헛갈림 또는 기타 불량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도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26조 등록상표 전용권이 양도 이외의 기타 사항으로 인해 전이가 발생했을 경우 전용권 접수인은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를 상표국에 제출하고 전용권 전이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상표 전용권이 전이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서 등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시 전이되어야 한다. 동시전이가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 상표국은 기일수정을 통지하며 만기일 내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신청포기로 인정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제27조 등록상표가 등록연기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상표국에 등록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표국은 허가 후 관련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등록연기상표의 유효일은 상표의 만기일 그 다음날부터 인정된다.

제5장 상표평가 심사

제28조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상표법 제32조, 제33조, 제41조,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

된 상표평가심사신청을 수리하며 사실에 의거하고 법에 따라 평가심사 한다.

제29조 상표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서 지적된 이미 등록된 상표에 쟁의가 발생했을 경우라는 것은 우선 신청한 상표등록이 그 후 타인이 신청한 상표등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서의 등록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가리킨다.

제30조 상표평가심사를 신청할 경우 상표평가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수량에 맞춰 상응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판서에 의거하여 재심을 신청했을 경우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판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평가심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과정을 통해 수리조건에 부합되는 서류는 수리하고, 부합되지 않는 서류는 수리를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일로부터 30일 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며, 여전히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는 수리를 거부하고 서면 상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만기일까지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철회로 인정하며 평가심사위원회는 서면 상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평가심사위원회는 수리된 평가심사신청에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을 발견했을 경우 신청을 반려하고 서면 상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1조 평가심사위원회는 상표평가심사신청을 수리한 후 적시에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신청서 사본을 받은 그 날부터 30일 내 답변을 줄 것을 요구하며 만기일 내 답변이 없어도 평가심사위원회의 평가심사에 영향주지는 않는다.

제32조 당사자가 평가심사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답변 후 관련 증명재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성명을 부가해야 하며,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그 날부터 3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 만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보완포기로 인정된다.

제33조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실제 수요에 근거해 평가심사신청의 공개평가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공개평가심사를 결정했을 경우 반드시 공개평가심사 15일 전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전달해야 하며, 신청인이 답변하지 않고 공개평가심사에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평가심사에 결석할 수 있다.

제34조 신청인이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재판 전에 신청철회를 요구했을 경우 서면 상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신청이 철회되었을 경우 평가심사절차가 중지된다.

제35조 한번 철회한 신청은 동일한 사건 또는 이유로 재 평가심사를 신청할 수 없으며, 평가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 또는 재판에 관하여 누구든지 동일한 사실 또는 이유로 재 평가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36조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서 지적된 이미 철회된 등록상표는 상표전용권을 소지하지 않는다. 등록상표의 철회 결정 또는 재판은 철회 전 상표침해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최종 결정 및 집행, 상표침해사건에 대한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처리 결정 및 집행, 상표양도 또는 사용허가합동의 이행 등에 대해 더 이상 취소하지 않으나 상표등록인이 타인에게 악의적인 손실을 가했을 경우는 관련 배상을 요구한다.

제6장 상표 사용 관리

제37조 등록상표는 상품, 상품의 포장, 설명서 또는 기타 부속품에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기를 명시할 수 있다.

등록표기는 (주석 외 ○를 가함) 와 (R외 ○를 가함)를 포함한다. 등록표기를 사용할 경우 상표의 위상단 또는 위하단에 표기해야 한다.

제38조 《상표등록증》을 유실했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상표국에 추가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유실했을 경우 《상표공고》에 유실성명을 게재하고 파손되었을 경우 보충 발급 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파손된 《상표등록증》을 상표국에 반납해야 한다.

《상표등록증》을 위조하거나 사사로이 변조했을 경우 형법에 근거해 국가기관증명서류 위조 및 변조죄 또는 기타 범죄로 인정되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상표법 제44조 제1, 2, 3항에 지적된 행위를 감행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등록인에게 기한 내 수정을 명령하며 수정 거부 시 상표국에 등록상표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법 제44조 제4항에 지적된 행위를 했을 경우 누구든 상표국에 본 등록상표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인에게 통지서를 받은 당일로부터 2개월 내 철회 신청이 제기되기 전까지 사용해온 관련 증명자료 또는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출해야 하며, 만기 일내 증명자료 또는 증명자료 무효에 어떠한 근거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국은 본 등록상표를 철회한다.

위에서 지적된 증명자료란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해온 증명자료와 상표등록인이 타인의 사용을 허가한 증명자료들이다.

제40조 상표법 제44조, 제45조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를 취소할 경우 상표국이 공고하고 본 등록상표 사용전용권은 철회 결정 일부터 폐지된다.

제41조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철회이유가 일부 지정된 상품에만 제한되었을 경우 지정된 상품에서 사용되는 상표등록만 철회한다.

제42조 상표법 제45조,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할 경우 벌금액수는 불법자금의 20%이하 또는 불법소득의 2배 이하로 정한다.

상표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할 경우 벌금액수는 불법자금의 10%이하로 정한다.



제43조 타인에게 등록상표 사용을 허가했을 경우 허가인은 상표 사용허가 계약서 체결일 3개월 내 계약서 사본을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상표법 제40조 제2절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 내 수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만기일 내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표기를 몰수한다. 상표표기와 상품의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상품까지 몰수하고 함께 소각한다.

제45조 상표가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당사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상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상표가 이미 유명한 상표로 인지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상표의 인지도를 인정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상표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침범행위를 중지시키고 상표표기를 몰수 소각한다. 상품표기와 상품의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상품까지 함께 몰수 소각한다.

제46조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취소하거나 일부 지정된 상품에서의 상표를 취소할 경우 상표국에 상표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 《상표등록증》도 함께 반납해야 한다.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취소 또는 일부 지정된 상품에서의 상표취소를 신청할 경우 본 상표의 전용권 또는 일부 지정된 상품에서의 전용권은 상표국이 취소신청을 접수한 당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47조 상표등록인이 사망 또는 사용을 중지했을 경우 사망일 또는 중지일 부터 1년 내 본 등록상표의 전이수속이 처리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상표국에 본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상표등록인의 사망 또는 사용 중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인의 사망 또는 사용 중지로 인해 취소되었을 경우 본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상표등록인의 사망 또는 사용 중지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48조 등록상표가 철회되거나 또는 본 조례 제46조, 제47조 규정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원 《상표등록증》은 무효가 된다.

일부 지정된 상품에서 등록된 상표를 철회하거나 또는 상표등록인이 일부 지정된 상품에서 등록된 상표를 취소할 경우 상표국이 원 《상표등록증》에 설명을 가한 후 당사자에게 되돌리거나 또는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고 공고한다.

제7장 등록상표 전용권 보호

제49조 등록상표 중 본 제품의 통용명칭, 도형, 사이즈 또는 상품의 품질, 주원료, 성능, 용도, 무게, 수량 및 기타 특징, 지명을 포함했을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을 소지한 당사자는 타인의 정당사용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제50조 아래 행위는 상표법 제52조 제5항의 전용권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속한다.

- 1)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에서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기로 상품을 명명,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 2) 고의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도와 창고, 운수, 배달, 은폐 등 편리조

건을 제공한 행위

제51조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누구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고소, 고발할 수 있다.

제52조 등록상표 전용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분은 불법 경영소득의 3배 과태료로 정하며 불법 경영소득 계산이 불가능할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제53조 타인이 유명상표로 기업명칭을 등록하는 행위가 소비자에게 인식상의 오해를 조성할 것이라고 판단한 상표소유인은 업체등록 주관기관에 본 업체의 명칭등록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명칭등록 주관기관은 《업체명칭등록관리규정》에 근거해 처리한다.

제8장 부록

제54조 1993년 7월 1일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서비스상표는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서 이미 등록한 서비스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1993년 7월 1일 이후로 3년 이상 사용을 중지해온 상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제55조 상표대리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6조 상표등록은 상품, 서비스 분류표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 공고한다. 상표등록 신청이나 기타 상표사항의 파일양식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 공고한다.

평가심사위원회의 평가심사규칙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 공고한다.

제57조 상표국은 《상표등록부》를 설치하고 등록상표 및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상표국은 《상표공고》를 편집발행하고 상표등록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게재한다.

제58조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사항을 처리할 경우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비용의 항목과 기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공동으로 규정 공고한다.

제59조 본 규정은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83년 3월 10일 국무원이 발표, 1988년 1월 3일 국무원의 허가비준으로 제1차 수정, 1993년 7월 15일 국무원 허가비준으로 제2차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세칙》과 1995년 4월 23일에 반포한 《국무원 관련 상표등록 첨부증건 문제 처리에 관한 심사》는 폐지한다.



12. 중국 도메인 네임 관리방법 (中国互联网络域名管理办法)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산업부령 제24호

《중국 도메인 네임 관리방법》은 이미 2002년 3월 14일 제9차 신식산업부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미 공포되어 2002년 9월 30일부터 실시한다.

부장 우지촨(吴基传)

2002년 8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중국 도메인 네임의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 도메인 네임 시스템 보안 및 안전 운영을 보장하며, 중국 도메인 네임 시스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국제 도메인 네임 관리 준칙을 참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아래 용어의 뜻은 :

- 1) 도메인 네임 : 인터넷 상 컴퓨터 차원구조식의 문자표식을 인식하는 해당 컴퓨터의 인터넷 IP주소와 서로 대응된다.
- 2) 중문 도메인 네임 : 중문이 사용된 도메인 네임을 가리킨다.
- 3) 도메인 루트 서버 : 도메인 네임 시스템 중 서버 도메인 기능을 담당하는 서버를 가리킨다.
- 4) 도메인 루트 서버 운행기구 : 도메인 루트 서버 운행,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 5) 정상급 도메인 네임 : 도메인 네임 시스템 중 서버 도메인에서의 제1급 도메인의 명칭을 가리킨다.
- 6) 도메인 네임 등록 관리기구 : 하나 혹은 여러 개 정상급 도메인 네임의 운행,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하며 동시에 이런 정상급 도메인 네임 하의 각급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구이다.
- 7)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 기구 : 도메인 네임 등록 신청 심사 수리하여 도메인 네임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도메인 네임 등록을 완성하는 서비스 기구를 가리킨다.

제4조 임의의 조직 혹은 개인은 어떤 수단으로든지 중국 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정상 운행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2장 도메인 네임 관리

제5조 신식산업부에서 중국 도메인 네임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직책은:

- 1) 도메인 네임 관리 규정 및 정책 제정
- 2) 국가(혹은 지역) 정상급 도메인 네임 CN 및 중문 도메인 네임 시스템 제정
- 3) 국가(혹은 지역) 정상급 도메인 네임 CN 및 중문 도메인 네임 등록 관리기구 관리
- 4) 중화인민공화국 내 도메인 네임 루트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도메인 네임 루트 서버 운영기구 관리
- 5) 도메인 네임 등록 서버 감독관리
- 6)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국제 협조 담당.

제6조 중국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신식산업부에서 공고 형식으로 공포한다. 도메인 네임 발전의 실정에 근거하여 신식산업부에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대하여 별도로 조정하여 다시 공포한다.

제7조 중문 도메인 네임은 중국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신식산업부는 중문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기술연구 및 응용 확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8조 도메인 네임 관리는 점차적 관리방식을 채택한다. 도메인 네임 등록 관리기구 및 각급 도메인 네임 보유자는 본 방법 및 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자체의 하급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 및 서비스를 담당한다.

제9조 도메인 네임 등록 관리기구에서 상용 도메인 네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도메인 네임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며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에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 제공 권한을 부여한다. 주요 직책은 :

- 1) 상용 정상급 도메인 네임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보호 및 관리를 진행하며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안전 운영을 보장한다.
- 2) 본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메인 네임 등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
- 3) 무차별 대우의 원칙으로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 기구를 선택한다.
- 4)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 기구의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도메인 루트 서버 설치,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기구 설립 및 도메인 루트 서버 운영기구 구축 시 반드시 신식산업부의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 관리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 설립 시 반드시 신식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임의의 조직 혹은 개인은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2조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구비되어야 한다.



- 1)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법인 혹은 사업법인이어야 한다.
- 2) 도메인 네임 등록활동을 종사하는데 적절한 자금 및 전문 인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 3) 사용자들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의 혹은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 4) 업무 발전 계획 및 관련 기술방안이 있어야 한다.
- 5) 완벽한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보장조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6) 신식산업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구비되어야 한다.

제13조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신식산업부에 등기수속을 밟아야 하며 등기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 자격 증명서
- 2)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프로젝트 작성
- 3) 관련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기구와 체결한 합작 계약서
- 4) 사용자 서비스 협의 견본
- 5) 업무발전 계획 및 관련 기술방안
- 6)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기술 보장 조치 증명서

제14조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 명칭, 주소, (법정)대표 등 등록정보 변경 혹은 도메인 네임등록 서비스기구와 자체 도메인 네임등록 관리기구의 합작관계 변경 시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는 반드시 변경 후 30일 내 신식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도메인 네임 등록

제15조 도메인 네임 관리기구는 반드시 본 방법에 근거하여 자체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신식산업부에 보고한 후 실시한다.

제16조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는 “시간 우선 신청 등록제”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17조 도메인 네임 관리기구는 도메인 네임 등록범위 확장 시 등록 기한을 설치하여 일부 서류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진행하며 동시에 자체 사이트에서 조회를 제공한다.

규정 외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기구 및 등록서비스기구에서는 도메인 네임 예비 보류 혹은 변상 예비 보류해서는 안 된다.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기구 및 등록서비스기구에서는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임의의 실제 혹은 잠재 도메인 네임 보유자를 대표하지 않는다.

제18조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기구와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는 반드시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 내용, 시간기한, 비용을 공포하고 도메인 네임 등록정보 공중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며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의의 조직 혹은 개인이 등록 및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1)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 2) 국가 안전 위해, 국가 기밀 누설, 국가정부 전복, 국가 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 3) 국가 영예와 이익에 손해를 주는 내용
- 4) 민족 원한, 민족 경시를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 5) 국가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이비 종교 및 봉건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 6)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하며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음란, 도박, 폭력, 살해, 공포를 퍼뜨리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 8) 타인을 모욕,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9)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을 포함한 내용

제20조 도메인 네임 등록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의 인터넷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제도 및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기구에서 제정한 도메인 네임 등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진실, 정확, 완벽한 도메인 네임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도메인 네임 등록 후 반드시 기한 내 도메인 네임 운행관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기구는 마땅히 구체적인 도메인 네임 운행 관리비용 납부방법을 제정하고 신식산업부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도메인 네임 등록 완성 후 신청자는 그 도메인 네임의 소유자이다. 도메인 네임 소유 혹은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합법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책임은 도메인 네임 소유자가 담당한다.

제23조 도메인 네임 등록정보 변경 시 도메인 네임 소유자는 변경 후 30일 내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에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도메인 네임 소유자는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를 선택 및 변경할 수 있다. 도메인 네임 소유자가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를 변경할 경우 기존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는 마땅히 도메인 네임 소유자 등록정보 이전 의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25조 이미 등록한 도메인 네임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존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에 취소하는 동시에 서면 형식으로 도메인 네임 소유자에 통보한다.

- 1) 도메인 네임 소유자 혹은 그 대리인이 도메인 네임 취소를 신청할 경우
- 2) 도메인 네임 소유자가 제출한 도메인 네임 등록정보가 진실하지 않거나, 부정확, 완벽하지 않을 경우
- 3) 도메인 네임 소유자가 규정에 따라 상응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4) 인민법원, 중재기구 혹은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기구에서 내린 판결에 근거하여 마땅히 취소해야 할 경우
- 5) 본 방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5장 도메인 네임 쟁의

제26조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기구는 중립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기구를 지정하여 도메인

네임 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

제27조 누구든 이미 등록 혹은 사용한 도메인 네임에 대하여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방법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도메인 네임 소유자도 마땅히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8조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기구에서 내린 결재는 쟁의 도메인 네임 소유자 정보 변경에만 언급된다.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기구에서 내린 결재는 인민법원 혹은 기타 중재기구에서 이미 법률 효력을 발생한 판결과 일치하지 않으며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기구의 결재는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구의 법률 효력을 발생한 판결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인민법원, 중재기구 혹은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기구에서 도메인 네임 쟁의를 처리하는 기간 도메인 네임 소유자는 쟁의가 있는 도메인 네임을 양도할 수 없지만, 만약 양도를 받는 측에서 서면 형식으로 인민법원, 중재기구 혹은 쟁의 해결기구의 결정을 접수한다고 동의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 본 방법의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 규정을 어기고 중국 내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며, 사사로이 도메인 루트 서버설치 및 도메인 루트 서버 운영기구를 구축하며 보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 활동 종사 혹은 보고한 프로젝트 내용을 초월한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식산업부에서 명령하여 기한 내 개정하게 하고 정상에 따라 경고처분 혹은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본 방법의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신식산업부에서 명령하여 기한 내 개정하게 하며 정상에 따라 경고처분 혹은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본 방법의 제19조의 규정을 위배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 관련기관에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장 부칙

제33조 본 방법을 실시하기 전 이미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를 진행한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는 본 방법이 실시되는 날로부터 60일 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 본 방법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실시한다. 이미 발표한 도메인 네임관리규정에서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본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13.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 네임 쟁의에 관한 해결방법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域名争议解决办法)

제1조 인터넷 도메인 네임 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 등록 및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쟁의에 적용된다. 쟁의 도메인 네임은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에서 담당관리를 하는 CN 도메인 네임 및 중문 도메인 네임에 제한된다.

제3조 도메인 네임 쟁의는 중국 인터넷정보센터가 인정하는 기구에서 수리하고 해결한다. 쟁의 해결기구는 마땅히 본 방법 및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방법 절차규칙》에 근거하여 상응 보완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4조 쟁의 해결기구는 전문가그룹 쟁의 해결 담당제도를 실시한다. 전문가그룹은 인터넷 및 관련 법률지식이 있으며 높은 직업도덕 및 도메인 네임 쟁의에 대하여 독립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1명 혹은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기구는 인터넷상에 고소인 및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 명단을 발표한다.

제5조 임의의 기구 혹은 개인은 자체의 이미 등록한 도메인 네임이 해당 기구 혹은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갈등이 생겼다고 느껴질 경우 쟁의 해결기구에 고소를 제출할 수 있다. 쟁의 해결기구는 고소를 접수한 후 절차규칙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전문가그룹에서 본 방법 및 절차규칙에 근거하여 “독립, 중립, 신속”의 원칙으로 전문가그룹이 구축된 날로부터 14일 내로 쟁의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6조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절차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중문이다. 그러나 단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혹은 전문가그룹에서 기타 언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고소인 및 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고소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될 경우 지지를 받아야 한다.

- 1) 피고인의 도메인 네임이 고소인의 민사권익을 소지한 명칭 혹은 표지와 동일하여 헛갈릴 정도의 유사성을 있을 경우
- 2) 피고인이 도메인네임 혹은 그 도메인 네임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합법적 권익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 3) 피고인이 도메인 네임의 등록 혹은 사용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경우

제9조 도메인 네임을 소지한 피고인이 아래의 한 가지 상황이 있을 경우 그 행위는 악의적인 도메인 네임 등록 혹은 사용으로 판결한다.



- 1) 도메인 네임을 등록 혹은 양도를 받는 목적이 판매, 임대 혹은 기타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경우
- 2)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유한 명칭 혹은 표지를 여러 차례나 자체의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여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형식으로 합법적 권익을 보유한 명칭 혹은 표지 사용에 방해를 하였을 경우
- 3) 도메인 네임 등록 혹은 양도를 받는 목적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파괴하거나 고소인과의 구별을 혼동되게 하여 대중을 오해시키는데 있는 경우
- 4) 기타 악의적 상황

제10조 고소인이 동일 피고인의 여러 개 도메인 네임에 대하여 쟁의를 제출했을 경우 고소인 혹은 피고인은 쟁의 해결기구에 여러 개 쟁의를 하나로 합병하여 동일 전문가그룹에서 처리할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합병처리 여부는 전문가그룹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전문가그룹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 고소인 혹은 피고인이 전문가그룹의 구성원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있어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쟁의 해결기구에 전문가 회피 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회피요구를 제출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회피여부에 대하여 쟁의해결기구에서 결정한다.

제12조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 과정 중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에서 쟁의 해결기구의 요구에 근거하여 도메인 등록 및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와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는 어떠한 신분 혹은 방식으로도 쟁의 해결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13조 전문가그룹은 고소인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쟁의와 관계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의에 대하여 결재를 진행한다.

전문가그룹에서 고소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렸을 경우 마땅히 이미 등록한 도메인 네임을 취소하거나 고소인에게 이전한다.

전문가그룹에서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을 경우 고소를 기각한다.

제14조 본 방법에 따라 고소를 제출하기 전 혹은 쟁의 해결 진행과정 혹은 전문가가 최후 결정을 내린 후 고소인 및 피고인은 동일 쟁의에 관하여 중국 인터넷정보센터가 소재한 중국법원에 고소하거나 협의를 기반으로 중국 중재기구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쟁의해결기구에서 도메인 네임 취소 혹은 도메인 네임 고소인에 전이 판결을 내렸을 경우 판결이 공포된 그날로부터 10일 만기 후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에서 결정을 집행한다. 만약 판결이 공포된 그날로부터 10일 내에 피고인이 관할권을 보유한 사법기관이 혹은 중재기구에서 본 도메인 네임 쟁의를 이미 수리하였다는 유효증명을 제출할 경우 집행을 일시 중지한다.

집행을 잠시 중지한 쟁의 해결기구의 결정에 대하여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는 아래

와 같이 처리한다.

- 1) 쟁의 쌍방이 이미 화해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화해협의를 집행한다.
- 2) 관련 고소 혹은 중재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철회하였다는 증거가 확실할 경우 쟁의해결 기구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 3) 관련 사법기관 혹은 중재기구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으며 또한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경우 해당 판결을 집행한다.

제16조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기간 및 결재가 반포된 10일 내에 도메인 네임 소지인은 쟁의가 있는 도메인 네임을 양도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양도받은 자가 쟁의 해결 결재의 약속을 접수한다고 서면으로 동의한 상황은 별도로 처리한다.

제17조 쟁의해결기구는 전문 사이트를 구축하여 인터넷 방식으로 관련 도메인 네임 쟁의 고소를 접수하며 동시에 도메인 네임 쟁의 관련 자료를 발표한다. 그러나 고소인 혹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발표한 후 고소인 혹은 피고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및 정보는 발표하지 않는다.

제18조 중국 인터넷정보센터는 인터넷 및 도메인 네임 기술의 발전과 중국의 관련법률, 행정법규, 정책의 변화 등 상황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 수정 후의 방법은 사이트를 통하여 발표되고 발표한 그날로부터 30일 만기 후부터 실시한다. 본 방법을 수정하기 전에 쟁의 해결기구에 제출한 도메인 네임 쟁의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 수정 후의 방법은 자동으로 도메인 네임 소지인과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사이 이미 존재한 도메인 네임 등록 협의의 일부분으로 넘겨진다. 도메인 네임 소지인이 쟁의해결방법 혹은 수정 후의 문서의 약속에 부동한 의견이 있을 경우 즉시로 등록서비스기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후 등록서비스기구는 30일간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보류하며 30일 후 도메인 네임은 취소된다.

제19조 본 방법의 해석권은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에서 보유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2002년 9월 30일부터 본격 실시하며 동시에 기존 《중문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방법(시행)》은 폐지한다.



14.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관리조례 (《互联网上网服务经营场所管理条例》)

(2002년 11월 15일 최신)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대중의 건전한 오락생활 향유와 사회주의 정신문명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는 컴퓨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PC방, 컴퓨터 오락실 등의 영업장소를 가리킨다.

학교, 도서관 등 기관 내부에서 설치한 특정 대상들의 자료, 정보 수집을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마땅히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며 본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

제3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산업자율을 강화하며 자발적으로 정부 관련 부문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접수하며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에서의 소비자들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 도덕을 준수하며 문화적이고 건전한 온라인 사용을 진행해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행정 부문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의 설립에 대한 심사허가를 담당하며 법에 따라 설립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도 담당한다.

공안 기관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들의 정보 네트워크 보안, 치안 및 소방안전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들의 등록 및 영업허가증 관리를 담당한다. 통신 관리 등 기타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 본 조례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에 대하여 각각 관련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문화 행정 관리 부문, 공안 기관, 공상행정관리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 및 해당 부문의 근무자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를 직접 운영하지 못하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운영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하지 못한다.

제6조 국가에서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들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감독할 것을 고무, 격려하며 공헌이 있는 자는 장려한다.

제2장 설립

제7조 국가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허가가 없는 임의의 조직이나 개인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를 설립하지 못하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8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는 반드시 기업의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기구 명칭, 주소, 조직 및 정관이 있어야 한다.
- 2) 자체 경영활동에 부합되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 3) 자체 경영활동에 부합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소방 안전 조건이 구비된 영업장소가 있어야 한다.
- 4) 건전하고 완벽한 정보 네트워크 보안 관리제도와 안전기술 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 5) 고정적인 IP 주소와 경영 활동에 적합한 컴퓨터 등 장비 및 주변기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 6) 자체 경영활동에 적합하고 업무 종사 자격을 획득한 보안관리인원, 경영관리인원, 전문 기술인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 7)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의 최저 면적, 컴퓨터 등 장비 및 기타 주변기기 수량, 한대의 컴퓨터 면적 표준은 국무원 문화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심사허가를 마친 후 설립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들은 본 조 1), 2)항에서 규정한 조건 외 국무원 문화행정관리부문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문화행정부문에서 규정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 총수와 분포지역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는 중학교, 소학교 교정 주위 200미터 범위 내 및 주민 아파트 내에 설립하지 않는다.

제10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회사 설립 시 반드시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문화행정부문에 신청하며 동시에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명칭 사용권 비준 통지서 및 정관.
- 2) 법정 대표자 혹은 주요 책임자의 신분 증명 자료.
- 3) 자금 신용 증명.
- 4) 영업장소 재산권 증명서 혹은 임대 의향서.
- 5) 법에 따른 기타 필요한 서류.

제11조 문화행정부문은 설립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20일(작업일)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 후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인에게 설립 계획 동의 허가서류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설립 계획을 완성한 후 설립 계획 동의 비준서를 가지고 동급 공안기관에 정보 네트워크 보안 및 소방안전 검사를 신청한다. 공안기관은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20일(작업일)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검사를 마친 후 합격자에게 허가서류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공안기관에서 발부한 비준문서를 가지고 문화행정부문에 최종 검사를 신청한다.



문화행정부문은 신청서류를 받은 15일(작업일) 내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검사를 마친 후 합격자에게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발부한다.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문화행정부문에서 심사 후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안기관 심사 후 불합격인 경우 반드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등록 신청을 하며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획득한 후 영업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는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수정, 임대,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운영기구 주소 변경, 운영 장소의 재건설 혹은 확장, 컴퓨터 수량 혹은 기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해당 심사 기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의 운영기구 명칭, 주소, 법인 대표 혹은 주관 인원, 등록자금, IP주소를 변경하거나 경영 활동 정지할 경우 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문에 변경등록 혹은 취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문화행정부문, 공안기관에서 관련 수속 처리하거나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경영

제14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와 온라인 소비자들은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를 이용하여 다음 내용들이 포함된 정보를 제작, 다운로드, 복사, 열람, 발표, 전송 혹은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1) 헌법에 확정된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정보
- 2) 국가정권과 통일, 주권 및 영토 안정에 위해 되는 정보
- 3) 국가 기밀 누설, 국가안전 위해 혹은 국가의 영예와 이익에 손상을 주는 정보
- 4) 민족 간 반목과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말살하거나 민족 풍속, 습성을 침해하는 정보
- 5) 국가의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이비종교와 미신을 전도하는 정보
- 6) 유언비어 등으로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전을 파괴하는 정보
- 7) 음란, 도박, 폭력 혹은 범죄를 교사하는 정보
-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 9) 사회공덕 혹은 민족 우수문화 전통을 위해하는 정보
- 10)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기타 내용의 정보

제15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 및 온라인 소비자들은 정보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하는 활동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 1) 고의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파괴성 프로그램을 제작 혹은 전송하는 행위
- 2) 불법으로 컴퓨터 정보 시스템 침입 혹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기능, 데이터, 응용프로그램을 파괴하는 행위

3)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활동

제16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는 법에 따라 경영허가증을 획득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인터넷을 접속하여야 하며 기타 방식으로 인터넷을 접속하면 안 된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에서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컴퓨터는 반드시 랜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야 하며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는 온라인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을 경영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 및 온라인 소비자들은 온라인 게임 혹은 기타 방식을 이용하여 도박활동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는 경영관리 기술조치를 실시하고 운영 장소 내 순찰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온라인 소비자들이 본 조 제14, 15, 18조에서 열거한 행위가 있거나 기타 위배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제지시키는 동시에 문화행정부문, 공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는 영업장소의 선명한 곳에 《네트워크 문화 영업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는 미성년자를 입장시키지 못한다.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는 반드시 운영 장소 입구의 선명한 곳에 미성년자 진입 불가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22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의 매일 영업시간은 8시~24시로 제한한다.

제23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는 반드시 온라인 소비자의 신분증 유효증서에 대하여 대조, 등기를 하며 관련 인터넷 접속 정보를 기록한다. 등록내용과 기록 보존 시간은 최저 60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문화행정부문, 공간기관에서 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내용과 기록은 보존기한 내 수정 혹은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는 반드시 법에 따라 정보 네트워크 보안, 치안 및 소방안전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준수하여야 한다.

- 1) 불꽃 조명 및 흡연을 금지 표지를 장소 내에 붙여야 한다.
- 2) 연소하기 쉽고 폭발하기 쉬운 물품을 운영 장소 내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 3) 고정된 봉쇄창문 설치를 금지한다.
- 4) 영업 기간 창문을 봉쇄하거나 열쇠로 문, 안전 분산 통로, 안전 출구를 잠그는 것을 금지한다.



5) 독단적으로 보안 기술 조치를 정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장 벌칙

제25조 문화행정부문,公安기관, 公商행정관리부문 혹은 기타 관련 부문 및 관련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재물 혹은 기타 이익을 받고 법을 위배하고 법정 설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를 비준하거나,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사 범죄를 구성한 직접 담당 주관자와 기타 책임자들은 형법에 따라 직무남용 죄, 독직 죄 혹은 기타 범죄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을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강등, 직위해제 혹은 퇴직 행정 처분한다.

제26조 문화행정부문,公安기관, 公商행정관리부문 혹은 기타 관련 부문 직원이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강등, 직위해제 혹은 퇴직 행정 처분을 준다.

문화행정부문,公安기관, 公商행정관리부문 혹은 기타 관련 부문이 이상의 행위가 있을 경우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자나 기타 직접 담당자에 대하여 이상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

제27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를 설립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 혹은 公商행정관리부문과 公安기관 협동으로 법에 따라 그 기구를 철폐하고 위법 경영 활동에 사용한 도구, 장비를 몰수하며 △형법을 구성하였을 경우 형법에서의 관련 불법 경영에 대한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을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公商 행정관리부문에서 불법 소득과 불법 운영에 사용한 기기 설비 등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이 10,000위안 이상일 경우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10,000위안 이하인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고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수정, 임대, 빌려주거나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법에서의 국가 기관 공문, 증진, 도장 위조죄, 변경죄, 매매죄 규정에 근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 형사 처벌을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문화행정관리부문에서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경영 소득이 5,000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경영 소득이 5,000위안 이하인 경우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고 영업장소를 이용하여 본 조례의 제14조에서 규정한 금지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제작, 다운로드, 복제, 열람, 발부, 전송 혹은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을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公安기관에서 경고처벌을 주는 동시에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경영 소득이 10,000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경영 소득이 10,000위안 이하인 경우 10,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행위가 엄중한 업체는 운영 장소 정지 정리를 명령하며 아울러 문화행정관리부문에서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온라인 소비자가 이상과 같은 불법행위를 진행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형사 처벌을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고 아래 행위에 해당될 경우 문화행정부문은 경고처벌하고 1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정도가 엄중할 경우 정지 정리 명령을 하고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 1) 규정한 영업시간 외 영업할 경우
- 2) 미성년을 입장시킬 경우
- 3) 온라인 게임 외 기타 형식의 게임을 경영할 경우
- 4) 사사로이 경영관리기술조치를 정지할 경우
- 5)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게시하지 않고 미성년 진입 금지 표지를 붙이지 않을 경우

제31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고 아래 행위 중 한 가지에라도 해당될 경우 문화행정부문, 공안기관은 각 기관의 직무권한에 따라 경고처벌하며 1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정도가 엄중할 경우 정지 정리 명령을 하고 문화행정부문에서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 1) 온라인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컴퓨터를 랜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 2) 운영 장소 내 순찰제도를 구축하지 않거나 온라인 소비자들의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저지하지 않고 문화행정부문, 공안기관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3) 규정에 따르지 않고 온라인 소비자의 신분증 유효증서에 대하여 대조, 등기를 하지 않거나 관련 인터넷 접속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 4) 규정한 시간대로 등록내용과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보존 기간 내 수정 혹은 삭제할 경우
- 5) 명칭, 주소, 법인 대표 혹은 주관 인원, 등록자금, IP주소를 변경하거나 경영활동 종료 시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는 경우

제32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고 아래 행위 중 한 가지 정상이 있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경고처벌을 주며 1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 정지 정리 명령을 하고 문화행정관리부문에서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 1) 불꽃 조명을 사용하거나 흡연자를 발견하고도 저지시키지 않으며 실내에 흡연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 2) 연소하기 쉽고 폭발하기 쉬운 물품을 운영 장소 내에 가져오는 것을 허락할 경우
- 3) 고정된 봉쇄창문 설치하였을 경우



- 4) 영업 기간 창문을 봉쇄하거나 열쇠로 문, 안전 분산 통로, 안전 출구를 잠그는 현상이 있을 경우
- 5) 독단적으로 보안 기술 조치를 정지할 경우

제33조 국가 관련 정보 네트워크 보안, 치안관리, 소방관리, 공상행정관리, 통신관리 등 규정을 위배하고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을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문, 통신관리기구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며 내용이 엄중한 경영업체는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34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여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 취소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등록 변경 혹은 등록 취소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기한 내 처리하지 않는 경영업체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35조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업체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여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 취소 행정처벌을 받았을 경우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이 취소된 그날로부터 5년 내 경영업체의 기존 법인대표 혹은 주요 관계자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의 법인대표 혹은 주요 관계자를 담당하지 못한다.

사적으로 설립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는 법에 따라 취소하며 취소한 그날로부터 5년 내 기존 법인대표 혹은 주요 관계자는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경영업체의 법인대표 혹은 주요 관계자를 담당하지 못한다.

제36조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반드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결정과 수익몰수를 실행하며 수납한 벌금과 몰수한 불법소득은 모두 국고에 귀속한다.

제5장 부칙

제37조 본 조례는 2002년 11월 15일부터 실시한다. 2001년 4월 3일 신식산업부, 공안부, 문화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부한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운영 장소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15.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 네임 등록 실시 세칙 (中国互联网络信息中心域名注册实施细则)

제1장 총칙

제1조 도메인 네임 등록 및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 방법》(이하 《관리방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본 실시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CN도메인 네임 및 중문 도메인 네임 등록 신청 혹은 관련 행사 진행 시 본 실시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실시 세칙에서 언급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신식산업부에서 반포한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 공고를 준수한다.

제2장 도메인 네임 등록 신청 및 심사

제4조 도메인 네임 등록 신청자(이하 신청자로 약칭)는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하고 독립적인 민사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한다.

제5조 신청자는 도메인 네임 신청 시 인터넷 상 등록 및 메일 등 방식으로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와 도메인 네임 등록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도메인 네임 신청서 내용

- 1) 신청하는 도메인 네임
- 2) 메인 도메인 네임 서버와 Backup 도메인 네임 서버의 메인보드 명칭 및 IP주소
- 3) 도메인 네임 소지인의 회사 명칭, 회사 담당자, 회사 소속 산업, 주소, 우편번호, 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인증 정보
- 4) 도메인 네임 기술 담당자, 관리 담당자, 수수료 담당자, 관계자의 성명, 소재 회사명칭, 주소, 우편번호, 메일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제7조 신청자의 책임

- 1) 인터넷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2)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방법》 및 주관부문의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3)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에서 제정한 도메인 네임 등록 실시세칙, 도메인 네임 쟁의 해결 방법 등 관련 규정 및 수정 후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제출한 도메인 네임 등록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에서 처음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를 신청일로 정하고 신청자에게 신청일자를 통지해야 한다.

제9조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에서 도메인 네임 등록신청을 수리하며 또한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제10조 《관리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도메인 네임에 대하여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에서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도메인 네임 신청자 혹은 소유인이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의 삭제행위에 불만이 있을 경우 도메인 네임 주관기구에 재차 심사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2급 도메인 네임 GOV에서 3급 도메인 네임 등록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신청기구의 공인이 찍힌 도메인 네임 등록 신청서
- 2) 신청기구가 정부기구라는 관련 증명자료

제12조 2급 도메인 네임 EDU에서 3급 도메인 네임 등록을 신청하는 관련 규칙은 중국교육 및 과학연구 컴퓨터 네트워크센터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3장 등록된 도메인 네임의 변경 및 취소

제13조 등록된 도메인 네임의 관련 등록정보가 변경될 경우 도메인 네임 소유자는 즉시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정보 변경 신청 시 신청자는 도메인 네임 등록신청 시 선택한 변경 확인방법에 따라 도메인 네임 변경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의 비준을 받은 후 등록정보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된 도메인 네임 양도를 신청할 경우 양도인은 원 등록서비스기구에 신청기구의 확인을 받은 혹은 이미 공증한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서비스기구의 확인을 거친 후 본래의 등록기구에서 해당 도메인 네임 운영변경을 진행한다.

제15조 등록된 도메인 네임 취소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는 등록서비스기구에 신청기구의 확인을 받은 혹은 이미 공증한 도메인 네임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의 확인을 걸친 후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에서 해당 도메인 네임을 취소한다.

제16조 도메인 네임 소지자는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를 선택 및 변경할 수 있다.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 변경 시 도메인 네임 소지자와 관련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는 마땅히 《중국 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 네임 등록서비스기구 변경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도메인 네임 운영관리비용

제17조 《관리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는 등록된 도메인 네임에 대하여 연도 운영관리비용을 징수하며 수금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18조 매년 도메인 네임 연기 비용 납부 마감일은 신청 일로 정하고 연기 비용 납부 마감일 전에 연기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를 정지한다. 서비스를 정지한 후 15일 내에 연기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메인 네임을 취소한다.

제5장 부칙

제19조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에서 구축한 www 서버(<http://www.cnnic.net.cn>)는 도메인 네임 등록 정보 및 기타 관련 사항 반포에 사용된다.

제20조 신청자가 도메인 네임 신청서에 기록한 각 항 정보는 신청자의 공개할 수 없다는 특별한 성명이 없는 외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기구 혹은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에서는 공중 검색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출판물에 입력하며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기구 혹은 도메인 네임 등록 서비스기구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목차 서비스 중의 하나로 된다.

제21조 인터넷 및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발전 및 관련 법률, 법규, 정책의 변화 등에 근거하여 중국 인터넷정보센터는 본 실시 세칙을 수정할 수 있다.

제22조 인터넷정보센터에서 본 실시 세칙에 대한 해석을 담당한다.

제23조 본 실시 세칙은 2002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16. 《전신업무 분류 목차》 재조정 통보 (《电信业务分类目录》重新调整通告)

통신업무의 발전에 호응하기 위해 중국 신식산업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이하 《통신조례》로 약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신조례》에 첨부된 《전신업무 분류 목차》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후의 《전신업무 분류 목차》는 2003년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며 동시 조절 전의 《전신업무 분류 목차》는 폐지된다.

2003년 2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산업부

1. 기초 전신 업무

1) 제1류 기초 전신 업무

(1) 유선통신 업무

유선통신은 단말기장비와 네트워크 장비사이 케이블 및 광케이블 등 회로를 통해 고정 연결시켜 사용자간의 상호 통신을 실현한다. 유선통신 업무는 단말기 이동성 불가 혹은 제한된 이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 전화기, IP 전화 단말기, 팩스기, 무선 전화기, 인터넷 컴퓨터 등 전화망 및 데이터 망 단말기 장비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선통신 업무는 유선전화망 통신 업무와 국제 통신장비 서비스 업무를 가리킨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화망 번호표준》에 근거하여 전국의 유선전화망은 여러 개 “장거리 번호구역”으로 나누며 매 장거리 번호구역은 하나의 현지전화망을 구성한다. 유선전화망은 전기회로 교환기술 또는 분할 교환기술을 채용할 수 있다.

유선통신 업무에는 유선망 현지전화 업무, 유선망 국내 장거리전화 업무, 유선망 국제장거리 전화업무, IP전화업무, 국제 통신장비 서비스 업무 등이 포함된다.

① 유선망 현지전화 업무

유선망 현지전화 업무는 현지전화망(ISDN망 포함)을 통하여 동일 장거리번호 구역 내에서 제공하는 전화업무를 가리킨다.

유선망 현지전화업무의 주 업무유형

- 단말사이 쌍방향 전화업무
- 단말사이 팩스업무 및 중·저 속 데이터업무(유선망 단신업무 등)
- 호출전환, 3인 통화, 발신자번호 현시 등 보완업무
- 현지전화망과 지능망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현지지능망 업무
- ISDN에 기반의 적재업무

유선망 현지전화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현지전화망 장비(유선접속장비 포함)를 구축한 후 일부 또는 모든 현지전화망 업무 유형을 제공할 수 있다. 1차 현지전화 업무 제공 시 거치는 네트워크는 동일 운영업체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다른 운영업체 네트워크 일 수도 있다.

② 유선망 국내 장거리 전화업무

유선망 국내장거리 전화업무는 장거리 전화망(ISDN망 포함)을 통과하여 다른 장거리번호 구역 내 즉 부동한 현지전화망 사이에 제공되는 전화업무이다.

유선전화망 국내장거리 전화업무의 주 업무유형

- 서로 다른 장거리번호 구역의 단말사이 쌍방향 전화업무
- 다른 장거리번호 구역의 단말사이 팩스업무 및 중·저 데이터업무
- 다른 장거리번호구역사이 호출전환, 3인 통화, 발신자번호 현시 등 보완 업무
- 현지전화망, 장거리 망 및 지능망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다른 장거리번호 구역을 걸친 지능망 업무
- ISDN 기반의 다른 장거리번호 구역사이 적재업무

유선망 국내 장거리전화 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국내 장거리전화망 장비를 구축한 후 일부 또는 모든 국내 장거리전화 업무 유형을 제공할 수 있다. 1차 국내 장거리전화 업무 제공시 거치는 현지 전화망 및 장거리 전화망은 동일 운영업체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다른 운영업체 네트워크 일 수도 있다.

③ 유선망 국제 장거리 전화업무

유선망 국제 장거리전화 업무는 국가와 국가사이 혹은 국가와 지역사이 국제전화망(ISDN망을 포함)을 통하여 제공되는 국제전화 업무를 가리킨다.

유선망 국제 장거리전화 업무 주 업무유형

- 국가와 국가사이, 국가와 지역사이 단말간 쌍방향 전화업무
- 국가와 국가사이, 국가와 지역사이 단말간 팩스업무 및 중·저 속 데이터업무
- 현지전화망, 장거리 망, 국제 망 및 지능망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국가 간 또는 국가와 지역간의 지능망 업무, 예를 들면 외국환 사용자그룹 전화업무 등
- ISDN 기반의 국가와 국가사이, 국가와 지역사이 적재업무

국제전화선을 이용해 제공되는 외국환 사용자 그룹 전화업무는 유선망 국제장거리 전화업무에 속한다.

유선망 국제 장거리 전화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국제 장거리전화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국제 통신장비 서비스업무 경영권이 없는 운영업체는 국제 수송장비를 구축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경영권을 소지한 운영업체의 국제 수송장비를 임대한 후 일부 혹은 모든 국제 장거리전화 업무 유형을 제공할 수 있다. 1차 국제 장거리전화 업무 제공시 거치는 현지전화망, 국내 장거리 전화망 및 국제 네트워크는 동일 운영업체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다른 운영업체 네트워크가 공동 완성할 수도 있다.

④ IP 전화업무

IP 전화업무는 IP 망 협의에 근거하여 IP망을 통해 제공되거나 또는 전화망과 IP 망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전화업무를 가리킨다.

여기서의 IP 전화업무는 전화망과 IP망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Phone-phone 및 PC-Phone 전화업무를 가리킨다. 업무범위는 국내장거리 IP 전화업무와 국제 장거리 IP 전화업무가 포함된다.

IP 전화업무 주 업무유형

- 단말사이 쌍방향 전화업무



- 단말사이 팩스업무 및 중·저 속 데이터업무
- 지능망과 공동으로 제공되는 국내 및 국제 장거리 지능망 업무

IP 전화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IP 전화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국제·국내 통신장비 서비스업무 경영권을 소지하지 못한 운영업체는 국내·국제 수송장비를 구축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경영권을 소지한 운영업체로부터 국내·국제 수송장비를 임대한 후 일부 혹은 모든 IP 전화업무 유형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 IP 장거리전화 업무 제공 시 반드시 국가에서 비준한 국제통신 출입구를 거쳐야 한다. 1차 IP 전화업무 제공 시 거치는 네트워크는 동일 운영업체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다른 운영업체 네트워크가 공동 완성할 수도 있다.

⑤ 국제 통신장비 서비스업무

국제통신장비란 국제통신업무에 필요한 지상 수송망 및 네트워크 요소를 가리킨다.

국제통신장비 서비스 업무는 국제통신장비 구축, 임대 및 판매 등 업무를 가리킨다.

국제통신장비에는 주로 국제 육지케이블, 국제 해상케이블, 해상케이블 기지, 국제 지상수송통로, 국제 위성 지구 영역, 국제통신 통로인 국내 간이통신역 및 국제통신망 광대역, 광통신 파장, 케이블, 광섬유, 광케이블 등이 포함된다.

국제통신장비 서비스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 통신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 물리자원 및 기능자원을 구축하여야 하며 상응한 임대, 판매 등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2)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는 교환무선그룹망 방식을 도입하여 단말기와 네트워크 장비사이의 무선통로를 연결시켜 사용자들이 활동 중에 상호통신을 할 수 있다.

주요특징은 단말기의 이동성, 스테이션간의 전환 및 현지통신망간의 자동 로밍 서비스이다.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는 기지국 시스템, 이동교환 시스템 등 장비로 구축된 교환식 모바일 통신망으로 전화, 데이터, 시청그래픽 등 업무를 제공한다.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는 900/1800MHz GSM차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 800MHz CDMA 차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 제3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 등을 포함한다.

① 900/1800 MHz GSM 차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

900/1800 MHz GSM 차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이하 GSM 이동통신으로 약칭)는 900/1800MHz 주파수 내의 GSM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화, 데이터서비스를 가리킨다. GSM 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포트는 TDMA기술을 도입, 핵심 망 이동성 관리는 MAP협의를 도입했다.

900/1800MHz GSM차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의 주 업무유형

- 단말사이 양방향 전화업무
- 모바일 정보업무, GSM망 및 정보플랫폼이 제공한 모바일 기지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접수하는 정보 업무.

- 모바일 적재업무 및 이에 기반한 모바일 데이터업무.
- 발신자번호 표시, 호출전환 업무 등의 부가 서비스
- GSM망과 지능망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지능망서비스. 예를 들면 선불업무 등이 있다
- 국내·국제 로밍 서비스

900/1800MHz GSM 차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 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GSM 모바일 통신망을 구축한 후 일부 또는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야별로 제공할 수 있다. 1차 모바일 통신업무 제공 시 거치는 네트워크는 동일 운영업체 네트워크 일수도 있고 부동한 운영업체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동망 국제통신서비스 제공 시 반드시 국가의 기준을 걸친 국제통신 출입구를 통과해야 한다.

② 800MHz CDMA 차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통신

800MHz CDMA 차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통신(이하 CDMA 이동통신으로 약칭)업무는 800MHz 주파수의 CDMA 이동 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화, 데이터업무를 가리킨다.

800MHz CDMA차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단말사이 양방향 전화업무
- 모바일 정보업무, CDMA망 및 정보플랫폼이 제공한 모바일 기지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접수하는 정보 서비스.
- 모바일 적재서비스 및 이에 기반한 모바일 데이터서비스.
- CDMA망과 지능망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지능망업무. 예를 들면 선불업무 등이 있다.
- 국내·국제 로밍 서비스

800MHz CDMA 차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 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CDMA이동통신망을 구축한 후 일부 또는 모든 모바일 통신업무 유형을 제공할 수 있다. 1차 모바일 통신업무 제공 시 거치는 네트워크는 동일 운영업체 네트워크 일수도 있고 부동한 운영업체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완성할 수도 있다. 이동망 국제통신업무 제공 시 반드시 국가의 기준을 걸친 국제통신 출입구를 통과해야 한다.

③ 제3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

제3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이하 3G이동통신으로 간칭)는 제3세대 이동 통신 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화, 데이터 및 시청 그래픽업무를 가리킨다.

주요특징은 이동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속 이동환경에서 144kb/s, 보행 및 느린 속도 이동환경에서 384kb/s, 실내 환경에서 2Mb/s 속도의 데이터전송을 지원하는 한편 서비스품질(QoS)을 보장해준다.

제3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에는 차세대 교환식 모바일 통신이 제공하는 모든 업무유형과 모바일 멀티미디어 업무를 포함한다. 제3세대 디지털 교환식 모바일 통신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3G이동통신망을 구축한 후 일부 또는 모든 이동통신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차 모바일 통신업무 제공 시 거치는 네트워크는 동일 운영업체 네트워크 일수도 있고 부동한 운영업체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이동망 국제통신업무 제공 시 반드시 국가의 기준을 걸친 국제통신 출입구를 통과해야 한다.



(3) 제1류 위성통신업무

위성통신업무는 통신위성과 지구스테이션으로 구성된 위성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전화, 데이터, 시청그래픽 등 업무를 가리킨다. 통신위성은 지구 동보위성(정지위성), 지구중궤도위성, 저궤도위성(비 정지위성)으로 구분된다. 지구스테이션에는 일반적으로 고정지구스테이션을 가리키지만 운반 가능한 지구스테이션, 이동지구스테이션 또는 이동사용자단말도 포함된다.

위성통신업무는 관리수요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며 제1류 위성통신업무에는 이동통신업무와 위성국제 전용선 업무가 포함된다.

① 위성이동통신 업무

위성이동통신 업무는 지상에 장착된 모바일 지구스테이션 혹은 모바일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 휴대용 단말기, 차(선박, 비행기)탑재 단말기를 사용하여 통신위성, 시스템 제어센터 등으로 구성된 위성이동통신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는 지상, 해상, 공중 통신업무를 가리킨다. 위성이동통신 서비스에는 전화, 데이터, 시청그래픽 등 업무가 포함된다.

위성이동통신 서비스 경영업체는 반드시 위성이동통신망 장비를 구축한 후 일부 또는 모든 위성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지역 위성이동통신 서비스(통신 중의 한 단말이 외국에 위치)를 제공할 시 국가 비준 국제통신 출입구를 통해 전환해야 한다. 위성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시 거치는 네트워크는 동일 운영업체 네트워크 일수도 있고 다른 운영업체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② 위성국제전용선 업무

위성국제전용선 업무는 고정위성스테이션과 정지 혹은 비 정지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고정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점-점형 국제전송경로 및 통신전용선 임대업무를 가리킨다. 위성국제전용선 업무에는 영구연결과 반영구연결 두 가지로 구분된다.

위성국제전용선업무 응용을 제공하는 지구스테이션장비는 경내·경외에 장착되었으며 단말사용자는 임대 또는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성국제전용선업무의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위성통신망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4) 제1류 데이터통신업무

데이터통신업무는 인터넷, 프레임중계, ATM, X.25 분할교환망, DDN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 전송업무를 가리킨다.

관리의 수요에 따라 데이터통신업무는 두 가지로 분류하며 제1류 데이터통신업무에는 인터넷데이터전송업무, 국제데이터통신업무, 공중정보, 사용자정보업무 등이 포함된다.

① 인터넷 데이터 전송업무

인터넷 데이터 전송업무는 IP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IP 데이터베이스를 소스네트워크 또는 메인보드에서 목표 네트워크 또는 메인보드에 전송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인터넷 데이터 전송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인터넷 핵심 네트워크와 인터넷 국제

출입구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 혹은 국내 통신장비 서비스업무 경영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영업체는 국제·국내 전송장비를 구축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련 경영권을 소지한 경영업체의 국제·국내 전송장비를 임대 사용해야 한다.

인터넷 데이터 전송업무 경영업체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체에 접속업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단말 사용자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 데이터 전송업무 제공 시 거치는 네트워크는 동일 운영업체 네트워크 일수도 있고 부동한 운영업체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인터넷 데이터 전송업무 경영업체는 사용자 지역망, 유선 접속망, 도시 네트워크 등 인터넷장비를 구축할 수 있다. 인터넷 기반의 국제회의 TV 및 그래픽 서비스업무, 국제 폐 사용자그룹의 데이터업무는 모두 인터넷 데이터 전송업무에 속한다.

② 국제 데이터 통신업무

국제 데이터 통신업무는 국가 간 또는 국가와 지역간 프레임 중계 및 ATM망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PVC를 연결해주거나 국제선로 혹은 국제전용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또는 그래픽전송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국제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국제회의 TV업무 및 국제 폐 사용자그룹의 데이터업무는 모두 국제 데이터 통신업무에 속한다.

국제 데이터 통신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국제 프레임중계, ATM망을 구축해야 한다. 국제 통신장비 서비스업무 경영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영자는 국제전송장비를 구축할 수 없으며 관련 경영권 소지 경영업체의 국제전송장비를 임대 사용해야 한다.

③ 공중전보와 사용자 전보업무

공중전보업무는 전신국에서 전보 발신자의 전보내용을 전보망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송 및 배달하는 전보업무를 가리킨다. 공중전보업무는 전보전송 목적지에 따라 국내 공중전보업무와 국제 공중전보업무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사용자 전보업무는 사용자가 근무직장, 거주지 혹은 전신국 영업실에 장착된 전보 단말장비를 이용해 사용자 전보망으로 현지 또는 국내외 각 지역의 사용자와 직접 통보를 하는 전보업무 중의 일종이다. 사용자 전보업무는 사용방식에 따라 전문용 사용자 전보업무, 공중사용자 전보업무 및 해사(海事) 사용자 전보업무 등 3가지로 구분된다.

2) 제2류 기초전신 업무

(1) 그룹통신 업무

그룹통신 업무는 채널공유 등의 기술특징을 보유한 그룹통신 시스템으로 구성, 그룹통신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각 부서, 기관 등 그룹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통신업무를 가리킨다.

그룹통신 시스템은 동태적인 채널분할 방식으로 사용자의 다 채널공유를 실현시키는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단말장비, 기지국, 핵심제어 스테이션으로 구성, 조정·집중 호출·우선 호출·사이버 전문 네트워크·로밍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업무는 아날로그 그룹통신업무와 디지털 그룹통신업무로 구분된다.



① 아날로그 그룹통신업무

아날로그 그룹통신 시스템은 무선포트에 아날로그 조절방식을 도입한 그룹통신 시스템으로 그룹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통신업무를 가리킨다. 아날로그 그룹통신 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 아날로그 그룹통신 업무망을 구축해야 하며, 국내 통신장비 서비스업무 경영권이 없는 업체는 국내 전송망장비를 구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응하는 경영권을 소지한 운영업체로부터 전송장비를 임대하여 업무망을 구축해야 한다.

② 디지털 그룹통신 업무

디지털 그룹통신 시스템은 무선포트에 디지털 조절방식을 도입하여 통신하는 그룹통신 시스템으로 그룹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업무를 가리킨다.

디지털 통신업무는 지휘·데이터·전화(그룹통신망내부 전화 또는 그룹통신망과 공중망사이 통화 포함) 등을 포함한다.

디지털 그룹통신 업무 경영업체는 기획·조정업무 외에도 데이터, 그룹통신망 내부 전화 업무 및 소수 그룹 네트워크와 공중전화간의 전화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그룹통신 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디지털 그룹통신 업무망을 구축해야 한다. 국내 통신장비서비스 업무 경영권이 없는 업체는 국내에 전송망장비를 구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응하는 경영권을 소지한 운영업체로부터 전송장비를 임대하여 업무망을 구축해야 한다.

(2) 무선폭출 업무

이 업무는 인공 또는 자동접속방식으로 로밍 범위 안에서 가입자들에게 무제한 호출 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말 유형과 시스템 발송 콘텐츠에 따라 무선폭출 사용자들은 서비스범위 내에서 디지털 정보, 중문정보 혹은 어음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무선폭출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무선폭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국내 통신장비서비스업무 경영권이 없는 업체는 국내 전송망장비를 구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응하는 경영권을 소지한 운영업체로부터 전송장비를 임대하여 업무망을 구축해야 한다.

(3) 제2류 위성통신 업무

제2류 위성통신 업무는 위성전송기 임대 및 판매업무, VSAT 통신업무 등을 포함한다.

① 위성전송기 임대 및 판매업무

위성전송기의 임대 및 판매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혹은 임대한 위성전송기(하나 또는 여러 대의 완전한 전송기 및 전송기 대처기기)를 수요에 따라 재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사용자가 임대하거나 구입한 위성전송기로 자신이나 타인 및 기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위성전송기를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혹은 임대한 위성전송기를 이용해 관련 기기의 임대 및 판매활동을 할 수 있다.

② VSAT통신업무

VSAT통신업무는 위성전송기를 이용하여 국내 센터와 VSAT 단말고객사이, VSAT 단말 고객간의 전화, 데이터, 시청채널 그래픽 전송 등 VSAT통신 시스템센터를 관리하고 제어한다.

VSAT통신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VSAT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국내 핵심 스테이션과 VSAT단말사용자(지구스테이션)사이, VSAT단말사용자 간에 전화, 데이터, 시청채널 그래픽 등을 전송한다.

(4) 제2류 데이터통신 업무

제2류 데이터 통신업무는 유무선 국내 데이터 전송업무를 포함한다.

① 유선 국내 데이터 전송업무

유선 국내 데이터전송업무는 제1류 데이터 전송업무 외 국내 단말사이의 데이터 전송업무를 가리킨다. 전송업무에는 ATM망 기반의 ATM데이터 전송업무, X.25 그룹분할 교환망 기반의 X.25데이터 전송업무, DDN 기반의 DDN데이터 전송업무, 프레임 중계망 기반의 프레임 중계데이터 전송업무 등이 있다.

유선 국내 데이터 전송업무는 PVC데이터 전송업무, SVC데이터 수송업무, 사이버전용망 업무 등으로 나뉘어진다.

국내 통신장비 서비스업무 경영권이 없는 경영업체는 국내 전송망장비를 구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응하는 경영권을 소지한 운영업체로부터 전송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무선데이터 전송업무

무선데이터 전송업무는 기초통신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무선방식으로 제공하는 단말사이의 데이터 전송업무를 가리키며,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성을 가진다.

무선데이터 전송업무는 CDPD, PLANET, NEXNET, Mobitex 등 시스템을 포함하며, 쌍방향 호출은 무선데이터 전송업무의 응용에 속한다.

무선데이터 전송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의 무선데이터 전송망을 구축해야 한다. 국내 통신장비 서비스업무 경영권이 없는 경영업체는 국내 전송망장비를 구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응하는 경영권 운영업체의 전송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해야 한다.

(5) 네트워크접속 업무

네트워크접속 업무는 유무선 방식으로 SNI 또는 UNI를 상호 연결하는 접속서비스를 가리키며 이는 무선접속업무와 사용자 현지망 업무를 말한다.

① 무선접속업무

무선접속업무는 무선방식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접속업무로 특히 단말가입자에게 유선(유선전화망과 인터넷망)으로 제공되는 무선접속방식을 가리킨다. 무선접속 네트워크는 SNI와 UNI 사이에 위치하고, 전송매체에는 전부 혹은 일부가 공중전송 무선방식이 도입되었다.



② 사용자 현지망 업무

사용자 현지망 업무는 유무선 방식으로 공중망과 연결되어, 사용자 현지망(CPN) 관련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네트워크 접속업무를 가리킨다.

사용자 현지망은 UNI에서 사용자 단말 관련 네트워크 장비까지를 말하며, 특히 수요에 근거한 사용자 현지망은 사용자 현지서비스에서 사용자단말에 이르는 관련 네트워크 장비를 가리킨다.

사용자 현지망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자체망을 구축한 후, 네트워크 요소를 임대 또는 판매할 수 있다.

(6) 국내 통신장비 서비스업무

국내 통신장비는 지상 전송네트워크 및 네트워크요소를 말하고, 국내 통신장비 서비스업 무란 국내 통신장비를 구축, 임대, 판매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국내 통신장비는 주로 광케이블, 케이스, 광섬유, 금속라인, 절점(节点)장비, 회로장비, 마이크로웨이브기지국, 국내위성지구스테이션 등의 물리자원 및 광대역(통로, 회로), 파장 등의 성능자원으로 구성된 국내통신 전송장비들이 포함된다.

국내 전용선회로 임대서비스는 국내 통신장비 서비스업무에 속한다.

국내 통신장비 서비스업무 경영업체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에서 제기한 국내 통신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지고 물리자원과 성능자원을 구축한 후 임대, 판매 등을 할 수 있다.

(7) 네트워크 위탁관리업무

네트워크 위탁관리업무란 사용자의 위탁 하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임대한 국내 네트워크, 네트워크요소, 장비를 대리·관리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네트워크 위탁관리업무는 사용자에게 장비 배치, 네트워크관리 및 운영·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용자에게 기타 네트워크의 응용·관리·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부가가치 통신 업무

1) 제1류 부가가치 통신 업무

(1) 온라인 데이터 프로세스 및 거래 프로세스 업무

이 업무는 각종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료 및 거래/사무 프로세스 응용플랫폼으로 사용자에게 온라인 데이터 프로세스 및 거래/사무 프로세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거래 프로세스 업무에는 각종 은행업무, 주식거래, 티켓팅, 경매, 지불 등이 포함된다.

네트워크/전자장비 데이터 프로세스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로 제어 혹은 데이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전자자료교환업무(EDI)란 무역 또는 기타 행정사무와 관련된 정보 및 데이터를 통일된

규격에 따라 구조화된 사무프로세스데이터를 구축한 후 통신망을 통해 관련 사용자의 컴퓨터와 교환과 자동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무역업무 또는 기타 행정 업무를 가리킨다.

(2) 국내 다자간 통신 서비스 업무

국내 다자간 통신 서비스 업무는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의 두 지점 또는 그 이상의 지점간에 제공되는 쌍방향 또는 리퀘스트식 실시간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리킨다.

국내 다자간 통신서비스 업무에는 국내 다자간 전화서비스업무, 국내 화상전화 서비스업무, 국내 다자간 인터넷 TV 및 영상서비스 업무가 포함된다.

국내 다자간 전화 서비스업무는 공중전화망을 통해 국내의 두 지점이상의 전화를 연결시키고 다지점 사이의 실시간 쌍방향 통신을 실현한다.

국내 화상전화서비스 업무는 공중전화망을 통해 국내 두 지점 또는 여러 지점의 화상전화를 연결시켜 실시간 영상·데이터의 쌍방향 통신을 실현한다. 국내 인터넷 TV 및 영상서비스 업무는 국내 고객을 위해 인터넷에서 두 지점 또는 다(多)지점사이에 쌍방향 대칭, 쌍방향성의 멀티미디어응용 혹은 쌍방향 비대칭 리퀘스트식 영상의 각종 응용을 제공해준다. 예를 들면 원격진단, 원격교육, 협동사업, 전화화상서비스(VOD:Video-on-demand), 게임 등이 포함된다.

(3) 국내 인터넷 전용망 업무

국내 인터넷 전용망 업무(IP-VPN:Internet Protocol Virtual Private Network)란 기업체가 TCP/IP협약에 근거하여 자체 또는 임대한 인터넷 네트워크자원을 이용해 국내 사용자에게 인터넷 사용자그룹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인터넷 전용망은 주로 TCP/IP 기반의 IP 경로 등을 채택하며 일정한 보안성과 기밀성을 제공하는 한편 전용망 내에서 암호화된 투명 분할 전송 방식을 실현한다.

IP-VPN업무 내의 사용자는 IP-VPN을 이용하여 인터넷정보를 찾아보거나 경영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IP-VPN업무 기업체는 반드시 정확한 기술력 및 관리조정으로 사용자의 상거래 위반행위를 확실하게 방지해야 한다.

(4) 인터넷 자료센터 업무

인터넷 자료센터(IDC) 업무란 PC방에 쓰이는 장비를 이용해 아웃소싱 임대방식으로 사용자의 서버 등 인터넷 혹은 기타 네트워크 관련 장비를 위해 방치, 대리보수, 시스템배치, 시스템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이외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혹은 서버 등의 장비 임대, 메모리임대, 통신회로와 출구대역 대리임대 및 기타 응용서비스업무도 포함한다.

인터넷 데이터센터 업무 기업체는 반드시 PC방에 상당하는 주변장치를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보안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2) 제2류 부가가치 통신 업무

(1) 저장전송 업무

저장전송 업무란 저장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음성 편지함, X.400 전자메일, 팩스전송 등 업무가 포함된다.

① 음성 편지함

음성 편지함 업무는 전화망 또는 데이터전송망과 연결된 음성 편지함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저장, 추출, 음성 메모 및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음성 편지함마다 전문 편지함 번호가 있으며 사용자는 전화호출, 전화기다이얼 등 단말장비를 통해 정보 접·수송, 저장, 삭제, 전송, 통지 등을 할 수 있다.

② X.400전자메일 업무

X.400전자메일 업무란 ITV X.400건외에 부합되는 분할통신망 기반의 전자 편지함 업무를 가리킨다. X.400전자메일업무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결합시킨 후 저장과 전송방식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각 중 정보교환을 제공한다.

③ 팩스저장전송 업무

팩스저장전송 업무란 사용자의 팩스사이에 저장전송시스템을 구축한 후 사용자사이 팩스가 저장전송시스템의 제어를 거쳐 비 실시간으로 상대 단말기에 전송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팩스저장전송시스템은 팩스 스테이션과 팩스저장전송 편지함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자는 분할통신망 혹은 디지털 전용선으로 연결되었다. 팩스저장전송업무에는 다 지점 전송, 정시 전송, 팩스 편지함, 수신자지정통신, 편지내용저장 및 기타 부가기능이 포함된다.

(2) 호출센터 업무

호출센터 업무는 업체의 위탁을 받고 전화 또는 인터넷과 연결된 호출센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기술을 이용해 정보채집, 가공, 저장 후 정보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선망, 이동망,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에게 관련 기업의 업무·정보·데이터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무를 가리킨다.

호출센터 업무는 호출센터시스템과 전화 교환원좌석 임대서비스가 포함된다.

사용자는 전화, 팩스, 이동통신단말, 컴퓨터단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전화·팩스·전자메일·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을 이용해 해당업체의 관련 정보컨설팅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다.

(3) 인터넷 접속서비스 업무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서버접속과 소프트·하드웨어로 포트를 구축하고 통신인프라로 업무 포트와 인터넷 핵심망을 연결시킨 뒤 고객에게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사용자는 전화망 또는 기타 접속수단으로 포트에 접속한 후 포트를 통해 인터넷접속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업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업무(ICP) 기

업체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콘텐츠 제공, 온라인거래, 온라인응용 등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에게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4) 정보서비스 업무

정보서비스 업무란 정보 수집, 개발, 프로세스 및 정보플랫폼을 구축한 후 유선망, 이동망, 인터넷 등 공중통신망을 통해 단말기 사용자에게 음성정보, 온라인정보, 자료검색 등 정보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정보서비스는 콘텐츠서비스, 엔터테인먼트/게임서비스 등의 상용화정보와 위치추적정보 등의 서비스가 있다. 정보서비스업무 대상은 유선통신망사용자, 이동통신망사용자, 인터넷사용자 혹은 기타 데이터전송망 사용자이다.



17.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 (出版物市场管理规定)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령 제20호

《출판물 시장 관리규정》은 2003년 7월 16일 신문출판총서 제2차 사무회의 심의를 통과·공포하고 2003년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신문출판총서 서장 스중웬(石宗源)

2003년 7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 출판물의 발행 및 감독관리를 규범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개방되고 경쟁력과 질서를 겸비한 출판물 시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주의 출판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판관리조례》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근거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출판물의 발행 및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본 규정에 지정된 출판물이란 신문, 주간지, 도서, 전자출판물 등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 지정된 발행이란 총 발행, 도매, 소매 및 대여, 전시판매 등 활동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 지정된 총 발행이란 출판물 총 발행기구가 출판물을 통일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본 규정에 지정된 도매란 기타 출판물 경영업체에 출판물을 판매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 지정된 소매란 소비자에게 출판물을 판매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 지정된 대여란 대여금을 받는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출판물을 제공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 지정된 전시판매란 지정된 장소 또는 지정된 방식으로 일정한 시간 내 출판물을 전람, 판매, 주문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제3조 국가는 출판물 발행을 상대로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며 업체와 개인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조건에서 출판물을 발행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설립된 출판물 발행 기구와 출판물 발행업무 라이선스를 통과한 개인은 법적으로 출판물 발행활동에 종사하며 법이 지정하지 않은 기구와 개인은 간섭하지 못한다.

제4조 신문출판총서가 전국 출판물 발행활동을 감독하고 발전계획을 지정한다.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 출판물 발행활동을 감독관리하고 본 성, 자치주, 직할시의 출판물 발행산업의 발전계획을 지정한다.

성 급 이하 각급 인문정부 신문출판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출판물의 발행을 감독·관리한다.

제5조 신문출판총서와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출판물 발행지점을 지정할 시 반드시 필요한 과학적 논증을 거쳐야 하며 합법공정, 명실상부, 발전추진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서가 출판물 발행지점을 지정할 시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의 심사를 통과하고 본 급 인민정부가 허가·비준 후 본 행정구역 내에 반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출판물발행기구의 심사의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2장 출판물 발행기구 설정-1

제6조 출판물 총 발행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타 업체가 출판물 총 발행업무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겸비해야 한다.

- 1) 업체 명칭과 운영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 2) 출판물 발행을 주 업무로 해야 한다.
- 3) 출판물 총 발행업무와 관련된 발행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며, 법인대표 또는 주요 관계자가 고급 이상 출판발행 직업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발행인원도 초급 이상 출판물 발행 자격을 갖춰야 한다.
- 4) 출판물 총 발행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지정된 운영장소가 있어야 하며, 운영장소의 영업면적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5) 등록자본은 2,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 6) 관련된 컴퓨터 관리조건과 온전한 관리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제7조 출판물 총 발행업체 설립 또는 기타 기구가 출판물 총 발행업무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에 제2조 규정에 지정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문출판총서는 신청자료 접수 후 60일(근무일)동안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허가인 경우 신문출판총서는 신청인에게 《출판물 운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신청인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출판물 운영허가증》에 의거하여 운영허가증을 취득한다. 불허인 경우 반드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신청자료>

- 1) 신청서, 업체 기구,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 관계자의 성명, 주소, 자금 내치, 자금액수 등을 밝혀야 한다.
- 2) 조직기구와 정관
- 3) 등록자금 신용증명
- 4) 운영장소의 상황 및 사용권 증명
- 5) 법인대표 또는 주 관계자의 신분 인증
- 6) 법인대표 또는 주 관계자, 발행 전문인원의 직업자격 증명서
- 7) 관련 컴퓨터 관리조건 증명자료

제8조 출판물 도매업체를 설립하거나 기타 업체가 출판물 도매업무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 1) 업체 명칭과 운영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 2) 출판물 도매업무와 관련된 발행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며 법인대표 또는 주 관계자가 중급 이상 출판물 발행인원 직업자격을 소지해야 하고 발행인원은 출판물 발행인력 직업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 3) 출판물 도매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지정된 운영장소가 있어야 하며, 도매시장에 들어가는 운영 장소의 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 독자적으로 설립한 운영장소의 영업면적은 5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4) 등록자금이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 5) 관련 컴퓨터 관리조건을 갖춰야 한다.

제9조 출판물 도매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타 업체가 출판물 도매업무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시 급 신문출판행정부에 제3조 규정에 지정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 급 신문출판행정부서는 접수 후 15일(근무일)내 심사의견과 함께 신청자료를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에 제출한다.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서는 신청자료 접수 후 30일(근무일)내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허가인 경우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서가 《출판물 운영허가증》을 발급하는 한편 신문출판총서에 등록한다. 신청인은 공상행정 관리부에서 《출판물 운영허가증》을 의거로 운영허가증을 취득한다. 불허인 경우 이유를 밝힌다.

<신청자료>

- 1) 신청서, 업체 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 관계자의 성명, 주소, 자금 내치, 자금액수 등을 밝힌다.
- 2) 업체 정관
- 3) 등록자금 신용증명
- 4) 운영장소 상황 및 사용권 증명
- 5) 법인대표 또는 주 관계자의 신분 인증
- 6) 법인대표 또는 주 관계자, 발행 전문인원의 직업자격 증명서
- 7) 관련 컴퓨터 관리조례 증명자료

제10조 출판물 소매, 대여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타 업체, 개인이 출판물 소매, 대여업무에 종사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회사 명칭과 운영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 2) 운영자는 반드시 초급 이상 출판물 발행인력 직업자격을 갖춰야 한다]
- 3) 업무에 필요한 지정 운영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11조 출판물의 소매, 대여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타 기구, 개인이 출판물의 소매, 대여업무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현 급 인민정부 신문출판 행정부에 제2조 규정에 지정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문출판 행정부서는 신청자료를 접수한 후 30일(근무일)내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허가일 경우 《출판물 운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상급 신문출판 행정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은 공상행정 관리부에서 《출판물 운영허가증》을 의거로 운영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 불허인 경우 이유를 밝힌다.

<신청자료>

- 1) 신청서, 업체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 관계자의 성명, 주소 등을 밝힌다.

- 2) 운영장소의 상황 및 사용권 증명
- 3) 운영자의 신분 인증 및 직업 자격증

제12조 출판물 체인 운영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타 체인 운영업체가 출판물 체인운영업무를 신청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업체 명칭과 정관이 명확해야 한다.
- 2) 체인운영에 부합되는 조직형식과 운영방식
- 3) 등록자금이 300만 위안 이상, 전국적인 체인운영에 종사할 경우 등록자금이 1,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 4) 10개 이상의 직접 운영 체인점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5) 체인운영업무에 관련된 발행전문인원, 법정대표와 주 관계자는 중급 이상 출판물발행 직업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발행인원은 초급 이상 출판발행인원 직업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 6) 관련 컴퓨터 관리조건과 온전한 관리제도를 갖춰야 한다.

제2장 출판물 발행기구 설정-2

제13조 출판물에 관한 체인 운영업체를 설립하거나 타 업체가 출판물 체인 운영업무를 신청할 경우 본부 소재지 시 급 신문출판 행정부에 제3조 규정에 지정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 급 신문출판 행정부서는 신청자료 접수일부터 15일(근무일) 이내 심사의견과 함께 신청자료를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에 제출한다.

전국적인 출판물 체인 운영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타 업체가 전국적인 출판물 체인 운영업무를 신청할 경우, 본부 소재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에 제2조 규정에 지적된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서는 신청자료 접수일부터 15일(근무일) 이내 심사의견과 함께 신청자료를 신문출판총서에 제출한다.

심사기관은 신청자료 접수일부터 60일(근무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허가인 경우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서가 《출판물 운영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한편 신문출판총서에 등록하며 전국적인 체인운영이 허가된 경우 신문출판총서가 《출판물 운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출판물 운영 허가증》에 의거해 운영허가증을 취득한다. 불허인 경우 이유를 밝힌다.

<신청자료>

- 1) 신청서, 업체 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 관계자의 성명, 주소, 자금 내처, 자금 액수 등을 밝혀야 한다.
- 2) 조직기구와 정관
- 3) 등록자금 신용증명
- 4) 체인점 개설 계획
- 5) 본부와 체인점 운영장소 리스트 및 사용권 증명
- 6) 법인대표 또는 주 관계자의 신분 인증
- 7) 법인대표 또는 주 관계자, 발행전문인원의 직업자격 증명서
- 8) 관련 컴퓨터 관리조건 증명자료



제14조 체인점 직접 운영은 별도로 《출판물 운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출판물 체인 운영업체 본부의 《출판물 운영 허가증》 사본으로 소재지 현 급 인민정부 신문출판 행정 부서에 등록된 후 공상행정 관리부에서 운영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

출판물 체인운영업체가 직접 운영 체인점을 개설 할 경우 본 규정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심사수속을 밟는다. 단 《출판물 운영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중외합자 운영업체, 중외합작 운영업체, 외자업체를 설립할 경우 신문출판총서와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제정한 《외상투자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판매 업체관리방법》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타 업체가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업무를 신청할 경우 본 규정 제8조,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출판물 총 발행업체, 도매업체는 인터넷 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할 경우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제17조 본 성, 자치주, 직할시 내 회원의 독서클럽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을 설립하거나 출판업체가 발행 출판물의 독서클럽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을 설립할 경우 본 규정 제10조, 제11조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 성, 자치주, 직할시지간의 독서클럽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을 설립할 경우 본 규정 제8조, 제9조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

출판물 총 발행업체, 도매업체는 독서클럽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을 설립할 수 있으며 출판물 소매업체는 성, 자치주, 직할시 내에서 회원의 독서클럽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을 설립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

제18조 출판물 도매시장을 설립할 경우 이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5,000평방미터 이상, 도매업체가 집중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 2) 도매시장에 진출한 업체는 반드시 출판물 도매권을 소지한 출판물 발행업체여야 한다.
- 3) 온전한 시장관리기구와 규정제도가 있어야 한다.
- 4) 운영업체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사무, 저장, 교통, 통신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 5) 시장관리기구 및 운영업체는 전부 컴퓨터 통일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 6) 법규, 규칙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19조 출판물 도매시장을 설립할 경우 소재지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에 제2조 규정에 지정된 신청자료를 제출한다.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는 신청자료 접수일로부터 30일(근무일) 이내 신문출판총서가 규정한 수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 규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허가인 경우 신문출판총서에 등록하고 불허인 경우 이유를 밝혀야 한다.

<신청자료>

- 1) 신청서, 시장명칭, 주소, 시장 주최 업체 명칭, 주소, 주소 책임자 이름, 주소 등을 밝혀야 한다.
- 2) 시장 주 관계자의 유효 신분 인증
- 3) 시장의 관리기구, 조직 정관 및 관리제도
- 4) 시장운영장소 상황 및 사용권증명
- 5) 시장의 평면설계도와 투시도
- 6) 컴퓨터 통일관리가 가능하다는 증명자료

도매시장의 수가 신문출판총서의 규정을 넘었을 경우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서행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후 신문출판총서의 허가를 신청한다.

제20조 출판업체의 발행 부서가 개편한 발행업체는 본 버전 출판물의 총 발행에 종사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본 규정 제6조, 제7조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출판업체가 출판물 발행업체를 설립하고 타 출판업체가 출판한 출판물을 도매, 소매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 제8조, 제9조 또는 제10조, 11조에 지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출판기구가 법인대표 자격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본 버전 출판물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 분사기구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분사기구 소재지 성 급 신문출판행정부의 허가를 통과해야 한다.

제21조 출판물 발행업체가 명칭, 업무범위를 변경하거나 타 출판물 발행업체를 겸병하거나 또는 합병, 지사 설립 등 원인으로 허가된 행정구역 외로 주소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에 따라 상응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판물 발행업체가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등록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관련 수속을 밟은 후 신문출판행정부에 등록한다.

출판물 발행업체가 휴업, 철회, 파산 또는 기타 원인으로 운영을 중지할 경우 신문출판행정부에서 취소등록을 신청한 후 허가증을 반납한다.

제22조 출판물 총 발행, 도매, 소매업체를 설립하거나 타 업체, 개인이 출판물 총 발행, 도매, 소매업무를 신청할 경우 본 규정 제6조, 제8조, 제10조에 지정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외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와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가 제정한 출판물발행 장소배치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3조 신문출판행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재료를 적시에 심사해야 하며 신청자료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신청접수일부터 3일(근무일) 이내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통지한다.

제3장 출판물 발행활동 관리

제24조 임의의 조직과 개인은 아래에 지적된 출판물을 발행할 수 없다.

- 1) 《출판관리조례》 제26조, 제27조 규정에 따라 금지된 내용을 포함한 출판물
- 2)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적으로 출판하거나 프린트 또는 복사한 출판물, 출판업체 또는 신문 명칭을 위조하거나 가장하여 출판한 출판물, 불법 수입한 출판물, 서적코드나 주간



- 코드나 출판코드 등 거래를 내용으로 한 출판물 등 불법 출판물
- 3) 타인의 저작권 또는 소유 출판권을 침해한 출판물
- 4) 신문출판행정부가 출판이나 프린트 또는 복제를 엄금한 출판물

제25조 내부자료 출판물은 본 계통, 본 산업 또는 본 업체 내부에서 무료 발급하며 임의의 기구와 개인은 사적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제26조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아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1) 불법 출판물 출판, 발행업체로부터 주문하지 못한다.
- 2) 어떠한 형식의 서적코드, 주간 코드, 버전 코드 거래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 3) 신문출판행정부가 허가한 경영범위, 경영장소를 초월하여 경영할 수 없다.
- 4) 법률, 법규가 금지한 내용 또는 사기성 문자 주문, 광고, 홍보 포스트를 붙이거나 배포할 수 없다.
- 5) 출판물에 강매 출판물을 곁들여 판매할 수 없다.
- 6) 출판물의 판권페이지를 사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 7) 《출판물 경영허가증》은 반드시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곳에 걸어야 하며 수정하거나 복제, 또는 임의의 형식으로 판매, 대여,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출판업체는 본 버전 출판물에 총 발행권을 소유한다.

출판업체가 출판물 총 발행업체에 출판물 발행을 위탁할 경우 통일적인 《출판물발행위탁서》를 사용해야 하며, 출판물 총 발행권을 소지하지 않은 업체에 출판물 총 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변상 양도해서는 안 된다. 또 출판물 도매권을 소지하지 않은 업체에 출판물 도매나 출판물 도매업무를 대리 위탁할 수 없으며, 출판물 발행업체가 아닌 업체에 출판물의 발행을 위탁할 수 없다.

제28조 경영업체는 출판물 도매시장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출판물 샘플을 도매시장관리기구에 제출하여 관련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제출한 출판물 샘플은 판매 출판물과 동일해야 한다.

제29조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와 전국 출판 및 발행 산업협회는 전국적인 출판물주문, 전시 및 판매 활동의 주최를 신청할 수 있다.

출판업체, 총 발행업체, 성급 출판 및 발행 산업협회는 성 간 전문적인 주문, 전시 및 판매활동 또는 본 성, 자치주, 직할시 출판업체가 출판한 지방성 출판물의 주문, 전시 및 판매활동을 주최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출판물의 주문, 전시 및 판매활동을 위탁 전담할 수도 있다.

제30조 전국성적인 출판물 주문, 전시 및 판매활동을 주최할 경우 주최업체는 반드시 6개월 전 신문출판총서의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문출판총서는 신청 접수일부부터 2개월 내 결정하고 결과를 주최업체에 통지한다.

성 간 전문성적인 출판물 주문, 전시 및 판매활동을 주최할 경우 주최업체는 3개월 전 본 지역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신문출판총서의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

신문출판총서는 신청 접수일부터 1개월 내 결정하고 결과를 주취업체에 통지한다.

본 성, 자치주, 직할시 출판업체가 출판한 지방성 출판물의 주문, 전시 및 판매활동을 주최할 경우 주취업체는 2개월 전 본 지역 성급 신문출판행정부의 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신문출판행 정부는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취업체에 통지하는 한편 신문출판총서에 등록한다.

제31조 성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 교육행정부와 가격 주관부서가 입찰 또는 기타 공정한 방식으로 확정된 출판물 발행업체만이 중소학교 교과서 발행에 종사할 수 있으며 기타 업체와 개인은 사적으로 중소학교 교과서 발행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32조 내부 발행한 출판물은 공개적으로 선전, 진열, 전시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33조 수입 출판물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법적으로 설립된 출판물 수입경영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해야 하며 그 가운데 신문, 주간지의 발행은 반드시 신문출판총서가 지정한 출판물 수입경영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제34조 출판물 발행업체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검사를 협조하기 위해 반드시 출판물 발행 입/출하 명세서 등 재무 이외의 영수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반드시 출판물 저장장소, 면적, 관리인원의 상황을 신문출판행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저장장소, 면적, 관리인원의 상황에 변수가 생겼을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내 신문출판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제35조 출판물의 출판, 프린트, 복제, 발행에 종사하는 업체 이외의 기타 업체가 출판물의 저장, 운수활동에 종사하거나 출판물의 출판·발행에 종사하는 업체 이외의 기타 업체가 출판물 배달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현급 신문출판행정부의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성급 이상 신문출판행정부가 지정한 규정에 따라 출판물의 저장, 운송 및 배달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36조 임의의 업체나 개인은 본 규정 제24조에 지정된 출판물의 구입, 저장, 운송, 우편, 배달, 발부, 송부 등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37조 출판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신문출판총서의 《신문출판통계관리방법》과 국가 관련 통계제도에 근거하여 통계자료를 실사구시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거부하거나, 통보시간을 지연하거나 또는 거짓 통보, 위조, 수정 등 불법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8조 출판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신문출판총서와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제39조 출판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신문출판총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장 처분

제40조 허가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물 발행업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출판물 발행에 종사했을 경우 《출판물관리조례》 제55조에 근거 처분한다.

제41조 금지 출판물을 발행했을 경우 《출판물관리조례》 제56조에 근거 처분한다.

제42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의 저작권 또는 개인 소유 출판권을 침해한 출판물을 발행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 시행조례》에 근거 처분한다.

제43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출판물 또는 신문출판행정부가 금지한 출판, 프린트 및 복제·발행을 엄금한 출판물을 발행했을 경우 신문출판행정부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출판물과 소득을 압수한다. 불법소득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처하고 불법소득이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에 처한다. 정도가 심할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또는 발급 허가증을 압수한다.

제44조 본 규정 제24조를 위반했을 경우 제41조, 제42조, 제43조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법인대표 또는 주 관계자의 출판물발행인 자격증을 취소한다.

제45조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가 초·중 교과서를 발행했을 경우 《출판관리조례》 제59조에 근거 처분한다.

제46조 아래 행위에 대해 신문출판행정부가 불법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내린 후 불법소득 및 불법 출판물을 압수하고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에 처한다.

- 1) 내부 자료를 출판물로 발행했을 경우
- 2) 총 발행권을 소지하지 않은 업체에 출판물 총 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변상 양도했을 경우
- 3) 출판물 출판 및 발행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출판물을 구입했을 경우
- 4) 출판업체가 본 규정 제27조 제2절을 위반했을 경우
- 5) 신문출판행정부가 허가한 영업범위, 영업 장소를 초월하여 영업했을 경우
- 6) 서적코드, 주간지 코드, 버전코드의 거래에 참여했을 경우
- 7) 《출판물영업허가증》을 판매, 대여, 양도했을 경우
- 8) 규정에 따라 심사등록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 9) 사적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아래 행위에 대해 신문출판행정부는 불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가한 후 불법 소득과 불법 출판물을 압수하고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처분을 가한다.

- 1) 법률, 법규가 금지한 내용 또는 기 편성 문자의 발행, 광고, 선전 포스트를 발급했을

경우

- 2) 출판물과 강행 판매출판물을 세트로 포장했을 경우
- 3) 출판물 판권 페이지를 사적으로 변경했을 경우
- 4) 《출판물영업허가증》을 영업장소에 걸지 않았거나 사적으로 수정, 복제했을 경우
- 5) 본 규정 제28조, 제34조, 제38조를 위반했을 경우
- 6) 내부 발행으로 규정된 출판물을 공개적으로 선전, 진열, 판매했을 경우

제48조 허가·비준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으로 출판물 도매시장을 설립했을 경우 사적으로 출판물 발행업체를 설립했을 시의 처분과 동등하게 처리된다. 허가·비준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으로 출판물의 주문, 전시 및 판매활동을 주최했을 경우 사적으로 출판물 발행업무에 종사했을 시의 처분과 동등하게 처리된다.

제49조 본 규정 제35조를 위반하고 출판물의 저장, 운송, 배달활동에 종사했을 경우 신문출판행정부가 불법행위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압수하는 한편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에 처한다.

제50조 본 규정 제24조에 지정된 출판물을 발행, 저장, 운송, 배달, 송부 했을 경우 본 규정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3조에 근거해 처분한다.

제51조 본 규정 제37조를 위반했을 경우 신문출판총서 《신문출판통계관리방법》에 근거 처분한다.

제5장 부칙

제52조 본 규정 제12조, 제13조에서 지정된 전국적인 체인 영업이란 성, 자치주, 직할시지간의 체인 영업을 가리킨다.

제53조 《출판물영업허가증》양식은 신문출판총서가 규정하고 신문출판총서 또는 성, 자치주, 직할시 신문출판행정부가 통일 인쇄한다.

제54조 본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동시에 신문출판총서가 1999년11월 22일 발표한 《출판물시장관리 잠정규정》이 폐지되며 본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본 규정과 어긋나는 일체 규정은 시행을 중지한다.



18. 저작권 행정처분 시행방법 (著作权行政处罚实施办法)

중화인민공화국국가관권국령 제3호

(2003년 7월 16일 국가관권국 국무회의에서 심사 통과하였으며 2003년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입법목적)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분을 규범화하고 공민, 법인대표 및 기타 조직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분법》(이하 “행정처분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으로 약칭)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법집행 주체)

국가 관권국 및 지방인민정부 저작권 행정집법권을 소지한 부서(이하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로 약칭)가 법정 직권범위 내에서 본 방법에서 지적된 부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법률, 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법규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부정행위)

본 방법에서 지적된 부정행위는 아래와 같다.

- 1) 저작권법 제47조에 열거된 침해행위, 동시 공공이익을 손상했을 경우
- 2)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24조에 열거된 침해행위, 동시 공공이익을 손상했을 경우
- 3) 기타 법률, 법규, 규칙규정이 행정처분을 요구한 저작권 침해행위

제4조 (처분 조목)

본 방법에 열거된 부정행위에 대해 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 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

- 1)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령
- 2) 부정소득을 압수
- 3) 침해 복제품을 압수
- 4) 과태료 추가
- 5) 침해 복제품 제작에 사용된 소자, 도구, 장비 등을 압수
- 6) 법률, 법규, 규칙규정에서 지적된 기타 행정처분

제2장 관할 및 적용

제5조 (지역관할)

본 방법이 열거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는 침해행위 시행장소, 침해결과 발생지, 침

해불법복제품 저장장소 또는 법에 근거해 차압을 감행한 지역의 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 책임진다.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6조 (급별관할)

국가 관권국은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인지된 영향이 중대한 부정행위 및 국가 관권국의 조사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책임지며, 지방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는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책임진다.

제7조 (관할쟁의 및 지정관할)

2개 이상의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동일한 부정행위에 동시 관할권을 소지했을 경우 우선 입안한 저작권 행정 관리부서가 조사 처리를 책임진다.

지방 저작권 행정 관리부서간에 관할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관할권이 불명확한 경우 쟁의 쌍방이 협상해결하며, 협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 동일상급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에 관할배치를 청구,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가 관할 부서를 지정한다.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필요한 경우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 관할범위 내 중대한 사건을 인수 처리할 수 있으며 자체 관할범위 내의 사건을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에 넘길 수도 있다.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사건의 중요성, 복잡성 또는 필요성에 근거하여 자체 관할범위 내의 사건을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상급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이송)

조사 중인 부정행위가 중국 형법규정에 저촉되어 이미 범죄사실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가 국무원 《행정집법기관 범죄사건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제9조 (유효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분 유효기간은 2년, 부정행위 발생일부터 유효하다. 부정행위가 연속적이거나 지속상태일 경우 중지일부부터 유효하다. 불법복제품이 발행 중인 경우 부정행위의 지속상태로 단정한다.

부정행위가 2년 내에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단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 행위는 제외이다.

제3장 처분절차

제10조 (일반 절차)

행정처분법이 간이절차를 요구한 경우 이외에 저작권 행정처분은 전부 행정처분법이 규정한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

제11조 (입안)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부정행위를 조사할 경우 반드시 입안해야 한다. 본 방법이 열거한 부정행위에 대해 저작권 행정 관리부서가 스스로 입안 조사하거나



또는 관련 부서가 이송한 자료에 근거하여 입안 조사하며 피 침해인, 이해 관계자 및 기타 관련자의 소송, 고발에 근거해 입안 조사할 수도 있다.

제12조 (고소)

고소인은 본 방법에 열거된 부정행위에 관해 입안 조사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 권리증명, 피 침해 작품(또는 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성명(또는 명칭), 주소 및 조사신청의 주요사실, 이유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고소인이 대리신청을 위탁했을 경우 대리인은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수리)

저작권 행정 관리부서는 고소서류 접수일부터 15일내 수리 여부를 결정 및 소송인에게 통지한다. 수리가 거부된 경우 서면 상 이유를 설명한다.

제14조 (전담)

입안 시 입안 심사 허가표를 적는 한편 소송 또는 고소 자료, 상급 저작권 행정 관리부서가 넘긴 자료 또는 관련 부서 이송자료, 집행자의 조사보고 등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첨부해야 하며 본 부서 관계자가 허가하고 2명 이상의 조사처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본 사안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조사처리 담당자는 스스로 처리과정을 회피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자가 담당자의 회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조사처리 담당자의 회피사항은 본 부서의 관계자가 허가 비준하고 관계자의 회피는 본급 인민정부가 비준 허가한다.

제15조 (긴급조치)

집행자가 집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시행 중임을 발견하고 그 상황이 긴급하여 절차적인 입안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부정행위를 억제하거나 교정한다.
- 2) 침해 불법 복제품과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도구, 장비 등을 법적으로 등기하고 잠시 보존한다.
- 3) 기타 관련 증거를 수집, 채용한다. 집행자는 관련 상황과 소자들을 제때에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입안수속을 처리한다.

제16조 (증거수집)

입안 후, 집행자는 이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법정 증거 제시자가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가 지정한 기일 내에 증거물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제17조 (집행 증명서 출시)

집행자는 집행과정에서 당사자, 관련자에게 국가관권국 또는 지방 인민정부가 발급한 행정집행 증명서를 출시해야 한다.

제18조 (증거 유형)

수집한 증거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 1) 서증

- 2) 물증
- 3) 증인증언
- 4) 시청자료
- 5) 당사자 진술
- 6) 결론 검정
- 7) 검사, 검증기록

제19조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

저작권에 관련해 당사자가 제공한 초고, 원본, 합법 출판물, 저작권 등록 증명서, 인증기구의 증명, 권리취득 계약서 및 당사자 또는 대리 위탁인이 구입, 현장거래 등 방식으로 구매한 불법복제품 실물, 영수증 등은 모두 증거물로 인정된다.

제20조 (명세서 제작)

집행자의 견본 검증, 관련 증거물 등록 보존과정에 반드시 당사자가 동참해야 하며 관련 물품에 대한 명세서 2부 작성하고 집행자와 당사자가 사인날인 후 각각 당사자, 집행자 소재지역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에 보존한다. 당사자가 동참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인을 거절할 경우 현장에 참여한 2명 이상의 집행자가 상황설명을 첨부한다.

제21조 (등록보존절차)

집행자는 관련 증거물 등록보존 시 반드시 본 부서 관계자의 비준을 통과해야 하며 동시에 당사자에게 등록보존 통지서를 발송한다. 당사자, 관련 인원은 증거물 보존기간 증거물을 옮기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증거물 등록보존 시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의 등록 보존 봉인이 필요하며 당사자가 현장에서 보존한다. 타 지역에 이송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합한 장소로 이송한 후 보존하며 돌발상황에서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수속할 수 없을 경우 집행자가 타당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 수속 보완을 해야 한다.

제22조 (등록보존 후속조치)

등록 보존한 증거물에 관련해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증거물 등록보존통지서 발송 후 7일 내에 적당한 처리를 정해야 한다.

- 1)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기구에 이송
- 2) 부정행위 사실이 성립되고 관련 물품에 대한 압수가 필요한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압수한다.
- 3) 관련 부서에 이송해야 할 사건은 증거물과 함께 해당 부서에 이송한다.
- 4) 부정행위 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압수가 불필요한 경우 등록 보존조치를 제한한다.
- 5) 기타 관련 법정 조치

제23조 (위탁 조사)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타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의 대리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반드시 위탁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탁받은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반드시 적극적인 협조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전문 감정)

조사과정 중 전문성이 강한 문제에 관련해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전문기구에 위탁하거나 전문인원을 초빙하여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조사보고)

조사 완료 후 집행자는 사건 조사 보고를 제출하는 한편 관련 행위의 부정여부를 지적하고 처리이건 및 이에 따른 관련 사실, 이유, 근거와 함께 전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한다.

제26조 (당사자 통지)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가 행정처분 결정을 완성했을 경우 본 부서의 책임자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며 행정처분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를 밝히는 한편 당사자에게 그가 소지하고 있는 진술권, 해명권 및 기타 권리의 사용을 권고한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가 당사자에게 직접 송부하고 당사자는 그 위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을 거부했을 경우 송부원이 상황 설명을 적고 본 부서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그 외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우편 발송 방식도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공고 형식으로 통지한다.

제27조 (당사자 진술, 해명기한)

당사자가 진술권, 해명권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7일 내 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에 관련 진술, 해명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제출한다. 기한 내 진술권, 해명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포기로 인정된다. 직접 송부는 당사자 서명 또는 날짜를, 우편 발송은 영수증에 적혀 있는 접수 일을 통지일로 치부한다.

제28조 (재조사)

집행자는 당사자의 진술, 해명을 충분히 청취한 후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재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당사자의 해명을 이유로 처분을 가중 할 수 없다.

제29조 (처리결정)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 관계자는 사건의 조사보고 및 재조사 보고에 대한 심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처리 결정을 한다.

- 1) 부정행위 사실이 확실한 경우 침해인의 정도, 시간, 범위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한다.
- 2) 부정행위 사실이 확실하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 3) 부정행위 사실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가하지 않는다.
- 4) 부정행위가 범죄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 처리한다.

부정행위 과정이 복잡하거나 정도가 엄중할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 관계자들의 집단

토론을 통해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제30조 (처분)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의 처분액수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36조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24조 규정에 근거한다.

제31조 (정도가 심한 사건에 대한 처분)

부정행위 정도가 심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침해 불법복제품에 사용된 소자, 도구, 장비 등을 압수한다. 전술한 “정도가 심한 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 1) 개인 부정행위 소득(영리액수) 5,000위안 이상, 단위 부정행위 소득 3만 위안 이상인 경우
- 2) 개인 불법경영액 3만 위안 이상, 단위 불법경영액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 3) 개인이 경영한 불법복제품이 2,000권(장 또는 세트)이상, 단위가 경영한 불법복제품이 5,000권(장 또는 세트)이상인 경우
- 4) 저작권 침해로 법률책임을 추궁 당한 경력이 있으면서 재범인 경우
- 5) 기타 엄중한 영향 또는 결과를 빚어낸 경우

제32조 (동일 부정행위에 대해 재 처분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동일한 부정행위와 관련해 기타 행정기관이 이미 처분을 가했을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재 처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본 방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기타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다.

제33조 (증언청취 표준)

행정처분 액수가 많거나 또는 법률, 행정법규가 증언청취를 규정한 기타 행정처분에 관해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당사자가 증언 청취 권리를 소지하고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전술에서 지적된 “행정처분 액수가 많다”는 것은 개인처분 2만 위안 이상, 단위처분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지방의 법규, 규정에서 증언청취에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마련된 경우 지방의 법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증언청취)

당사자가 증언청취를 요구했을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행정처분 제40조 규정에서 지적된 절차에 따라 증언청취를 조직하고 당사자는 증언청취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35조 (법률문서)

행정 처분을 결정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행정처분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행정처분 취소 통지서를 작성, 이에 따른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설명하고 당사자에게 발부한다.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조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발부한다. 사법기관에 이송 처리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관련해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범죄혐의사건 이송서를 작성하고 기타 관련 자료, 증거와 함께 관할범위 내의 사법기관에 이송한다.

제36조 (발부)



행정처분 결정서는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가 신고한 후 현장에서 적시에 당사자에게 발부하며 당사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7일 기한으로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제37조 (행정 재조사신청 및 행정소송)

당사자가 국가관권국 행정처분에 불복을 표할 시 국가관권국에 행정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분에 불복을 표할 시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처분 또는 행정 재조사 결과에 불복을 표할 시 법정 과정을 통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제4장 집행절차

제38조 (처분결정을 이행)

당사자는 행정처분 결정서를 받은 후 처분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그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 재조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행정처분의 집행은 중지하지 않으나 법률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된 경우는 제외다.

제39조 (압수물에 대한 처리)

압수한 침해 불법 복제품은 소각하거나 또는 피 침해인의 동의하에 기타 처리방식을 갖출 수도 있다. 침해 불법 복제품을 소각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파견한 2명 이상의 집행자가 소각과정을 감독해야 하며 소각결과에 근거해 소각기록을 완성한다. 침해 불법 복제품에 사용된 주요 소자, 도구, 장비 등에 대해 저작권 관리 행정부서는 공개 경매하거나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 (대리 집행)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가 내린 행정처분 결정은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가 대리 집행할 수 있으며 대리 집행부서로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집행 결과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부록

제41조 (행정처분 통계)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국가 통계 법규에 근거하여 저작권 행정처분 통계제도를 제정하고 매년마다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에 저작권 행정처분 통계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42조 (자료 정리, 공문서 작성)

행정처분 결정 또는 재조사 결정을 집행 완성 후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적시에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고 공문서를 작성한다. 정리해야 할 자료들 : 행정처분 결정서, 입안 심사 비준표, 사건조사 보고, 재조사 보고, 재조사 결정서, 증언청취 보고, 증거 자료, 재물처리 증표 및 기타 관련 자료

제43조 (법률문서 작성)

본 방법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서는 국가관권국이 규정한 문서격식에 참조하여 작성한다.

제44조 (시행)

본 방법은 2003년 9월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동시에 국가관권국 1997년 1월 28일 반포한 《저작권행정처분시행방법》이 폐지되며 본 방법 시행 전 출범한 기타 관련 규정들이 본 방법과 충돌될 경우 본 방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